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박광동 · 이상모 · 오일석 · 허대원 · 박노일



법제교류 연구 15-18-④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박광동 · 이상모 · 오일석 · 허대원 · 박노일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Study on Systemizing Legislative Modularization in Korea

연구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Park, Kwang-Dong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Lee, Sang-Mo

허대원(신라대학교 교수)

Hur, Dae-Won

오일석(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Oh, Il-Seok (LUKE)

박노일(피앤씨미디어)

Park, No-Il

2015. 10.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그 소개가 부족하여 법제정보교류가 어려운 실정임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법제를 보고서 등에 어떻게 모듈화하는 것이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보고서 등의 요약문의 간결성

- 요약문을 I. 배경 및 목적, II. 주요 사항(1. 개념, 2. 대상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3. 한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4. 상호 비교 및 시사점), III. 교류협력 추진체계, IV.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제목-소제목을 통한 보고서의 체계의 구축이 합리적임
- 단행본의 표지는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디자인이 필요함.
- 바인더 자료집의 활용
 - 바인더 자료집은 추가 자료에 대한 분실의 위험이 적고, 정책결정자의 장기간 보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의 합리화
 -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에 따로이 게시를 하고 첨부파일 등으로 보고서 등을 탑재하는 방안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 주제어 : 모듈, 법제교류, 법제협력, 법제교류지원, 법정비지원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e Study

- The legislative exchange as knowledge exchange functions as a mutual legal cooperation through exchanging and sharing knowledge information on Korean experience in legal development and Korean leg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Contrary to international interests in recent Korean legal issues, the legislative knowledge exchange is difficult due to insufficient ways to introduce Korean legislative knowledge.

Purpos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direction to modularize Korean legislative reports in rational and efficient way for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target state.

II . Main Contents

Brevity of Summary and Other Reports

- Constitute summary reports as follows: I . Background and Purpose; II . Main Contents (1. Concept, 2.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target state, 3. certain legislation and system of Korea, and 3. mutual

comparison and implication); III. Promotion System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V. Expected Effects.

- The general title-subtitle structure is rational for reports.
- The cover of the book should provide an image that relates to the contents and in case of series, a consistent design is necessary.

Utilizing a Source Book Binder


- The source book binder has less danger in losing additional sources, and the legislative decision makers can store the information in the binder for a long period.

Rationalization of Utilizing Internet

- The Measures to post the main contents of published reports on the homepage and to upload the reports.

III. Expected Effects

- Contributing to secure legislative confidence in diplomacy through providing a direction for an effective cooperation on legislative exchange of related institutions.
- Fulfilling as a uniformed guideline to the method of Korean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Key Words:** Modularization, legislative exchange, legislative cooperation, supporting legislative exchange, maintaining legisla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3
제 2 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15
제 1 절 개 관	15
1.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전개	15
2.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유형	16
제 2 절 정부기관	16
1. 대법원	16
2. 헌법재판소	23
3. 법무부	26
4. 지식경제부	32
5. 법제처	42
제 3 절 공공기관	50
1. 한국법제연구원	50
2. 한국국제협력단	57
3. 공정거래위원회	61

제 4 절 민간기관	68
1. 아시아법연구소	68
제 5 절 평 가	69
제 3 장 법제 모듈화 국외 사례조사	73
제 1 절 중 국	73
1. 정부기관	73
2. 공공기관	76
3. 민간기관	78
제 2 절 홍 콩	79
1. 정부기관	79
2. 공공기관	80
3. 민간기관	82
제 3 절 대 만	88
1. 공공기관	88
2. 민간기관	89
제 4 절 일 본	90
1. 공공기관	90
2. 민간기구	90
제 5 절 아시아 개발은행	96
제 4 장 법령 모듈화 방안	99
제 1 절 법령 모듈화 방법론의 기초	99

1. 의사결정과 법률정보	99
2. 법령 모듈화의 필요성	100
제 2 절 법령 모듈화 방법	102
1. 모듈화 대상 법령의 식별	102
2. 법령 모듈화의 구체적 방법	109
3. 해당법의 주요내용 및 연관내용의 모듈화	124
4. 해당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129
5. 해당법에 대한 사법 정보의 제공	134
6. 해당법과 관련된 전문학술지 및 전문가 정보의 모듈화	139
7. 분야별 관련 법령 모듈화로의 발전 모색	141
제 5 장 법제 시각화 방안	145
제 1 절 서 론	145
제 2 절 현행 법제시각화 현황	145
1. 우리나라의 종이법령집 발간현황	145
2. 외국의 종이법령집 발간 현황	148
3. 우리나라의 전자매체를 통한 법령서비스 현황	150
4. 외국의 전자매체 법령정보서비스	162
제 3 절 현행 법령정보 제공의 문제점	166
1. 종이법령집의 발간의 문제점	166
2.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법령제공의 문제점	168
제 4 절 법제시각화 개선방안	169
1. 종이법령집의 시각화	169
2. 전자매체를 이용한 법제시각화	183

제 6 장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	197
제 1 절 보고서	197
1. 요약문	197
2. 본 문	198
제 2 절 자료집	207
제 3 절 인터넷 활용	209
참 고 문 헌	21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가 등(이하 ‘대상국가’라 한다)에서는 한국 법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¹⁾²⁾ 이러한 한국 법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이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법제교류 또는 법정비 지원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한국 법제에 대한 대상국가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이념적 논의나 법제교류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우리 법제를 대상국가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법제를 대상국가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는 법제가 대상국가에 설비지원 등을 하는 것과는 달리 대상국가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거버넌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고 또한 법제는 제도이면서 지식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정밀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화와 관련한 사항이 모듈화(Modularization)이다.

모듈(Module)은 원래 건축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분야에서의 모듈은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단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는데, 모듈은 소프트웨어에서 모듈이란 한

1)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수출사업은 1997년 법무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가의 검사와 판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Workshop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을 개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환 외,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법령정보관리원, 2012, 105면].

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926007003> (검색일; 2015.10.2.).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³⁾ 그리고 제품 제작이나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모듈은 공업제품의 제작이나 건축물의 설계나 조립시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치수 및 단위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모듈러스를 어원으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기초수치 및 그의 구성을 KS F 1510으로 정하고 있다.⁴⁾ 또한 교육학에서 모듈은 하나의 통합된 주제를 가진 자족적(自足的)인 또는 자력학습용(自力學習用)의 수업단위로서, 학생에게 목표로 명시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체 교육과정(敎育課程)의 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⁵⁾

우리 법제의 모듈화와 관련하여서 모듈은 우리 법제를 대상국가에 알리고 이를 교류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제교류의 독립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국제화와 연계된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수행되고 있기는 하나,⁶⁾ 법제와 관련하여서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법제에 대한 대상국가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이거나 우리 법제에 대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1087&cid=42111&categoryId=42111>

(검색일; 2015.10.2.).

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470&cid=40942&categoryId=32337>

(검색일; 2015.10.2.).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586&cid=42126&categoryId=42126>

(검색일; 2015.10.2.).

6)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독창적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도입 및 설립배경, 추진체계, 정책내용, 평가, 시사점과 같은 표준 메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향후 정책자문사업(Bilateral Policy Consultation) 및 지식콘텐츠 기반 개발협력사업(컨설팅,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http://ksp.kdi.re.kr/kr/pillars/modulmain.jsp> (검색일; 2015.9.28.)].

제 2 절 연구의 범위

우리 법제를 대상국가에 어떻게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법률을 영문화 또는 대상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 입법 지원상담자 또는 법제전문가를 통해 우리 법제에 대한 대상국가에 세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대상국가의 인력을 우리나라에 초대하여 연수 등에 의한 직접적 교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 법제를 대상국가에 알리는 방식의 가장 기본이면서 종합적인 것은 책 또는 보고서(이하 ‘보고서 등’이라고 한다)를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법제를 보고서 등에 어떻게 모듈화하는 것이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 제2장에서는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허대원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담당)와 관련하여 국내 법제 모듈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법제 모듈화 국외 사례조사(이상모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담당)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의 모듈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법령 모듈화 방안(오일석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담당), 제5장에서는 법제 시각화 방안(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법학박사 담당),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담당)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제 1 절 개 관

1.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전개

과거 우리나라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영미법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가의 법제도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제도를 수출하는 데에는 큰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법정비사업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1997년 법무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가의 검사와 판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Workshop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⁷⁾을 개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⁸⁾ 이후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참여기관 및 사업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점차 확대-발전하고 있다.

7) 이 과정은 2~3 주간의 과정으로서 한국법의 체계와 그 운용실태, 시장경제의 형성과 관련된 민·상사법의 내용, 인권옹호, 부패방지,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제학과 경제법 등에 관한 강의와 각국별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례 발표, 형사사법 시설의 견학, 산업시찰과 문화유적지의 관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를 주로 법무연수원에서 이루어진다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제개혁 지원을 중심으로-”, 『검찰』 통권 제115호, 대검찰청, 2004.12., 32면].

8) 이 과정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외국 주요 법조인들의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에 대한 방문교류 수준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동 과정은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법제교류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 2012, 105면].

2.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유형

현재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적 지원의 방법으로는 관련 법조인 상호 방문교류 및 연수, 자문관 등의 파견 등이 있고 물적 지원의 방법으로는 입법자문, 전자정부 또는 법령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기술 및 자금지원, 시설물의 건축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1회적이거나 단기간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법제교류를 위한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ALIN과 같은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용하거나, 전자정부 등의 시스템을 수출하여 유지하는 등 상대방 국가와 장기적으로 법제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사업수행주체를 기준으로는 대법원, 법무부 등의 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아시아법연구소 등의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분야를 기준으로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제공, 법제 및 시스템 지원,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

제 2 절 정부기관

1. 대법원

(1) 개 관

소송비용, 소송기간, 절차의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¹⁰⁾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우리 사법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 법제처, 상계서, 109면.

10) <http://news.donga.com/View?gid=47330530&date=20120627> (검색일; 2015.12.16.).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제교류지원은 사법부 수장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한 신뢰 및 교류기반을 확립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사법당국과 지속적·정기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4년 체결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이 정례적으로 회동하여 사법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부터 한·일 법관 워크숍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2006년 체결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한·중 사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미연방사법위원회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¹⁾

사법제도 역시 초기에는 외국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오늘날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제도를 수출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과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은 대법원 자체 예산으로 개발도상국 법관 및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거나 국제기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5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의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왔고,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국별과정의 경우 한 나라의 법관으로만 구성된 10여명의 연수단이 약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해 한국사법제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유관기관을 견학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다국적 과정의 경우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모여 연수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¹²⁾

11) <http://www.scourt.go.kr/judiciary/international/relation/index.html> (검색일; 2015.12.16.).

1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50876> (검색일; 2015.12.16.).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특정 국가의 법관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사법정책 개관, 법관선발 및 연수제도, 사법공조, 국제상사분쟁, 민사법체계, 행정법원 등에 대한 강의와 산업시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사법제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법관들은 자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상호간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¹³⁾

[표 2-1] 프로그램 운영 현황¹⁴⁾

연 도	프로그램 제공 대상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고위법관 · 태국 고위법관 · 다국적(모로코 등 13개국) 고위법관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고위법관 · 아제르바이잔 고위법관 · 라오스 고위법관 · 다국적(콜롬비아 등 12개국) 고위법관 · 태국 고위법관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고위법관 · 파라과이 고위법관 · 필리핀 고위법관 · 베트남 고위법관 · 몽골 고위법관 · 다국적(요르단 등 10개국) 고위법관

13) 최태은, “한국법의 세계화-제도수출”, 『제9회 한국 법률가 대회 발표자료집』, 한국 법학원, 2014.10., 31면.

14) 아래 표의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교류 [<http://www.scourt.go.kr/portal/news/ExchangeListAction.work?gubun=18&pageSize=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검색일; 2015.10.2.).

연 도	프로그램 제공 대상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고위법관 · 파라과이 고위법관 · 베트남 사법부 · 방글라데시 고위법관 · 다국적(요르단 등 10개국) 고위법관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라과이 고위법관 · 베트남 고위법관 및 공무원 · 온두라스 고위법관 · 다국적(캄보디아 등 14개국) 고위법관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고위법관 · 아프가니스탄 고위법관 · 캄보디아 고위법관(다년간 연수 : 3년) · 다국적(도미니카공화국 등 12개국) 고위법관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고위법관 · 네팔 고위법관 · 이집트 고위법관 · 몽골 고위법관(2회 : 9월, 12월) · 베트남 고위법관 · 아프가니스탄 고위법관 · 캄보디아 고위법관(다년간 연수 : 3년) · 방글라데시 고위법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고위법관(4회 : 3월, 4월(법원공무원), 10월, 11월) · 케냐 등 8개국 고위법관 글로벌 연수과정 실시 · 몽골 고위법관 · 중국 고위법관 · 네팔 고위법관 · 콜롬비아 고위법관 · 케냐 고위법관 · 페루 고위법관

한편 대법원은 아시아 사법부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시키면서 법학학위나 연구과정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¹⁵⁾ 2006년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협력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법관들을 초청하고 있다.¹⁶⁾

(3) 법제 및 시스템 지원

대법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법, 행정법, 세법, 형법,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한 판례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¹⁷⁾ 아울러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의 영문 판례와 더불어 중문 판례도 제공함으로써 우리 법제를 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⁸⁾ 이외에도 몽골의 사법연수제도 및 파라과이의 등기전산화를 지원한 바 있다.¹⁹⁾

대법원은 국별연수에서 나아가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²⁰⁾ 2012. 7.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으로 1차 지원사업이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구축된 물적 기반에 더하여 제도 개선, 인적 자원 교육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교재개발 등을 내용

15) 이성환,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실천적 과제”, 『법제』 통권 제654호, 법제처, 2012. 6., 63면.

16) 연성진 외 5인,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9면.

17) <http://eng.scourt.go.kr/eng/crtdecsns/NewDecisionsList.work?mode=6> (검색일; 2015.12.16.).

18) 중문 판례의 경우 민사, 상사, 형사, 행정, 지적재산, 무역, 조세, 노동 및 환경, 섭외사건 및 의료 분야의 중요한 판례도 소개하여, 영문 판례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분야의 중문 판례를 제공하고 있다 [https://library.scourt.go.kr/kor/judgment/chi_judg.jsp (검색일; 2015.12.16.)].

19)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2011년도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세미나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1, 21면.

20) 박광동 외 4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225면.

으로 하는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베트남 사법부를 지원하고 있다.21)

[그림 2-1] 대법원 영문판례 제공 홈페이지22)

판례판결정보

영문판례

Home > 판례판결정보 > 영문판례

ALL Private Law Administrative Law Taxation Criminal Law Intellectual Property 검색

번호	판결일자	제목	SNS	조회수
1	2015.01.29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36112 Decided on January 29, 2015 [Claim for Cancellation of Corrective Order, etc.]	f t e	2
	2015.01.29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사정명령동회소청구위소]	f t e	
2	2015.01.29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40237 Decided on January 29, 2015 [Damages, etc.]	f t e	33
	2015.01.29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40237 판결 [손해배상(기)]	f t e	
3	2015.01.29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08764 Decided January 29 2015 [Collection Charges]	f t e	71
	2015.01.29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추심금]	f t e	
4	2015.01.29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17498 Decided January 29 2015 [Damages etc.]	f t e	34
	2015.01.29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손해배상(기)]	f t e	
5	2015.01.22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10978 Decided January 22 2015 [Insurrection Conspiracy National Security Act Violation (Praise Incitement Etc.) Insurrection Agitation]	f t e	34
	2015.01.22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내란선동]	f t e	
6	2014.12.11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8990 Decided December 11, 2014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uling by a General Assembly Tribunal] * First draft	f t e	256

21) <http://www.scourt.go.kr/judiciary/international/relation/index.html> (검색일; 2015.12.16.).

22) http://library.scourt.go.kr/kor/judgment/eng_judg.jsp (검색일; 2015.10.2.).

[그림 2-2] 대법원 중문판례 제공 홈페이지²³⁾



(4)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대법원은 외국법조인장학생초청 사업 이외에도 한·일 법관 워크숍, 한·중 사법 세미나, 국제 법률 콜로퀴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 법조 관련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사법 부와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⁴⁾

23) http://library.scourt.go.kr/kor/judgment/chi_judg.jsp (검색일; 2015.10.2.).

24) 이하의 표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의 국제화 [<http://www.scourt.go.kr/judiciary/international/conference/index.html>]’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검색일; 2015.10.2.).

연 도	프로그램
1999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최
2005년	한·일 법관 워크숍 개최(제1회)
2007년	한·일 법관 워크숍 개최(제3회)
2008년	한·중 사법 세미나
2009년	한·일 법관 워크숍 개최(제5회)
2010년	국제 법률 콜로퀴움 개최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법관 워크숍 개최(제7회)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최 • 국제 법률 콜로퀴움 개최
2012년	국제 법률 심포지엄 개최
2013년	국제 법률 심포지엄 개최
2014년	국제 법률 심포지엄 개최

2. 헌법재판소

(1) 개 관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인사의 외국 헌법재판 관련 기관 방문, 베니스위원회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사례를 학습하고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주요 외빈 및 개발도상국의 방문단에 대한 견학과 연수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수함으로써 국제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²⁵⁾

25)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검색일; 2015.10.2.).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각국의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연수를 실시해왔다. 연수내용은 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초기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에 우리의 헌법재판 경험을 전수하는 것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한 이후에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외국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우리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로스쿨생 실무수습 과정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외국 헌법재판소 공무원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업무 경험을 전수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외국 헌법재판소 공무원 연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표 2-2] 헌법재판소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현황²⁷⁾

연 도	과정명	참가국
2004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 실무연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 일행
2009년	몽골 헌법재판소 초청연수	몽골 헌법재판소 대표단
2012년	미얀마 헌법재판소 직원 초청연수	미얀마 헌법재판소 직원 일행
2013년	캄보디아 헌법위원회직원 초청연수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직원
	몽골 헌법재판소 직원 초청연수	몽골 헌법재판소 직원

26) https://ri.ccourt.go.kr/cckri/cri/edu/eduCurriculum.do;jsessionid=nfQZ6jIPzBe1oRtJ1axKkunIH1R1xEKMYFauHyUdN21d0hyvOjkVOEgORX1vvJMa.COWAS-1_servlet_engine3 (검색일; 2015.12.16.).

27) <http://history.ccourt.go.kr/cckhome/history/worldcourt/historyVooperation01.do/> (검색일; 2015.10.2.).

연 도	과정명	참가국
2013년	중국판사연수	홍콩 성시대학 법학원에서 JSD 및 LL.M 과정 이수 판사
2014	외국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2015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실무직원 초청연수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실무직원

(3)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주요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장회의에 참가하거나 외국의 헌법재판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을 통하여 외국의 헌법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판관, 헌법연구원 등이 베니스위원회 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과의 인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를 통해 세계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국내외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표 2-3] 헌법재판소 개최 국제회의²⁸⁾

년 도	개최회의	주 제
2007년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에 있어서 헌법 심사의 기준 • 아시아 헌법재판소 회의 설립 규약
2008년	세계 헌법재판소장 회의	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2012년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창립총회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28) <http://history.ccourt.go.kr/cckhome/history/worldcourt/historyConstitutionalTrial01.do/> (검색일; 2015.10.2.).

3. 법무부

(1) 개 관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²⁹⁾ 법무부는 1997년 한국국제협력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Workshop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을 개설하였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법무부가 담당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은 법무연수원이 실시하는 외국 법조인연수과정과 국제법무과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법제교류지원사업 및 국제회의개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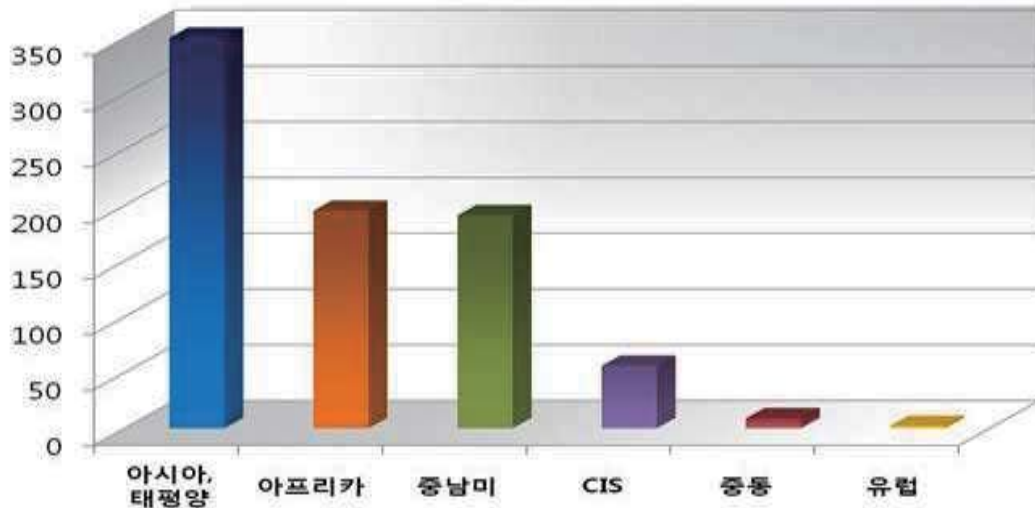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조하여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의 법조인 및 법무행정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2014년 12월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23개국(590명), 아프리카 26개국(205명), 중남미 18개국(284명) 등 84개국의 고위법조인 등 1,173명이 연수를 받았다.³¹⁾ 2015년의 첫 국제연수과정인 ‘중남미 출입국관리 행정과정’이 3월2일부터 3월17일까지 실시되어 볼리비아,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이민청 직원 및 관련 공무원 18명이 참가하였다.³²⁾

29)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법무연수원 홈페이지[<http://www.lrti.go.kr>] (검색일; 2015.10.2.).

30) 앞의 각주 7) 및 8).

31) <http://www.ioj.go.kr/homepage/education/PlanAction.do?method=04&top=2&sub=2> (검색일; 2015.12.16.).

32) <http://lrti.go.kr/homepage/announcement/PhotoAction.do?method=view&bbId=12&buSeqNo=36702> (검색일; 2015.12.16.).

[그림 2-3] 국제연수과정 운영실적(누계)³³⁾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외국법조인연수과정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법조인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국제워크숍 과정으로서 약 2~3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연수과정의 목적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범죄 제어방식 및 관리와 관련한 오늘날의 문제를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다.³⁴⁾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한국 사법제도 연수과정이 주로 특정 국가의 법관들로만 구성된 연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외국법조인연수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법관이 함께 연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연수과정은 크게 전문과정과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전문과정은 강의와 세미나, 각국별 법률정비 사례 등의 국가 보고서 발표 및 그룹토론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 프로그램은 법무연수원의 소개 등의 오리엔테이션,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관광 및 산업시찰

33) <http://cyber.lrti.go.kr/homepage/education/PlanAction.do?method=04&top=2&sub=2> (검색일; 2015.10.2.).

34) <http://www.ioj.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2> (검색일; 2015.12.16.).

등의 사회 및 문화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⁵⁾

교육과정	내 용
전문과정	강의, 세미나, 국가 보고서 발표, 그룹 토론
오리엔테이션	법무연수원 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개관, 법무연수원 규정
사회프로그램	호스트 프로그램, 가정방문, 우리나라 기관의 환영만찬
문화프로그램	우리나라 사법기관 연구방문, 산업시설 견학, 역사 및 문화 유적지 견학

이 가운데 특히 국가보고서³⁶⁾는 연구 및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이 연구 및 논의를 위해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서, 모든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간 동안 소속 국가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다양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관리방법을 공유하여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에 있다.³⁷⁾ 이를 통해 외국법조인연수과정에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연수라는 차원을 넘어 연수생들 상호 간의 법제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연수원에서의 연수과정 이외에도 법무부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별국가초청연수,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의 외국의 출입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연수과정, 대검찰청 차원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사범 퇴치 분야에 대한 형사사법 지원 등이 있으나 법무부 차원의 연수는 법무연수원이 실시하는 국제연수과정이 증축을 이루고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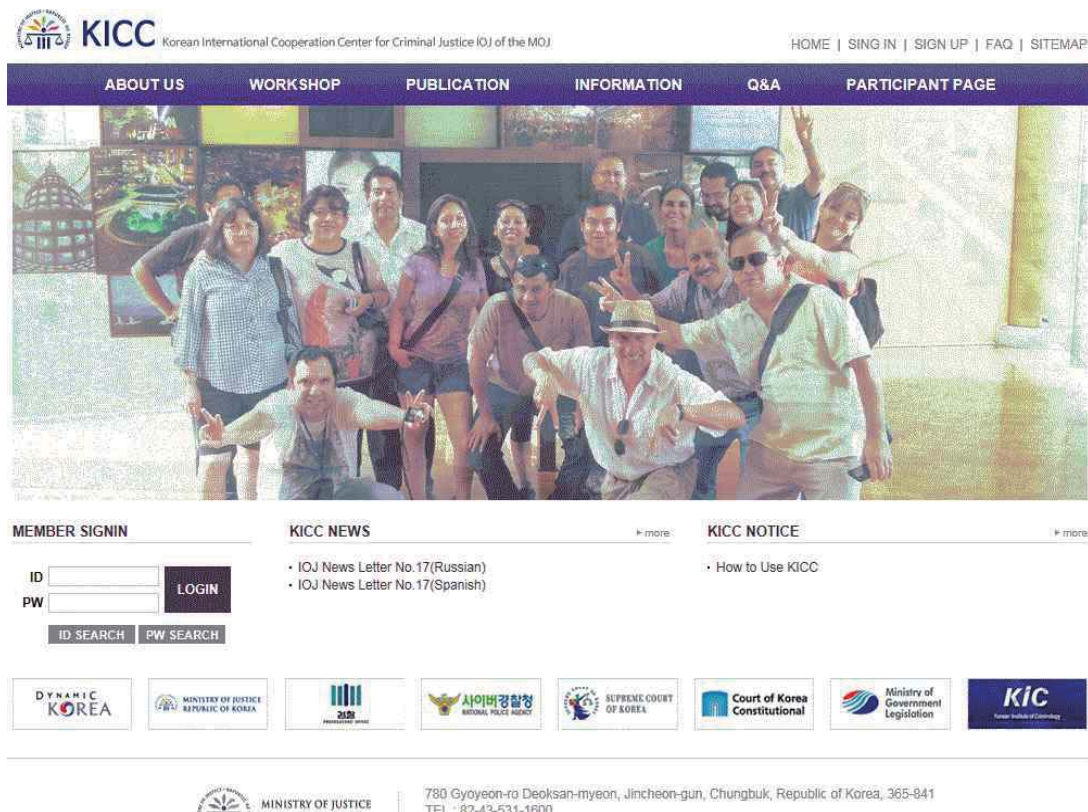
35) <http://www.ioj.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3> (검색일; 2015.10.2.).

36) 국가보고서는 각 워크숍의 주제에 해당하는 참가자의 국가의 실제 상황, 현재의 관행, 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을 언급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도 자국의 역사, 문명, 문화, 종교, 사법 시스템의 일반 정보 및 형사사법시스템을 포함하여 참가자의 국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7) <http://www.ioj.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8> (검색일; 2015.12.16.).

법무부는 법률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고등교육재단과 공동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해외 한국법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처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그림 2-4] 법무연수원 외국법조인과정 홈페이지³⁹⁾



(3) 법제 및 시스템 지원

법무부는 2004년 선진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과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법정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시아법연구소에 “체제전환국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38) 연성진 외 5인, 전거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17-18면.

39) <http://www.lrti.go.kr/icc/FrontHandler.do?method=index> (검색일; 2015.10.2.).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이후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⁰⁾

법무부에서는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법령입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APEC 계약분쟁 전문가 워크숍’을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APEC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맞춤형 법제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소송제도를 수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⁴¹⁾

또한 법무부는 2011년 인도네시아와 페루, 2012년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법제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3년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현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시킨 바 있다.⁴²⁾ 아울러 2014년에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법무부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경험을 APEC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알리는 한편,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경험을 상호 공유한 바 있다.⁴³⁾

법무부의 성과 가운데 주목할 것은 라오스 증권법의 제정을 지원한 것이다. 즉,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KRX)와 더불어 라오스의 증권법 제정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자문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증권법을 입법하였으며, 자세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⁴⁴⁾

40) 법제처, 전게서, 116면.

41) https://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8486&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검색일; 2016.12.16.).

42)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tableName=TYPE_DATABOARD&seqno=347731 (검색일; 2016.12.16.).

43)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224&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검색일; 2016.12.16.).

44) 법무부, “법무한류(K-Law)의 첫 번째 퀘거, 창조경제를 지원하다”, 2013.11.15. 보도자료, 3면.

년 도	사업경과
2011년	라오스 정부로부터 공식 지원요청 접수(6월)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방한(1월) •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방안 연구” 연구용역 계약 체결(3월) • 라오스 현지, 제1차 세미나 참석(라오스 증권거래소(LSX) 방문 및 실무협의, 5월) • 국내 초청, 제2차 세미나 개최(증권법 제정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10월) • 라오스 증권법 국회 통과(12월)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증권법 공포(1월) • 라오스 증권법 시행(3월) • 라오스 증권감독원, 라오스 증권법(라오스어본) 전달(6월) • 라오스 증권감독원, 라오스 증권법(영문본) 전달(10월) •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11월) • 라오스 현지, 제3차 세미나 참석(하위법령 정비방안 등 논의, 12월)

이와 아울러 2012년부터 벨라루스, 2013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증권법제 정비지원사업 및 2012년부터 미얀마, 2014년부터 몽골의 중재법제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무부 독자적으로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⁴⁵⁾

(4)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는 200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및 캄보디아 등 4개 체제전환국의 법무부 법제개혁 담당자를 매년 1회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⁴⁶⁾ 또한 외국의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2011년부터 한국법 센터 개소 사업을

45)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125&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검색일; 2016.12.16.).

46) 법제처, 전계서, 117면.

적극 추진하여 중국 연변대,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등에 각각 한국법 센터를 개소하였고, 개소된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법 강의를 실시한 바 있다.⁴⁷⁾

법무연수원은 1985년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2002년 중국 국가검찰관 학원, 2010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와 MOU를 체결하거나 상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몽골, 2015년 우즈베키스탄 및 네팔을 방문하여 현지컨퍼런스 및 동창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진행해온 연수내용의 현업 적용도 및 현지 형사사법 운영 실태와 연수성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연수생 상호간 및 대한민국 법무연수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⁴⁸⁾

이외에도 2011년 온라인 소식지인 IOJ Newsletter를 창간하였고, 국제 연수 전용 웹사이트(<http://www.lrti.go.kr/icc/FrontHandler.do?method=index>) 등을 활용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 지식경제부

(1) 개 관

지식경제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합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orea and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⁴⁹⁾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

47) 최태은, 전계논문, 29면.

48) <http://lrti.go.kr/homepage/education/PlanAction.do?method=04> (검색일; 2016.12.16.).

49) KSP사업 홈페이지[<http://www.ksp.go.kr/kr/main/main.jsp>] (검색일; 2015.10.2.).

문·역량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식집약적인 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이 사업의 구성은 한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정책 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대상국에 개발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한국의 발전 경험을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보고서로 출판하는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의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⁵¹⁾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현재 세 개의 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정책자문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을,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²⁾

(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의 구성

1) 주 기⁵³⁾

Program Cycle | 프로그램 주기

1단계	관계부처를 통한 수요조사 관계부처 서면조사를 통한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수요 파악
2단계	주제 및 연구진 선정 (과제별 Task Force 팀 구성)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해당 연도 모듈화 주제의 적정성 검토 및 연구를 수행할 분야별 전문가 선정
3단계	연구수행 과제별 연구진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 및 집필 수행
4단계	보고서 발간 사업의 최종 결과물로서 국·영문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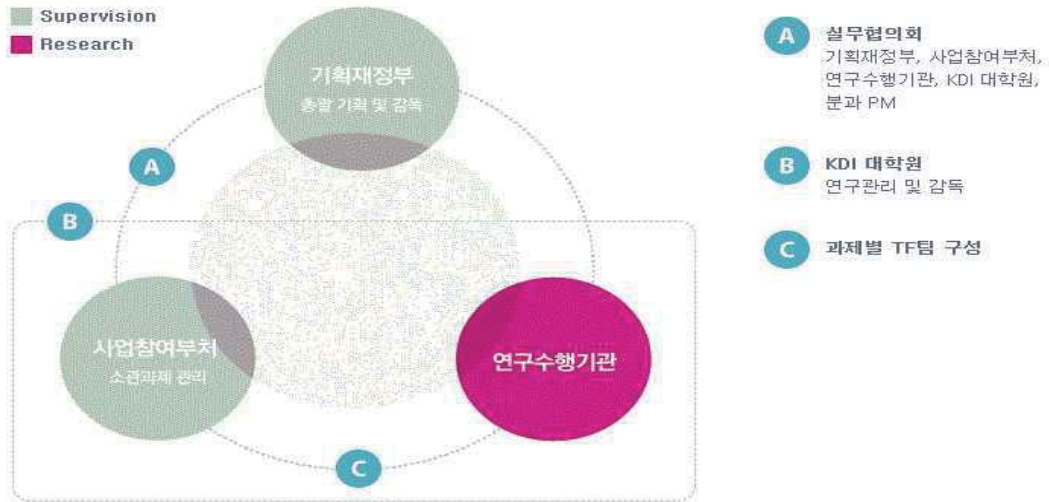
50) 기획재정부, 『KSP 10년사』, KDI, 2015, 26면.

51) <http://www.ksp.go.kr/kr/ksp/ksp.jsp> (검색일; 2015.12.16.).

52) 각 기관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박광동 외 4인, 전게서, 24-25면에 기술되어 있다.

53) <http://www.ksp.go.kr/kr/pillars/modulcycle.jsp> (검색일; 2015.10.2.).

2) 사업 조직도⁵⁴⁾



3) 수행절차⁵⁵⁾

Program Implementation | 프로그램 수행절차



54) <http://www.ksp.go.kr/kr/pillars/modulecycle.jsp> (검색일; 2015.10.2.).

55) <http://www.ksp.go.kr/kr/pillars/modulecycle.jsp> (검색일; 2015.10.2.).

(3) 사업현황

각 연도별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⁵⁶⁾

년도	분 야	과제명
2010년	경제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B)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 (C) 녹색산업 육성정책 • 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업육성을 위한 금융·조세 지원 (B)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C) 한국의 기업가정신 발현과 그 성과 • 중소기업은행의 설립과 역할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운영 • WTO 가입전략 및 FTA 추진전략 • 수출자유공단 설치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무역진흥기관(TPO) 및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설립
	행정·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대상 인터넷 교육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재원조달
	산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근대화를 위한 생산성운동의 전개와 생산성기구의 역할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등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 연구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KIST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설립 및 운영 (B) 대덕연구개발특구 설립 및 운영 • 공업고등학교 및 기술전문대학 설립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설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통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56) <http://www.ksp.go.kr/kr/projects/modul.jsp> (검색일; 2015.10.2.).

제 2 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년도	분 야	과제명
2011년	경제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 및 활용 • 공공투자관리제도의 개혁 :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정책 경험 • 자본시장 육성 : 기업공개정책과 유통시장정책 경험
	행정·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정보보호 발전경험 • 한국의 문화재 보호제도 :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 규제개혁과 경제발전 •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 대한민국 반부패 형사정책의 운영경험 •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 새마을운동 모범사례 • 전자정부제도 도입
	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운영 • 한국의 녹색혁명 - 벼 통일형 품종의 개발과 보급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시사점 • 보건소 중심의 농어촌 의료보건 개선 사업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대화 사업
	산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 사례 • 숙련집약 섬유산업 육성경험 •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 •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電化사업 • 4개 제조업 부문의 기술능력 개발 사례 • 산업기술대학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시스템 •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 전자통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년도	분 야	과제명
2011년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가기술검정자격제도의 역할과 기능 • 산재보험제도의 구축과 운영 • 한국의 교원양성교육의 성공전략 • 한국전쟁 이후 교육 재건을 위한 초등의무교육계획 추진전략 • 한국 성인 文解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 • 여성특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및 사업 운영 경험
	국토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 한국형 신도시 개발 •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 교통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조달 사례 • 교통 DB 구축을 통한 교통투자사업의 추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종량제 정책 • 환경부담금 제도 운영
2012년	경제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안정화정책 운용경험 • 농지개혁 •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운용경험 • 국채시장 발전경험 (발행, 유통, 인프라) • 외자도입 운용경험 • 공공기관 관리체계 • 재벌정책 : 1980-90년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 민간투자유치정책(PPP) • 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험 및 방법론 • 조달행정 법 제도에 관한 프레임워크 구축 •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경험 • 사금융시장 양성화정책 및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발전방향 • 예금보험제도 •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경험 및 방법론

제 2 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년도	분 야	과제명
2012년	행정·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 •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 정부 인사운영에 있어서의 성과주의제도 도입
	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과 생산기반 정비 • 농업용수 개발 및 공급방안 • 한국의 백색혁명 : 시설채소 재배기술 •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및 기술개발 •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 관련 법제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방접종사업 • 의료인력 재교육 사업
	산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산업 육성정책 •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사양산업 구조조정 방안) •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육성정책 •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 인적자원고용안정 제도 구축 • 산업재해예방 제도 구축 및 운영 • 한국경제발전예 기여한 국가표준인프라 체계 구축 • 한국경제발전 초기 과학기술도입과 내재화 방안 • 교육의 발전과 민간부문의 역할
	국토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 공항정책 및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체계 개선 • 하천정비 및 관리정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정책

년도	분 야	과제명
2013년	경제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있어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 자산 운용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연구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운용경험
	행정·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부모 가족지원 • ICT 인력양성 • ICT 연구개발체계
	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시스템 •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임산자원개발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프로그램 • 기생충 퇴치사업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 중등교육체계 구축 •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국토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제도구축(수용보상제도)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구축 •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KLIS를 중심으로

(4) 사업성과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법제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2009년 인도네시아 KSP로 추진되었던 경쟁법에 관한 자문, 2012년 몽골 KSP 주제였던 몽골 예금보험법에 대한 자문, 2013년 KSP 가운데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캄보디아 상표법 관련 자문 등이 대표적이다.⁵⁷⁾

이외의 각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⁵⁸⁾

분 야	주 제
경제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개발 •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 및 활용 • 자본시장 육성 : 기업공개정책과 유통시장정책 경험 •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운용경험
행정 ·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재원조달 • 한국의 정보보호 발전경험 • 전자정부제도 도입 •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농 ·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운영 • 한국의 녹색혁명 : 벼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 • 농지이용과 생산기반 정비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 • 보건소 중심의 농어촌 의료보건 개선사업 • 의료인력 재교육사업
산업 ·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 설립 •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 사례 • 4개 제조업 부문의 기술능력 개발 사례 •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사양산업 구조조정 방안)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포항공대 등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 성인文解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 • 한국경제발전 초기 과학기술 도입과 내재화 방안
국토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 한국의 KTX 고속철도 및 기존선 고속화 추진 사례 • 국토 및 지역 개발정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종량제 정책 • 환경부담금제도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57) 박광동 외 4인, 전게서, 26면.

58) <http://www.ksp.go.kr/kr/pillars/modulsnap.jsp> (검색일; 2015.10.2.).

이러한 성과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관한 모듈화를 정리하여 출판물로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년 도	과 제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경험 • 전자정부제도 도입 •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 산재보험제도의 구축과 운영 • 환경부담금 제도 운영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행정 법제도 • 농어촌 정비 및 개발 지원 관련 법제 •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모듈화 •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운용 경험 •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UAE, 도미니카 등 주요 경제협력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관련 법제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법제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수출신용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조직 및 업무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수출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가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규제 환경 개선을 자문주제로 하여, 행정절차·토지·노동·세제·계약제도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대상국의 빈곤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제안하기도 하였다.⁶⁰⁾

59) <http://www.ksp.go.kr/kr/publication/modul.jsp> (검색일; 2015.10.2.).

60) 기획재정부, “KSP를 통한 한국의 법제경험 전수”, 2011.11.10. 자 보도자료, 2면

5. 법제처

(1) 개 관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 등의 법령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법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의 법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⁶¹⁾ 또한,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법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개별 법령 또는 입법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는 등 아시아 지역의 법제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2) 법제 및 시스템 지원

1) 법제지원

법제처는 우리나라가 성취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로서 2011년부터 ‘대한민국법제 60년사’를 연속적으로 발간하여 “경제법제 60년사”(2011년),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복지·노동·환경”(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마지막 편으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를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 정부 및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⁶²⁾

2012년 베트남 정부는 자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입법화하는 정보접근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수집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이 때 법제처는 법제지원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제공한 바 있다.⁶³⁾

61)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5.10.2.).

62)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 법제처, 2013, 3면.

이후 베트남 법무부와 법제처는 2012년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당시 베트남 법제기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주민등록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관련 법제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매년 2~3차례 우리나라에 법률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⁶⁴⁾

이외에도 법제처는 몽골에 말산업 육성법을,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는 부패방지법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5]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 주요 현황⁶⁵⁾



2) 시스템지원

법제처는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을 영어 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의 법제 관련 기관 또는 투자기업 등에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외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고 법제교류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63) http://www.moleg.go.kr/news/media/mediaData.jsessionid=uYflGh6a5xFUcdGs531O5iCauQ5UqKeDGBobGWMzap4tMY6efzt138qINNjeUE1.moleg_a2_servlet_engine2?pstSeq=58793&pageIndex=6 (검색일; 2015.12.16.).

64)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15250> (검색일; 2015.12.16.).

65) <http://www.moleg.go.kr/introduction/majorFunction/lawCooperation> (검색일; 2015.10.2.).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주요 법령, 연구보고서 및 최신동향 등을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의 법제정보를 해외진출 기업, 선진법제 등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집 및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외국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⁶⁶⁾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⁶⁷⁾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국가법령정보시스템과 입법지원시스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였고, 최근 법제처와 미얀마 정부 간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법제처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미얀마 법제전문가 양성 및 통합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되었다.⁶⁸⁾

66) 김수용, “정부 제출 법률안 입안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제처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014.3., 18면 .

67) <http://www.moleg.go.kr/introduction/majorFunction/lawCooperation> (검색일; 2015.10.2.).

68)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실시협의 결과보고』, 법제처, 2014, 3면.

[표 2-4]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2015년~2017년)⁶⁹⁾

년 도	사업경과
2012년	미얀마,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대한 보급 요청서 제출 및 상호 방문(2012년 이후, 3회 방문)
2013년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사업지원요청서 KOICA에 제출(10월)
2014년	법제처·KOICA,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3월)
	법제처·KOICA,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세부 계획 마련(4월)
	KOICA ODA 부처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심의 통과(5월)
	법제처·KOICA,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협의 조사(12월)
2015년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1월 ~ 5월) - 미얀마 법무부 차원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 - 사업 범위, 추진 전략, 소요 자원, 추진 일정을 확정하는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및 법령정보 DB 구축(2015년 6월 ~ 2016년 4월) - 미얀마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함에 있어서, 제정, 개정된 법령정보를 등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원 - 법령 원문 텍스트의 입력, 마킹작업,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생성하고 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지원, 기자재 설치, 감리 및 평가(2015년 6월 ~ 2017년 12월)

69)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4, 6-8면.

(3)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법제처의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아시아법제포럼을 들 수 있다. 아시아법제포럼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융·복합적인 법제정보 교류 채널 확보, 연구계·학계·산업계·법조계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법제교류지원 기반 조성, KSP 및 ODA(공적개발원조)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회 등 재외국민에게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재한 아시아 국민에게 우리나라 법령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다.⁷⁰⁾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은 2011년에 개최되어 본회의에서는 법제경험과 법제정보 교류, 경제발전과 법제 등의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진 분과회의에서는 도시개발법제, 재난방지법제, 녹색성장법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루어진 코뮤티케를 통해 참가국 대표들은 아시아법제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문제, 향후 아시아법제포럼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⁷¹⁾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은 2012년에 개최되었으며, 포럼의 주요 분과회의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경제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경제발전 법제 및 기업 법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주제별 분과회의에서는 농촌근대화 법제, 입법평가 법제, 중소기업 육성 법제, 토지·건설 법제, 재난방지 법제, 남북 법제, 녹색 성장 법제, 자치법규 법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분과회의에 이은 코뮤티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경험의 공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70)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2, 4면.

71) <http://www.moleg.go.kr/news/media/statuteUCC.jsessionid=D2In8AjJ9lXqatpUsTa1xuyfADzfRu6c8f1iIkVbV9i07p2xHcICChZiVcuDV2ax?pstSeq=57492&pageIndex=4> (검색일; 2015.10.2.).

형성, 실질적·구체적 법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아시아 법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참여 등이 논의되었다.⁷²⁾

아시아법제포럼은 선진 법제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물론,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선진 법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우리 법제를 아시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⁷³⁾ 법제처에서는 아시아법제포럼의 개최를 계기로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과 법제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⁷⁴⁾

이와 아울러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근간이 되었던 법제적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법제교류 활성화 및 기관 간 협업 증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3년, 2014년 2회에 걸쳐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⁷⁵⁾

2013년에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하에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법령 인프라와 법제교류, 분야별 법제의 국가별 적용(분야별 법제의 국가별 접목) 등의 주요의제를 검토하였다.

2014년의 제2회 회의에서는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법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일반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⁷⁶⁾ 이

72) 법제처,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국가의 법제 교류·협력 허브로 만든다”, 2012.6.18. 자 보도자료, 2-3면.

73) 법제처, “법제처, 아시아 국가의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1st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개최”, 2011.11.14. 자 보도자료, 5면.

74)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jsessionid=ESr6ugd3YQlpBinhbQRahdSSqQOZ5mivzGgTy8m8I7uNiNQ560FSRRFQi1U1iOPZ.moleg_a1_servlet_engine2?pstSeq=59180&brdSeq=33 (검색일; 2015.12.16.).

75) 법제처,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법제처, 2013, 3면.

76) 법제처,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법제처, 2014, 3면.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①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②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하였다.

제1회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법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반론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가지는 회의라면 제2회 회의는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회의로서 유라시아국가들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실제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였다.⁷⁷⁾ 법제처는 2차례의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 공통 법제이슈에 대해 법제도를 관장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수요를 반영한 교류협력을 유도하였으며, IT 수출 관련 소관 부처 및 민간 기업을 외국 법제기관과 연결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법제 교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법제 한류의 실질적 성과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⁷⁸⁾

이외에도 법제처는 미국, 중국, 일본 및 베트남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의 법제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우리 법제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권 12개 국가 17개 기관(정부기관 : 13, 대학 등 : 4)들과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특히 베트남 및 미얀마 등과는 법제협력 전반에 관한 실무급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⁷⁹⁾

77) 법제처,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 2014, 법제처, 17면.

78) 법제처, 전계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107면.

79) 김수용, 전계논문, 18면.

[표 2-5] 외국 법제기관과의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현황
(2015. 3. 31. 기준)⁸⁰⁾

년 도	대 상	내 용
2006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양측 법제기관 법제교류협력 강화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정보제공
2011년	말레이시아 법무처	상동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	양측 간 법제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
	몽골 국회법사위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 간 법령정보 제공 협력
	캄보디아 법무부	상동
	미얀마 법무부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정보제공 협력
	중국 정법대학	한·중 공동연구 등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법령정보 제공
2012년	중국 인민대학	상동
	우크라이나 법무부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정보제공 협력
	베트남 법무부	상동
2013년	태국 내각사무처 간 교류 협력 의향서(LOI)	공평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력, 적절한 절차를 거쳐 MOU에 서명 할 것임을 합의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정보제공 협력
2014년	몽골 법무부	상동
	카자흐스탄 법무부	상동
	카자흐스탄 인문·법률대학	상동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	상동

80) <http://www.moleg.go.kr/openarea/publicInformation/publicInformationRetrieve/partAndType?pstSeq=69595&searchCsfCd=230035> (검색일; 2015.10.2.).

제 3 절 공공기관

1. 한국법제연구원

(1) 개 관

한국법제연구원⁸¹⁾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법제연구 및 법제교류지원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 관련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법령, 판례 등의 법령정보에 대해 상호 교류하고, 수집한 법령정보를 정리·번역 및 분석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법령정보 수집 및 연구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⁸²⁾ 이와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령 및 관련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자국의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외교 통상부, 법제처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 및 인력을 준비하는 등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해두고 있다.⁸³⁾

한국법제연구원이 법제교류지원 등을 위해 제공하는 법제 정보 서비스로서는 ①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에 확대하고자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영문법령DB, ② 법체계 정비와 같은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자

81)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ri.re.kr>] (검색일; 2015.10.2.).

82) 문준조, “국내 아시아법제연구의 동향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3., 72면.

83) 문준조, 상계논문, 72면.

상호 교류 및 법제자료 공유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ALIN), ③ 글로벌 법제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연구사업, 비교법제연구사업, 녹색성장연구사업,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지역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법제연구DB, ④ 입법의 과학화를 통한 선진입법 창조에 기여하고자 법제 분야별 입법평가 모델 구축과 입법평가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입법평가지원시스템 등이 있다.⁸⁴⁾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한국법제연구원은 외국의 전문법제인력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단기 교육 및 단기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몽골의 법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08년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제도를 주제로 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정보시스템의 소개 및 양국 간의 학술회의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상호 간의 법제정보 교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였다.⁸⁵⁾

이외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학술회의 및 전문가초청포럼 등을 개최하여 외국의 법학연구자, 입법관계 부처 공무원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워크숍, 세미나, 연수, 기타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입법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⁸⁶⁾

84) <http://www.klri.re.kr/kor/business/bizWebService.do> (검색일; 2015.12.16.).

85) <http://klri.re.kr/kor/news/newsTourList.do> (검색일; 2015.12.16.) 및

<https://www.klri.re.kr/kor/news/newsPubList.do?gubun=B> (검색일; 2015.12.16.).

86) <http://www.klri.re.kr/kor/business/bizGeneralSix.do> (검색일; 2015.10.2.).

(3) 법제 및 시스템 지원

1) 우리나라 법제의 번역 및 외국어 서비스

한국법제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를 외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1997년 대한민국영문법령집을 발간하였고, 2000년부터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01년과 2005년에는 영문법령 표준용어집을, 2009년에는 영문법령 용어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법령의 체계, 법령명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을 발간하였다.⁸⁷⁾

2010년에는 몽골국립법률센터와 함께 영어, 한국어 및 몽골어 법률 용어를 비교·정리하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어-한국어-몽골어 법률 용어사전’을 발간하여 우리나라와 몽골의 법제도를 이해하고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및 한국과 몽골의 법제에 대한 교육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⁸⁾

이외에도 우리 법제에 대한 외국어 입문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에는 독일어(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 2013년에는 영문(Introduction to Korean Law), 2014년에는 중국어책자(한국법논단 2014)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법을 글로벌 사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해외한국법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⁸⁹⁾

한편으로는 외국법령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사업도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서양법제 계수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87) <http://www.klri.re.kr/kor/news/newsPubView.do?seq=946&gubun=B> (검색일; 2015.12.16.).

88)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rchReportView.do?seq=922> (검색일; 2015.12.16.).

89) <https://www.klri.re.kr/kor/introduction/klriNewsView.do?seq=503> (검색일; 2015.12.16.).

프랑스의 중요한 법령용어들을 선별하여 해설한 독일 법령용어집, 프랑스 법령용어집 등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전문가는 물론 법률실무자와 일반인에게 유용한 법령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⁹⁰⁾

2) 법제모듈화사업 및 해외한국법연구·교육지원사업(Korea Law Project, KLP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에 대한 해외연구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2012년 12월 “GLOBAL KOREA LAW”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법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그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 해외한국법연구·교육지원사업을 출범시켜 수행하고 있다.⁹¹⁾

KLP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들과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법의 주요 쟁점과 한국법의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유럽, 미주 지역과 중국지역으로 나누어 각 국가의 한국법 연구자들을 초청해 미국 하와이와 중국 베이징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⁹²⁾

또한 2013년에 해외 한국법 연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한국법 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에 KLP 사업 및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2015년부터 한국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영문판 및 중문판 법학문헌을 제작하여 해외로스쿨 및 연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⁹³⁾

한편, 우리나라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여 법제교류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에

90) <http://www.klri.re.kr/kor/news/newsPubView.do?seq=245&gubun=B> (검색일; 2015.12.16.).

91) 이상모, “KOREA LAW PROJECT(KLP)”, 법연 2014 summer vol. 43, 한국법제연구원, 2014, 49면.

92) <http://www.klri.re.kr/kor/news/newsPubView.do?seq=1105&gubun=B> (검색일; 2015.12.16.).

93) 이상모, 전개기사, 49면.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모듈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발전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의 배경과 환경을 제시한 관련 법제의 발전경험에 대한 모듈화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연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법제발전 경험모듈화를 위한 방향성 및 개괄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게 됨에 따라 2014년 지적재산권 법제 모듈화와 관련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제모듈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3) 입법모델의 구축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패키지형 법제교류지원이 있다. 이것은 지원대상국 선정을 위하여 국내 협력기관간의 연계를 통하여 국내법제협력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국과 정책적 협력관계가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과 연계된 패키지형 법제교류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⁹⁴⁾

이를 위해 법제연구원은 2011년부터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입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이전의 연구들은 법제교류지원이나 법제도정비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ODA 대상 국가(수원국)들의 법체계에 관한 연구, 주요 국가들의 ODA 법제 연구라는 순차적인 흐름에서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들이 모델로 삼으려는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제교류지원 및 법제도정비지원사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들이 모델로 삼으려는 한국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⁹⁵⁾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경제 및 사회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단계를 3-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른 분야별 입법

94) <http://www.klri.re.kr/kor/business/bizGeneralSix.do> (검색일; 2015.10.2.).

95) <http://klri.re.kr/kor/business/bizPlanView.do?seq=%EC%88%98%EC%8B%9C-11-17> (검색일; 2015.12.16.).

모델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형태 및 추이에 따른 입법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⁹⁶⁾

(4)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들의 법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및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02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법학연구기관 또는 법과대학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법제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이를 체계화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ALIN)를 창립하여 현재는 ALIN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⁹⁷⁾

ALIN은 회원기관을 매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총회 및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법제 현안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⁹⁸⁾ 회원기관의 법학자들이 참가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관 간의 교류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⁹⁹⁾

ALIN 사업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를 상호간에 소개하고 각국의 법제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 발전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96) 법제처, 전게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122면.

97) ALIN이 창립되었던 2004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7개국, 1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 현재에는 16개국, 2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https://www.e-alin.org/kr/partnerShipList.do> (검색일; 2015.10.2.)].

98) ALIN 전문가 포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2015년 4월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을 주제로 11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alin.org/newsList.do> (검색일; 2015.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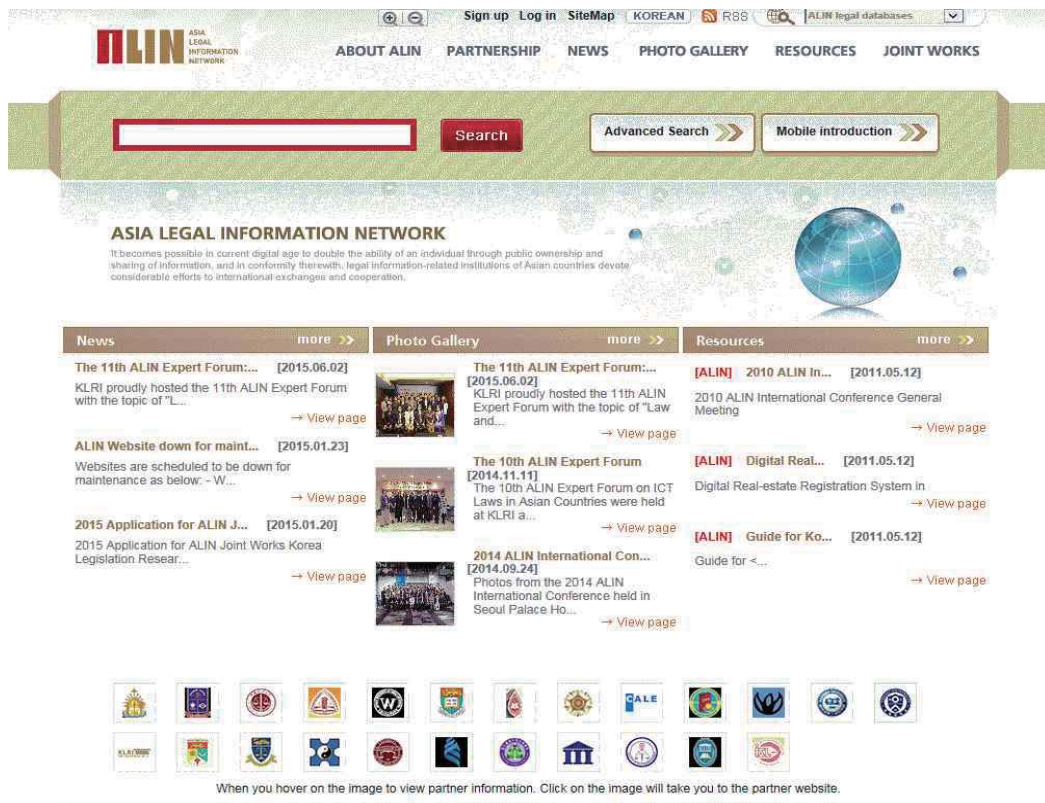
99) 공동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alin.org/jointWorksHowTo.do> (검색일; 2015.10.2.).

제 2 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법제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법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¹⁰⁰⁾

이외에도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아시아법제포럼 및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그림 2-6] ALIN 홈페이지 화면¹⁰¹⁾



100) https://www.e-alin.org/kr/aboutAlinVision_kr.do (검색일; 2015.10.2.).

101) <https://www.e-alin.org/kr/main.do/> (검색일; 2015.10.2.).

2. 한국국제협력단

(1) 개 요

한국국제협력단¹⁰²⁾은 1991년 당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초청연수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분야의 하나가 ‘행정제도(거버넌스)’이며, 이의 주요세부사업인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법률체계 구축,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사회안정 및 균형발전 지원 등을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⁰³⁾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먼저 1단계(역량강화)에서는 연수초청을 하거나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방법으로 법체계와 관련된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다음 2단계(제도개선)에서는 수원국과의 공동연구 또는 자문 등의 방법으로 사법체제의 공정성을 고양시키는 한편 법조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훈련 제도를 개선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회안정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¹⁰⁴⁾

102)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5.10.2.).

103) 손희두, “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9.7., 111면.

104)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공공행정 분야 전략(2013-2015), 한국국제협력단, 17-18면 [[http://www.koica.go.kr/dev/download.jsp?strFileSavePath=/ICSFiles/afildfile/2014/11/19/2.hwp&strFileName=KOICA%20%B0%F8%B0%F8%C7%E0%C1%A4%BA%D0%BE%DF%C0%FC%B7%AB\(%BE%F7%B5%A5%C0%CC%C6%AE\).hwp](http://www.koica.go.kr/dev/download.jsp?strFileSavePath=/ICSFiles/afildfile/2014/11/19/2.hwp&strFileName=KOICA%20%B0%F8%B0%F8%C7%E0%C1%A4%BA%D0%BE%DF%C0%FC%B7%AB(%BE%F7%B5%A5%C0%CC%C6%AE).hwp)] (검색일; 2015.12.16.).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기관의 법제교류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⁰⁵⁾

또한 최근에는 연수 사후관리 일환으로 동부 아프리카에서 연수 사후 관리 현지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선진 사법제도 전수를 위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법제 및 시스템 지원

한국국제협력단의 외국에 대한 법제 및 시스템 지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 사업과 베트남 ICT 입법 지원 사업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의 대외 수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되었던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 사업’은 라오스 전자정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적, 제도적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전자정부 센터 건축, 데모시스템 설치 등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이었다.¹⁰⁶⁾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되었던 ‘베트남 ICT 입법 지원 사업’은 베트남 정보인프라 구축에 상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한 디지털 경제 발전 달성 지원에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베트남의 ICT 입법 프레임워크를 위한 국가 비전 제공 및 IT 관련법 초안을 제공하는 것에 있었다.¹⁰⁷⁾

105) 법제처, 전계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123면.

106)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2008, 1면.

[표 2-6] 라오스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 추진 경과¹⁰⁸⁾

년 도	추진내용
2003년	라오스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 형성조사 실시(사업추진 방향 협의 등, 12월)
2004년	사업요청서 접수(5월)
	실시협의 협의의사록(R/D) 체결(8월)
	사업집행계획 수립(9월)
2005년	e-Government DEMO System 개발(7월 ~ 10월)
	실무자과정 초청연수 실시(9월 ~ 10월)
	관리자과정 초청연수 실시(11월)
	기자재설치 전문가 파견(11월)
	개원식(11월)
	전자정부분야 전문가 파견(2005.12. ~ 2006.2.)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은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지원사업, 알제리 선박안전관리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¹⁰⁹⁾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을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전수 및 수출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이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07)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ICT 입법 지원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2008, 1면.

108)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 종료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6, 7면.

109) 강명옥, “북한과 ODA”,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195면.

[표 2-7] 한국국제협력단 ODA 전자정부 사업현황¹¹⁰⁾

년 도	대상국가	사업명	기 간
2007	몽골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	2007~2010
		관세행정현대화 사업	2007~2009
	네팔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	2007~2009
	가나	외교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	2007~2008
	파라과이	중앙부처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2007~2008
	파나마	전자정부 및 원격교육 지원사업	200~2008
2009	베트남	마약통제행정역량강화사업	2009~2011
		전자조달 시범시스템	2009
		유해물폐기관리시스템	2010~2011
2009	과테말라	관세행정현대화사업	2010~2011
2010	방글라데시	전자결재시스템	2010
	모로코	e-Gov 플랜 및 CERT	2010~2012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	2010~2012
2011	아제르바이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	2011~2013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2011~2013
	네팔	전자통관시스템	2011
	몽골	전자특허시스템	2011
		국가등록시스템	2011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2011	
2013	몽골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	2013~2016
	카메룬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

110) 아래의 표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KOICA 사업 - 사업분야 - 공공행정 [http://www.koica.go.kr/program/type/governance/1208560_1584.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작성하였다 (검색일; 2015.10.2.).

년 도	대상국가	사업명	기 간
201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사업	2013~2018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2013~2015
		표준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4~2016
2014	요르단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사업	2014~2017
	인도네시아	국가인증체계 구축 및 보안긴급대응사업	2014~2016

(4)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체제전환국 내지 개발도상국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역전문가 또는 자문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각국에 46개소에 이르는 다수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사무소와 3개의 국제기구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¹¹¹⁾ 따라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공정거래위원회

(1) 개 관

공정거래위원회¹¹²⁾가 실시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오늘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경쟁법 집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111) 각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 - KOICA 소개 - 해외사무소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5.12.16.)’ 참조.

11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검색일; 2015.10.2.).

상호 조율과 협력 등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¹³⁾

한편 최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쟁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지원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지원활동의 하나로서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경쟁정책 KOICA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¹¹⁴⁾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1996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의 기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정위-KOICA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연간 1~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쟁당국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 및 소비자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수과정과 소수의 참가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적인 연수과정은 2002년부터 12년간 19회 개최된 연수 과정에 총 55개국 306명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은 바 있다.¹¹⁵⁾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앗프로그램(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2개국의

113) <http://www.ftc.go.kr/policy/compet/policyNotion.jsp> (검색일; 2015.10.2.).

114) <http://www.ftc.go.kr/policy/compet/policyMain.jsp> (검색일; 2015.12.16.).

115) 공정거래위원회,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한국 공정거래법 전수한다”, 2014.8.21. 자 보도자료.

경쟁당국 실무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제1차 과정을 개최하였고, 이 과정은 2002년부터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기존 과정을 확대하여 소수의 연수 참가국에 대해 지속적·집중적·맞춤형으로 실시된다.¹¹⁶⁾

이외에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에서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아시아지역 경쟁센터를 OECD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¹¹⁷⁾ 이 프로그램들은 역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제·개정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아시아 각국의 공통 관심 사항 등 경쟁분야 주요 사항에 대한 연구 외에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및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쟁법·경쟁정책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2011년까지 13회, 32개국 486명이 연수를 받았다.¹¹⁸⁾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국의 경제상황과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지 주재 상시 컨설팅, 법령 제정 지원사업, 현지 워크숍 개최를 통한 사후점검 등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¹¹⁹⁾

116) 씨앗프로그램은 소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다년간 집중적·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연수으로써, 이 과정은 기초-일반-심화 과정으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2013년 제1차 기초과정이 운영되었다. 소수의 국가에 맞춤형 연수를 3년 간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연수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능력 배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 “32년간 경쟁법 진행노하우, CIS 2개국에 맞춤형 연수 실시”, 2013.5.20. 자 보도자료].

117)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는 2007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통합되었다.

118) <http://www.oecdkorea.org/user/nd71211.do> (검색일; 2015.10.2.).

119) 공정거래위원회, 전제 “32년간 경쟁법 진행노하우, CIS 2개국에 맞춤형 연수 실시” 보도자료.

[표 2-8]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과정 연수 국가(120)

연 도	과정명	참가대상
2002년	중국 경쟁정책과 경제발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무원
	경쟁법·정책과 시장 경제	스리랑카, 페루 등 12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03년	경쟁법·정책 워크숍	러시아, 루마니아 등 17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경쟁법·정책과 경제 발전	캄보디아, 중국 등 12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중국 국제통상 및 WTO 과정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무원
2004년	경쟁법·정책과 경제 발전	인도네시아, 중국 등 1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05년	체제전환국 시장 기능 강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경쟁법·정책과 경제 발전	중국, 우크라이나 등 12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06년	러시아 과정	러시아 반독점청,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경쟁법·정책과 경제 발전	네팔, 라오스 등 14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07년	몽골의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몽골 불공정규제처 공무원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베트남, 네팔 등 1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08년	상동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1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09년	상동	중국, 에티오피아 등 1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아프가니스탄의 경쟁 법과 시장경제발전	아프가니스탄 경제부 등 공무원

120) 공정거래위원회, 전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한국 공정거래법 전수한다” 보도자료.

연 도	과정명	참가대상
2010년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11년	상동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 8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12년	상동	베트남, 몽골 등 10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2013년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제1차 과정 : 기초 과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2014년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제2차 과정 : 일반 과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2015년	인턴십(실습) 프로그램	라오스, 파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리키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3) 법제 및 시스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법제 및 시스템지원방법은 우리나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국가에 파견하여 자문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자문관 파견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파견에 따른 기대 효과와 경쟁당국 사이의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문관을 파견할 국가를 선정하게 된다.¹²¹⁾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에 자문관(분야별 전문가)을 파견하는 사업은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 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ODA)의 하나로서 양 경쟁당국 간의 협력강화에 효과적인 기술지원 형태로 평가된다.¹²²⁾

12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 몽골과 나눈다”, 2014.12.11. 보도자료, 1면.

[표 2-9] 자문관 파견현황¹²³⁾

년도	대상기관	자문내용
2007년	몽골 경쟁소비자 보호청	몽골 경쟁법 개정 및 사건조사 및 경제분석 등
2008년	베트남 경쟁관리청	베트남 경쟁법 개정, 카르텔 조사 자문 등
2013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독점규제 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개정 필요사항 발굴 및 권고안 제시 • 조사 노하우 전수 • 규제영향평가 관련 모범사례 제시 •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시스템의 진단 및 효과적 개선방안 등의 컨설팅
2014년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 보호제도 소개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몽골 경쟁당국을 방문하여 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식관리 시스템(ThinkFair)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ThinkFair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베트남 경쟁관리청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였다.¹²⁴⁾ 또한 2013년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운영 중인 ThinkFair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는데, ThinkFair 구축·발전현황, 자료분류·관리방안, 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시스템의 진단 및 효과적 개선방안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¹²⁵⁾

122) http://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978&news_div_cd=1
(검색일; 2015.12.16.).

123) 공정거래위원회, 전개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 몽골과 나눈다”, 1면.

124) http://webzine.koica.go.kr/201407/sub5_1.php (검색일; 2015.12.16.).

125) 공정거래위원회 “개도국에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를 가르쳐준다”, 2013.11.11. 자 보도자료, 1면

이와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입법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베트남 경쟁관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파견을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¹²⁶⁾

(4)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에게 경쟁법·정책에 대해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회의이며,¹²⁷⁾ 주로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과 러시아 등 CIS 체제전환국의 공무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경쟁포럼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2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국제경쟁정책 이슈 논의 및 법·제도의 운용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¹²⁸⁾

또한 EU, 미국, 일본 등의 경제선진국들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은 우리나라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선진 소비자법제 운용경험을 전수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¹²⁹⁾

126)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9/30/0303000000AKR20110930172300017.HTML> (검색일; 2015.12.16.).

127)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공정거래 이슈에 관해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 마련”, 2012.9.3. 자 보도자료.

128) <http://www.ftc.go.kr/policy/compet/policyMain.jsp> (검색일; 2015.10.2.).

129) 법제처, 전거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127면.

제 4 절 민간기관

1. 아시아법연구소

(1) 개 관

아시아법연구소(Center for Asian Law)는 2004년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이웃나라 법률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장차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¹³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시아법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으로는 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조사와 비교연구, ② 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③ 국제적인 교류의 활성화에 따르는 법률서비스의 지원, ④ 법률가와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대한 지원과 협력, ⑤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법률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 ⑥ 장기적으로 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있다.¹³¹⁾

(2) 법제 및 시스템 지원

아시아법연구소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법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베트남 하노이 기관을 방문하여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법률개혁 현장을 돌아보고 필요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¹³²⁾

130) 아시아법연구소 홈페이지[<http://www.lawasia.org/main/?skin=index.html>] (검색일; 2015.10.2.).

131) http://www.lawasia.org/main/?skin=intro_open2.htm (검색일; 2015.12.16.). 다만 연구소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및 연혁[http://www.lawasia.org/main/?skin=intro_history2.htm (검색일; 2015.12.16.)]’에서는 ‘③ 국제적인 교류의 활성화에 따르는 법률서비스의 지원’이 생략되어 5가지의 주요사업을 게시하고 있다.

(3)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법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여 국내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는 연구소의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로 “아시아법연구의 현황과 과제 - 법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지원”을 선택하여 아시아법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한 바 있고, 2005년 “아시아경쟁법의 비교”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08년 베트남의 기업관련법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¹³²⁾

제 5 절 평 가

초창기 우리나라 기관들에 의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관련 기관 수장들 사이의 상호방문, 외국 법조인에 대한 우리나라로의 초청연수, 외국으로의 자문관 파견 등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개별 기관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교류지원을 계속하는 것과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초청연수가 실시되거나, 법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관련 국가들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물적 지원의 방법도 외국에 법조 관련 시설물의 건축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도, 법무부의 라오스 증권법 제정 과정과 법제처의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등과 같이 법안 초안의 작성에서부터 법 시행 및

132) 법제처, 전계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135면.

133) 권오승, “아시아법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대학교법학』 통권 제16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116-117면.

사후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법지원을 하거나, 법령정보 또는 전자정부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지원하는 등 과거와 비교하여 한층 발전적인 내용의 교류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발전의 배경에는 관련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초창기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을 기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사업실시 형태를 살펴보면 예산 또는 자금의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부담하고 기관이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배경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제의 모듈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직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법제의 모듈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로는 법제처의 ‘대한민국법제 60년사’와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일반 행정,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일련의 자료들이 작성되었다. 이 자료들이 작성된 분야들을 본다면 개발도상국 및 체제변환국 등의 수원국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중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요청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모듈화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타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기까지에는 관련 법제가 그 기반 및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주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지원국은 수원국이 특정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해 모듈화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수원국의 요청이 주로 집중되는 경제 및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제 모듈화 사업이 양적 또는 질적인 면에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모듈화 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경험들을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둔다면 지금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 법제가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모듈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각 개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분야의 선정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 기관 내지 부서를 통괄하는 부분까지 담당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구 내지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법제 모듈화 국외 사례조사

제 1 절 중 국

1. 정부기관

법제교류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최고인민법원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있다. 먼저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법제의 대외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과 국제기구와의 국제회의를 주최·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중국의 법관을 해외연수로 파견하고 또 외국에 법관을 요청하여 법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¹³⁴⁾

1) 개 관

최고인민법원은 1949년 10월 22일에 설립된 중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요한 사건의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중국의 각 지방법원의 업무를 관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산하에 27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그 중 외사국(外事局)은 주로 법원과 외국 사법계, 국제기구 사이의 사법 교류활동을 담당하고, 국제사법공조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법공조조약·국제조약의 협상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외국 관련기구의 사법협력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각급 지방법원의 외사업무를 지도한다.

2) 국제회의 개최

국제사회와의 사법교류를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기타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125개 국가와 지역의 사법기관 및 15개 국제기구와 지역성 국제기구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고 22개 국가의 최고사법기관과 협력비망록 또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148개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다자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134)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http://www.court.gov.cn>] (검색일; 2015.10.2.).

최고인민법원은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참석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법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990년 4월, 최고인민법원은 북경에서 제14회 세계법률대회를 주최하였는데 당시 67개 국가와 지역의 1,40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선언(北京宣言)>을 통과였다. 1995년 8월 최고인민법원은 제6회 아시아-태평양 수석대법관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제22회 세계법률대회를 개최하였고 <상하이선언(上海宣言)>을 통과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제4회 아시아-태평양 사법개혁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 사법개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였고 집중적으로 그동안 중국 사법개혁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3) 상하이협력기구 최고법원법원장회의

2006년 최고인민법원과 러시아연방최고법원이 공동으로 선도하여 지역 안전과 사법협력 및 상하이협력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법원 재판장회의를 시작되었다. 최고법원법원장회의를 통하여 상하이협력기구 각국은 사법영역 및 기타 법률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최고법원은 주기적으로 사법구조 개선, 각급 법원 업무 개선, 사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법원의 독립재판과 법관의 교육 등 문제에 관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한다.

상하이협력기구 최고법원법원장회의는 2006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2015년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다. 그중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과 2012년에 각각 제1회와 제7회 최고법원재판장회의를 주최한바가 있다.

국무원법제판공실¹³⁵⁾

1) 개 관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国务院法制办公室)은 총리를 협조하여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1954년에 국무원 산하에 설립되었다.

135) 국무원법제판공실 홈페이지[<http://www.chinalaw.gov.cn/>] (검색일; 2015.10.2.).

주요 업무로는 ① 총리를 협조하여 법제 관련 사무 처리, ② 국무원의 연도별 입법사업의 진행계획의 제정·시행·감독, ③ 각 부서에서 국무원에 이송한 법률법규 초안의 심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국제조약의 심사, ④ 관련 법률초안, 행정법규초안의 제정, ⑤ 각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정 및 국무원 각 부서 규정 심사 및 관련 의견 제시, ⑥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배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수금, 행정집행 등 법률, 행정법규의 시행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연구하고 국무원에 그 해결책 제시, ⑦ 행정법규에 대한 입법해석, ⑧ 행정법규의 번역 및 심사, ⑨ 정부법제이론의 연구 및 홍보, 대외법제교류업무 등이 있다.

2) 행정법규 번역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산하에 국제사(国际司)를 두어 국가에서 출판한 행정법규의 영문번역작업을 조직하고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법규의 영문번역작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법제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이미 공포된 중국 법률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에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행정법규의 영문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심의하며 행정법규 영문번역본을 출판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8년에 개편을 통하여 국무원법제판공실에 법규번역심의 및 외사사(法规译审和外事司)를 설립하여 행정법규의 영문번역작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 후 몇 년간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국내외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710여개의 행정법규의 영문번역본을 진행하여 2001년 1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법규편찬(中华人民共和国涉外法规汇编)>을 출판함으로써 중국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다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행정법규, 특히 각 지방의 행정법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003년에 “행정법규 영문 공식 번역본 번역·심의업무에 관한 국무원관공청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做好行政法规英文正式译本翻译、审定工作的通知)”를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이미 공포한 지방행정법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었다. 이에 2011년 6월 현재 지방성 법규, 정부규장 및 규범성 문건 500여건에 대한 번역작업을 마쳤다.¹³⁶⁾

136) http://www.tac-online.org.cn/ch/tran/2011-10/17/content_4548684.htm (검색일;2015.10.2.).

2. 공공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법률원조센터와 국가법관학원이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사법부산하에 설치한 법률원조기관인 법률원조센터는 본래의 취지를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간의 법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있는 중국의 법관교육과 양성 기관인, 국가법관학원은 1997년에 설립되어, 주로 중국의 고급·중급법원의 법원장, 부법원장, 각급 법원의 고급법관 및 그 예비 인재에 대해 취임, 복직, 승진 교육과 재판업무교육을 진행하고 예비법관에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원조센터¹³⁷⁾

법률원조센터는 중국의 법률원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선진국의 법률원조제도를 답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진행하여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 도	국제교류 프로젝트
1997년	유엔개발계획이 산둥성 칭다오시와 충칭시의 법률원조지원자 후원 프로젝트
1997년	미국포트기금회와의 “중국법률원조제도이론연구” 프로젝트
1998년	캐나다 국제발전서와의 “중국법률원조입법연구” 프로젝트
1998년	미국공화연구소와 합작하여 중국법률원조인원 양성 프로젝트
1999년	유엔개발계획과 합작하여 중국법률원조시스템 인원 능력 향상 프로젝트
1999년	아시아기금회와 합작하여 기층법률원조기구 사건처리능력 제고 프로젝트

연도	국제교류 프로젝트
2000년	미국변호사협회와의 중미법률원조제도비교 프로젝트
2000년	미국공화연구소와의 중국법률원조체계능력향상프로젝트
2002년	유엔개발계획과 합작하여 중국법률원조제도 규범화 강화 프로젝트

이외에 2003년 6월 20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캐나다 주중국대사가 북경에서 “중국과 캐나다간의 법률원조협력발전과 지역법률서비스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법률원조프로젝트를 개시하였고 2009년 프로젝트 종료 시에 중국의 법률원조제도가 진일보 발전하였다. 실제로 귀이저우, 장시성, 광시성 등 3곳에서 시범법률센터를 설립하였고 운영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유럽연합간의 법률원조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낙후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법률원조참여자를 유럽에 파견하여 유럽국가들의 법률원조제도의 경험과 방식을 고찰하도록 하였다.

국가법관학원¹³⁸⁾

2015년 현재 국가법관학원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몽골 등 국가와 다양한 법관교육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형식으로는 법관과 예비법관을 상대국에 파견, 상개국의 법관을 국가법관학원에서 교육, 외국법관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조직하는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법관교육의 다양한 경로를 개척하고 학술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교육과 재판실무연구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137) 법률원조센터 홈페이지[<http://www.chinalegalaid.gov.cn/>] (검색일; 2015.10.2.).

138) 국가법관학원 홈페이지[<http://njc.chinacourt.org>] (검색일; 2015.10.2.).

3. 민간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는 환위중국동아시아국가연합 법률협력센터가 있다. 즉 환위중국동아시아국가연합법률협력센터(HuanYu China-ASEAN Legal Cooperation Center : 이하 ‘법률협력센터’)는 2012년 3월에 설립된 전문적으로 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이다.

환위중국동아시아국가연합법률협력센터¹³⁹⁾

1) 주요업무

법률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①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법적 문제를 해석·설명하고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② 법률고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기업의 경영에 합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계약의 교섭과정에 참여하여 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③ 대리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의 관련 정부기관, 기업 등의 의뢰를 받고 시장조사 및 정책의 시행상황조사를 진행한다. ④ 협력교류와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간의 경제·무역·법률 영역의 협력을 위한 회의와 포럼을 조직하여 각국간의 법학, 법조계 및 민간의 법률 연구를 추진하며, 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의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법률협력센터의 본부는 중국 하이난에 위치하고 있고 쑤야와 윈난에 출장소를 두고 있고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에 연락처를 두고 있고 필리핀에 중국-동아시아국가연합 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2) 법제교류포럼

법률협력센터는 법제교류포럼을 개최하여 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간의 법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0월에 중국법학회, 법률협력센터와 하이난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국, 태국 및 필리핀의 법학계와 공상계의 1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중국-

태국 지식재산권 보호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하여 중국과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고 양국의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에는 “중국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개발, 투자정책 및 위험예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 및 시장환경을 분석하고 중국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홍 콩

1. 정부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는 율정사가 있다. 즉 홍콩 율정사(Department of Justice; 律政司)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산하의 전문적으로 홍콩 정부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홍콩정부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율정사는 그 수장인 율정사 장관사무실(律政司司长办公室) 이외에 형사조사과(刑事检控科), 민사법률과(民事法律科), 법률정책과(法律政策科), 법률제정과(法律草拟科), 국제법률과(国际法律科), 정무 및 발전과(政务及发展科) 등 부서를 두고 있다.

율정사¹⁴⁰⁾

1) 개 관

율정사 장관사무실은 율정사 장관의 각 직무이행에 법적·행정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형사조사과는 홍콩정부를 대표하여 범죄자의 심문에 참여하고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한다. 민사법률과는 정부의 각 정책기관에 민사법률 관련 사항에 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법률정책가는 입법권고 또는 특정된 정책이 “기본법”, 국제인권기준 및 기존 법제도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139) 환위중국동아시아국가연합법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hycalcc.org/>] (검색일; 2015.10.2.).

140) 율정사 홈페이지[<http://www.doj.gov.hk>] (검색일; 2015.10.2.).

판단하고 정부 각 정책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법률제정과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초안의 제정 작업을 진행한다. 국제법률과는 정부에 국제법 관련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국제조약의 협상작업을 진행하며 기타 국가와의 사법공조 업무를 처리한다. 정무 및 발전과는 율정사의 각 행정직원에 필요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제분쟁해결

율정사는 홍콩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 및 분쟁해결서비스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의 법제도와 법적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콩이 상사 및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적합한 지역으로 되었다. 이에 율정사는 법률 전문 단체와 중재기관과 협력하여 중국 대륙과 세계 각 지역(특히 아시아-태평양 신흥경제체계)에 홍콩법제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율정사는 중국 대륙에 홍콩의 법률과 분쟁해결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상하이에서, 2012년에는 광저우에서 두 차례의 홍콩법률서비스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2014년 9월 16일에 칭다오에서 “세계로 향하는 홍콩법률서비스”라는 주제로 세 번째 홍콩법률서비스포럼을 개최하여, 홍콩이 국제법률 및 분쟁해결서비스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고, 포럼에서 홍콩 법률을 소개하고 분쟁해결 전문가들이 중국 대륙의 기업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보급하는 장소가 되었다.

2. 공공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법률원조서가 있다. 법률원조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산하의 부서로 홍콩시민들에게 법률원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원조서는 모든 합법적으로 법률 소송 또는 항변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일반인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법률원조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홍콩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원조서¹⁴¹⁾

1) 개 관

법률원조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산하의 부서로 홍콩시민들에게 법률원조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법률원조서는 모든 합법적으로 법률 소송 또는 항변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일반인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법률원조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홍콩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률원조교류

법률원조서는 홍콩 법률원조제도의 활성화 및 홍콩 법률원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 단체의 방문을 받고 대외 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해외단체로 호주 Murdoch대학교 법학과의 학생, 베트남 경찰학원 대표단, 뉴질랜드 John Hansen선생, 싱가포르 울정부 상임 비서장이 법률원조서를 방문하여 교류활동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호주 Murdoch대학교 36명의 학생이 방문하였고, 대만법률보조기금회대표단과 마카오 법무부 및 법률개혁 및 국제법사무국 대표단이 방문하였다. 2012년에는 핀란드 사법부 상임비서장 Tiina Astola과 핀란드 홍콩주재 총영사 Annikki Arponen가 방문하였고, 체코 사법부 부부장 František Korběl이 방문하였다.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 법률원조서 연구 및 정책서 서장 Isma Juliana binti Ishak과 소송 및 법률의견(민사)서 서장 Aida Fatimah binti Abd. Jabar이 방문하였다. 이러한 외부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홍콩의 법률원조 제도를 다른 국가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외국의 선진 제도를 답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141) 법률원조서 홈페이지[<http://www.lad.gov.hk>] (검색일; 2015.10.2.).

3. 민간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는 홍콩법률정보센터가 있다. 즉, 홍콩법률정보센터(Hong Kong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KLII)는 홍콩 대학 컴퓨터과학과와 홍콩대학 법학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프로젝트로서, 홍콩의 법률을 홍보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홍콩의 관련 법률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정보제공서비스 프로젝트이다. 홍콩법률정보센터의 모든 법률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홍콩법률정보센터¹⁴²⁾

홍콩법률정보센터는 홍콩의 법제는 물론 홍콩의 각 법원(중심법원, 상소 법원, 원송법원, 지역법원, 가사법원)의 판례의 중문본과 영문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법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개혁위원회(the Law Reform Commission of Hong Kong)의 자문문건과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홍콩법률정보센터는 외국의 법률정보를 홍콩에 제공하기 위하여 호주(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영국(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캐나다(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아일랜드(Irish Legal Information Initiative), 뉴질랜드(New Zealan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태평양제도(Pacific Island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영연방보통법제(Commonwealt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아시아각국(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세계각국(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의 법제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142) 홍콩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hklaii.hk>] (검색일; 2015.10.3.).

143) http://www.moj.go.jp/housouken/houso_index.html#soumukikakubu (검색일; 2015.10.2.).

144) http://www.moj.go.jp/housouken/houso_lta_lta.html (검색일; 2015.10.2.).

일본 법무종합연구소¹⁴³⁾

1) 기본적 성격

법무종합연구소는 연구 부문과 연수 부문을 가진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삿포로, 센다이, 우시쿠,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 등 8곳에 그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종합연구소는 법무성의 기구상 「시설 등 기관」(법무성조직령(헤이세이 12년 정령 제248호) 제61조, 제62조)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2) 연혁

쇼와 22년 5월 3일 현행 헌법이 시행되어 재판소가 사법성으로부터 분리 독립했지만, 그때까지 판사, 검사 및 사법관 시보의 연구·연수 기관으로 사법성에 설치된 「사법연수소」(쇼 14. 7. 6 사법 연수소로서 설치되어, 그 후 쇼 21. 5. 15 사법 연수원으로 개칭)가 최고재판소에 설치된 「사법연수소」와 사법성에 설치된 「사법성연수소」로 분할되었다. 후자가 「법무종합연구소」의 전신이다.

사법성 연수소는 검찰관, 검찰 사무관, 사법 사무관 등 사법대신 소부 직원에 대한 연수 및 사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후, 사법성이 법무청, 법무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따라, 「법무청 연구소」(쇼 23. 2. 15), 「법무부 연수소」(쇼 24. 6. 1)로 개칭되었다. 동 27년 8월에 현재의 법무성으로 개편되었을 때, 간부 검찰관을 대상으로 별도로 설치된 「검찰 연구소」(쇼 25. 4. 1)를 통합하여 「법무연수소」가 설립되었다.

법무 연수소는 법무대신 소부 직원에 대한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 30년대에 들어서 소년 범죄의 격증, 흉포화 등 범죄 현상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과학적인 형사정책연구의 필요성이 통감되어 형사정책의 전문적인 연구 부문을 더하고, 조직 기구를 정비 확충하여, 동 34년 4월 「법무종합연구소」로서 발족하였다. 그 후 동 36년 6월에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의하여 국제연합과 일본 정부와의 공동운영 형태로 「아시아 극동범죄 방지연구소」가 설치되어 일본정부기관으로서 이에 협력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교육 협력부가 새로 설립되었다.

헤이세이 7년 4월에는 법무종합연구소 내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방, 관계 부국과 연계하여 법무종합연구소에서의 연수·연구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21세기의 법무성에 어울리는 연수·연구 방식을 종합적 관점에서 기획 입안하고, 실시 준비를 진행하는 부서로서 총무기획부가 신설되었고, 헤이세이 13년 4월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답하고, 국민 상사법 분야에서의 법 정비 지원을 실시하는 부서로서 국제 협력부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각 부의 개요

① 총무기획부

총무기획부는 법무종합연구소가 실시하는 연수나 연구에 대한 종합적 기획 입안, 관계 기관과 종합 조정, 연구·연수·국제 연수·국제 협력 부문에 대한 전문적 원조, 법무종합연구소의 조직 예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법과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일부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등의 협력 업무도 하고 있다.

② 연구부

연구부는 형사 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한다. 조사·연구의 대상은 검찰, 형사 재판, 교정 및 갱생 보호로 광범위한데, 최근에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과의 연계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구부는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범죄 백서」를 작성하는데, 범죄백서에 대해서는 도표를 컬러화하고, 많이 쓰는 것에 따라 읽기 쉽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배려함과 동시에, CD-ROM을 첨부하는 등, 자료 및 소개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별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법무종합연구소 연구부 보고 등으로 간행한다.

③ 연수부

법무행정에 관한 실무적 연구를 행하는 것 외에, 본소 및 전국 8개 지소에서, 검찰청, 법무국, 보호국 및 입국 관리국의 관계 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를 실시한다. 본소에서는 검사, 부검사에 대한 연수 외에, 검찰 사무관, 법무국 직원, 보호 관찰관, 입국 심사관, 입국 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과,

고등과 및 전문과 등의 연수를 실시하고, 지소에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초등과 및 중견 직원에 대한 중등과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이러한 연수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종합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성 전체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충실한 연수의 실시, 시설의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국제연합 연수협력부

국제연합 연수협력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 연합과 합의에 근거하여 일본 국내에 설치된 유엔 아시아 극동 범죄 방지 연구소(유나페이(NAFEI) 또는 아시아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법무종합연구소의 한 조직으로서 설치되었다. 이를 위해 동 연수협력부 부장이 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고, 동 부에 배속된 검찰, 재판, 교정, 갱생 보호의 각 분야에서의 교관과, 사무직원이 국제 연수 세미나의 실시를 골자로 한 아시아 연구소의 각종 사업의 기획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⑤ 국제협력부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CD)는 법무성이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본 법령의 기초·개정, 사법 제도의 정비, 법조 인력 육성 지원 등의 법 정비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부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력부 업무 소개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4) 해외 법제지원 프로젝트¹⁴⁴⁾

국제협력부가 진행하는 법제도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요

- 1994년 베트남 협력 개시
- 1996년 캄보디아 협력 개시
- 1998년 라오스 협력 개시
- 1998년 인도네시아 협력 개시
- 2001년 국제협력부를 신설
- 2001년 오사카 나카노시마 합동 청사로 이전

- 2001년 우즈베키스탄 협력 개시
- 2007년 중국 협력 개시
- 2008년 동티모르 협력 개시
- 2008년 중앙아시아 협력 개시
- 2009년 네팔 협력 개시
- 2013년 미얀마 협력 개시

② 법제도 정비 지원의 주요 요소

법제도 정비 지원은 개발도상국이나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국가 등에 대해서 이들 국가가 진행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제도 정비 지원의 주요 요소로는 기본 법령의 기초 지원, 제정된 법령을 운용하는 사법 관계 기관의 제도 정비 지원, 법조 실무가 등의 인재 육성 지원이다.

5) 법제도 정비 지원의 필요성

① 법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

법제도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각종 법률로 구성된 법체계와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말한다. 법제도는 사회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처벌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쟁에 관계하는 사람은 물론, 법제도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이 활동해야 한다.

② 법제도는 다른 나라와의 공동 재산

현대 사회는,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경제 거래를 비롯한 국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람, 자본, 제품, 정보 등이 매일 대량으로 세계를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상에서는, 법제도는 한 국가의 내부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관계를 맺은 국가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불충분하고 신용이 없는 법제도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산업과 경제 발전이 어려워진다.

③ 일본의 근대적 법제도 정비의 역사

일본은 19세기 중반까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의 메이지 유신 이후, 구미에도 통용되는 근대적 법제의 정비를 강요당하고 유럽에서 법률 전문가를 부르거나 유학생을 서양에 파견하고 그 제도를 배우는 일본 사회 문화에 맞추어 근대적인 법제도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법제도도 달라진다. 법제도 정비에는 종착점은 없고, 선진국도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④ 개발도상국 사정

세계에는 근대적인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는 개발도상 국가가 많다. 특히, 중앙 통제형 계획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던 나라는, 시장 경제의 도입에 수반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신속히 법제도 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법제도 정비를 돕는 것이 요구된다.

⑤ 일본이 법제도 정비 지원을 실시하는 의의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도 정비 지원을 실시할 때, 유럽 선진국과는 다른 법문화, 100년 이상에 걸쳐서 주요한 법제도(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을 연구하고 채용해 온 경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문화 등에 강점이 있다.

⑥ 일본의 지원의 특징

일본의 법제도 정비 지원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지원 대상국의 주체성·자율성 존중, 법제도 정비를 위한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국의 판단에 맡김, 지원 대상국의 실상에 관한 충분한 조사, 중장기적 시점에 선 활동 및 법령을 집행·운용을 위한 체제의 정비나 법률가 등의 인재 육성을 중시한다.

제 3 절 대 만

1. 공공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법관학원이 있다. 대만 법관학원은 대만 사법원 산하에 설치된 대만 법관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92년에 제정·시행된 <사법원사법인원연습소조직조례(司法院司法人員研習所組織條例)>에 따라 2001년 3월 1일에 사법원 사법인원연습소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법관법의 시행에 따라 연수에 참여하는 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법관연수에 관한 국제·국내 학술연구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능력이 제고된 기관을 창설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3년 1월 1일에 법관학원으로 개명하고 규모를 확장하였다. 법관학원의 설립은 법관에게 재판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여 법관의 재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관학원¹⁴⁵⁾

대만 법관학원은 정기적으로 연수생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6월-7월 사이에 미국 대학교에 파견하여 한달간 외국어 연수과정을 거쳤고 현지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2014년에 일본 와세다대학에 대표단과 연수생을 파견하였고, 독일 함부르크대학에도 연수생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만과 접수국간의 교류를 진일보 확대하고 상대국의 선진 법제를 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45) 법관학원 홈페이지[<http://tpi.judicial.gov.tw>] (검색일; 2015.10.2.).

2. 민간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사단법인 해협양안법학교류협회가 있다. 사단법인해협양안법학교류협회(海峽兩岸法學交流協會, 이하 ‘협회’)는 중국 대륙과 대만간의 법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법제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대만 내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조직이다. 협회는 법학을 기초로 중국 대륙과 대만간의 법제, 투자무역, 인신안전, 노동보장, 생활수요 등 공공사무의 교류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제정 내지 관련 실무문제의 해결에 협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단법인 해협양안법학교류협회¹⁴⁶⁾

1) 주요업무

협회의 주요 업무로는 ① 학력인증신청 및 서류전달, ② 대륙 사법시험 신청 및 비용납부, ③ 대륙 사법기관과 대만 수험생간의 의견 전달, ④ 대륙 사법시험 준비 협조, ⑤ 대륙 사법시험 성적표의 전달 및 교부, ⑥ 변호사 실습 및 교육 업무 협조, ⑦ 대만적 대륙 변호사 연합회를 구성하여 대륙에서의 집업 활동에 협조, ⑧ 중국 대륙과 대만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2) 중국 대륙과의 교류 확대

협회는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 사법시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중국 대륙 민간기관간의 법제교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해협양안 변호사 실무 포럼”을 조직하여 상호간의 법제를 소개하였다. 2010년 5월 14일에 중국 대륙 사법부 변호사부서 서장이 협회를 방문하여 “대만적 대륙변호사 포럼”을 조직하였고, 2010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샤먼에서 “해협변호사포럼”을 개최하여 변호사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12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중국 광둥성에서 “변호사 업무 교육캠프”를 조직하여 중국에서 법조인으로 근무하는 대만 변호사들이 중국의 사법제도를 진일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년 후인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베이징에서도 “변호사 업무 교육캠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6일에는 중국 대륙의 해협양안관계법학연구회(海峽兩岸關係法學研究會)와 공동으로 “양안법제세미나”를 조직하여 형사소송, 분쟁해결, 투자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교류를 진행하였다.

제 4 절 일 본

1. 공공기관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일본 법무종합연구소가 있다. 법무종합연구소는 연구 부문과 연수 부문을 가진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그 조직은 총무기획부, 연구부, 연수부, 국제연합 연수협력부 및 국제협력부의 5부문으로 나뉜다.

2. 민간기구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나고야대학 법정 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가 있다. 나고야대학 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CALE)는 아시아 국가들의 나라를 위한 법 정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법 제도, 법의 지배, 인권 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와 더불어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의 법 제도가 국제 표준에 합치시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

146) 해협양안법학교류협회 홈페이지[<http://www.acsle.org>] (검색일; 2015.10.2.).

나고야대학 법정 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¹⁴⁷⁾

1) 주요 역할

일본 정부와 연계한 법 정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정부에 의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 정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고야 대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법 정비 지원 연구에 관한 국내외 유수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일본 정부와 연계하여 법 정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① 아시아법 연구·법 정비 지원 연구

아시아 국가들의 법이나 법 정비 지원론의 연구를 조정한다.

② 법학 교육 지원

아시아 국가에서 요구되는 자국의 법률을 스스로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③ 국내 인재 육성

아시아에 정통하고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

2) 해외 법제지원 프로젝트

① 아시아법 연구·법 정비 지원 연구

i) 아시아 국가 법 연구의 프런티어로서 연구 사업 추진

일본의 아시아법 연구는 지금까지 중국법 연구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도 보다 긴밀해지고, 비즈니스 세계는 물론 학술 분야에서도 아시아 전역이 주목 받고 있다. 나고야 대학은 베트남법, 캄보디아법, 인도네시아법, 몽골법 등의 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아시아 국가 법 연구의 프런티어로서 아시아와 구미의 연구 기관과 연계한 아시아 국가 법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법에 관한 기본 자료 정보의 수집·발신, 이론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학술적 공헌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사회 요구에도 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i) 법 정비 지원을 학문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발신형 법학을 창출

CALE은 법정비 지원사업을 행하고, 그 사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정비 지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비 지원의 이념, 대상국, 대상 분야, 실시 과정, 평가 등 법 정비 지원을 새로운 학문 과제로 이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화, 지역 통합에 따른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와 전통법의 상극 등 이식된 법이 어떻게 뿌리 내릴지가 중요하다. 또한 법정비 지원을 통해서 일본의 법학은 그동안의 유럽에서 수신형 법학에서 세계에의 발신형 법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iii) 법 정비 지원 실시 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네트워크를 형성

일본의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법 정비 지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아시아 국가의 법·정치에 관한 연구, 아시아법 정비 지원 사업을 기획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 정부 기관 법률 실무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iv)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법정비 지원 사업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구 및 국제 기구에 의해서도 전개되고 있는데, 법 정비 지원이나 아시아법 연구를 추진하는 구미의 대학·원조 기관 등과 연계하여 연구·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v)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기업용 정보를 제공

CALE은 국내외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아시아 각국 법 정보와 인력을 제공한다.

vi) 수많은 국제 학회와 워크숍을 개최

CALE은 아시아의 법정치 법 정비 지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현지 대학 법률 전문가,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많은 국제 학회와 워크숍, 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자 교류와 함께 CALE 외국인 연구원 제도를 이용하여 저명한 법학자·법률가를 외국인 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

vii) 아시아법이나 법 정비 지원에 관한 활동이나 연구를 소개하는 보고서 등을 출판

CALE은 Asian Law Bulletin, CALE NEWS, CALE Books, CALE Booklet, CALE Discussion Papers 등의 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다.

viii) JICA와의 제휴에 의한 아시아 국가에서 연수원의 수락에 협력 국제 협력 기구(JICA)에서 위탁을 받아 국가별로 우리나라에서 연수에 협력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이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JICA 단기 전문가 등으로서 JICA의 법 정비 지원 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다.

② 아시아 국가에서 요구되는 자국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

i) 새로운 법을 스스로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법 정비 지원의 큰 기둥은 인재 육성인 교육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살리고 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중시한다. 지원 대상국에서는 시대에 맞는 법학 교육과 체제 확립이 늦어 외국의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법학 연구과에서는, 실제 입법·행정 활동에 종사하는 실무가와 차세대의 법률가를 키우는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생을 받고 있다.

ii) 자국의 법을 정비하기 위한 모델로서 일본법을 제공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 서양 법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을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법으로서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식민지법을 토대로 발전한 아시아 제반 국가의 법에 있어서 일본법의 발전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많고, 아시아 적인 문화 요소를 갖고 있는 일본법은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모델의 하나로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법률 기초 지원으로 일본법을 모델로 법률이 만들어진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일본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은 비교법 연구가 발전하고 있고 일본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세계의 법률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풍족해지고 있다.

iii) 「영어 코스」의 개설로 아시아 국가의 실무가와 연구자를 양성

장기적인 법학 인재 양성 요구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법학 연구과에

1999년 영어 코스를 개설했다. 문부 과학성 장학금, JICA장기 연수원 제도, 인재 육성 지원 무상(JDS)사업 등으로 실제 입법·행정 활동에 종사하는 실무가나 교수를 유학생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재 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iv) 일본 주도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

수료생 중 상당수는 행정·사법 기관, 대학 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활약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나고야 대학 동창회 지부가 설립되면서 수료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v)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아시아의 허브 대학으로 전개

아시아 각국의 대학과 연계하여 아시아 각지에 나고야 대학의 캠퍼스를 설치하고, 상대국 정부 간부들을 비롯한 젊은 유망 인재에 대하여 재직하면서 나고야 대학의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아시아 국가의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vi) 사회, 문화, 언어를 이해하는 진실된 일본법 전문가를 육성

영어로 쓰여진 일본법의 문헌은 한정되어 있어 법령이 개정되어도 그 영어 번역의 입수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에 의한 일본법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시아 각지에「일본법 교육 연구 센터」를 개설하고 그 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서 일본어에 의한 일본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국내 인재 육성

아시아에 정통하는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

i) 아시아와 공생하는 아시아의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

아시아가 세계의 핵으로 주목 받으며 일본 기업 다수가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아시아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교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유학생과의 교류와 아시아 각지에서의 현장 연수를 통해서 국제력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ii) 법 정비 지원에 공헌하는 젊은 세대의 연구자·실무가를 육성
일본 측의 법 정비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국의 언어를 습득하여 현지법을 이해하고 아시아 국가 법 연구에 본격적으로 임하는 연구자를 양성하고 있다.

iii) 법 정비 지원을 체험하는 유학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아시아 각국의 단기·장기 유학 프로그램, 단기 해외 현장 연수, 일본법 교육 연구 센터에서 인턴십 기회의 제공 등 아시아를 가까이 느끼고 법 정비 지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3) 보고서 및 연속간행물 현황 및 구성

CALE에서는 CALE 뉴스(일본어), CALE Books(영어), CALE 총서(일본어), CALE Booklet(일본어), CALE 토론집(일본어, 영어)을 발간하고 있다.

① CALE 뉴스(일본어)

법정비 지원 및 아시아법의 연구자, 전문가에 의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CALE과 법학연구과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다.

② CALE Books(영어)

영어로 된 논문집으로, 현재 법학연구과를 수료한 유학생의 박사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③ CALE 총서(일본어)

법정비와 아시아법에 관한 특정의 테마에 관한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논문집.

④ CALE Booklet(일본어)

아시아 국가들의 법정비 지원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CALE 토론집(일본어, 영어)

법분야의 국제협력 및 최근의 아시아법의 동향에 대해 CALE 외국인 연구원과, 유학생, 기타 학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5 절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에서 법제교류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65년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해외 법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중에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¹⁴⁷⁾

아시아 개발은행의 해외 법제지원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국가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 제도, 피지, 그루지야,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 공화국,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리아, 미얀마, 나우루어,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동 티모르, 통가, 투르크 메니스탄,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2) 주요 관심 분야

- ① 농업, 천연 자원, 농촌 개발
생산 및 시장 · 관개, 배수, 홍수 방지 · 어업 · 임업
- ② 교육
전 차, 기본 · 중등, 고등, 더 · 비 형식
- ③ 에너지
기존의 신 재생 · 효율성, 보존 · 전송, 배포

147) <http://cale.law.nagoya-u.ac.jp/> (검색일; 2015.10.2.).

- ④ 금융
은행 시스템 · 돈, 자본 시장 · 주택, 소액 금융 · 무역 금융
- ⑤ 건강
프로그램, 시스템 · 건강 금융 · 영양 · 유아 개발
- ⑥ 정보 통신 기술
ICT 인프라 · ICT 산업과 ICT 기반 서비스 · ICT 전략과 정책 및 능력 개발
- ⑦ 산업 및 무역
확대, 소규모 산업 · 무역, 서비스
- ⑧ 다중 부문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분야를 이끔
- ⑨ 공공 부문 관리
경제, 공공 지출, 재정 관리 · 행정 · 지방 분권 · 법, 사법부
- ⑩ 운송
공기, 물, 철도, 도로, 도시 교통 · 관리, 정책
- ⑪ 물 공급 및 기타 도시 기반 시설과 서비스
공급, 위생 · 폐기물 관리 · 빈민가 업그레이드, 주택 · 도시 개발

148) <http://www.adb.org/> (검색일; 2015.10.2.)

제 4 장 법령 모듈화 방안

제 1 절 법령 모듈화 방법론의 기초

1. 의사결정과 법률정보

법률정보란 의안, 법령, 판례, 법률문헌관련 정보를 국민생활에 필요한 규범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적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거나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학설 등을 소개한 문헌 등을 말하며 나아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를 의미한다.¹⁴⁹⁾ 이와 같은 법률정보는 입법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하며, 법원 재판에서 법령의 적용 및 해석(판례)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대학에서는 법률정보를 통해 법학 즉 판례 및 법령정보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이론(학설)을 제시할 수 있다.¹⁵⁰⁾ 법률정보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법이론의 적용 및 연구 등은 대학에서 연구되므로 학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운영되어가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¹⁵¹⁾

한편 정보화 사회의 실현으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특정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각종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149) 원종삼, “우리나라 법률정보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 논집』 제6집, 한국비블리아학회, 2002. 5., 141면.

150) 국회도서관, 『국가법률정보자원 표준색인체계 수립 연구보고서』, 2010. 8., 4면.

151) 원종삼, 우리나라 법률정보 유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관련 학회개최 정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13면.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정책결정자의 합리적인 의사 형성을 곤란하게 하거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 모듈화 방안의 구축에 있어서도, 의미 있고 적합한 법률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법령 모듈화 대상국의 의사결정자들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법령 모듈화 방안은 정확하고 의미 있는 법률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제 지원 대상국이 의사결정 비용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입법, 집행 및 사법 활동을 체계화하며, 법학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법령 모듈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 시스템, 국회도서관 법률쟁점DB,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관리원의 세계법제정보시스템,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화된 법률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¹⁵²⁾ 이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저개발국 등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신 법제 이슈에 대한 외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법과 법제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부족하여 저개발국에 대한 법제정보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152) 박광동,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본 ODA에 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7집, 한국입법학회, 2010. 12., 70면.

한편 모듈화라 함은 부품을 같은 기능 단위로 최적화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¹⁵³⁾ 따라서 법제 모듈화라함은 우리법을 해당국에 소개하는 경우, 유사한 법률 단위로 혹은 공통된 요소를 기반으로 최적화하여 우리 법제를 해당국의 법체계에 적합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¹⁵⁴⁾ 즉 외국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우리 법률의 소개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의 법률정보를 표준화하여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하게 소개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법제를 외국에 소개할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떤 틀에 담아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작성이나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경험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는 모듈화 논의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법제발전경험에 대한 모듈화에 관하여는 기초적 연구조차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입법 발전을 기초로 저개발국 등 법제지원대상국에 대하여 우리의 법제 및 법률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 및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모듈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153) 서창적·이인태, “제품 및 프로세스 모듈화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량 맞춤화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생산관리학회 2014. 6., 86면. 모듈화의 개념은 1960년대에 처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공통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모듈화는 하위 모듈에 의해 구성된다는 정도의 공통된 합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경영학분야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은 제품 시스템에 계층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제품은 서로 다른 서브 시스템들의 조합 및 배치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서브시스템의 조합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정의되면서 모듈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154) 법제모듈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2 절 법령 모듈화 방법

1. 모듈화 대상 법령의 식별

(1) 대상국 관심 법령의 파악

1) 대상국의 경제발전 의지와 관심 법제

법제모듈화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법률 또는 법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상국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상국은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각국의 자본 투자와 인력 지원이 있어야 이러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법제지원 대상국은 부정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투자 보장이나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 세계경제질서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대상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혹은 선진 각국의 예측가능한 투자와 인력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대상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법령 정비

법령 모듈화 대상국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산업을 일으켜 경제개발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제의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편 모듈화 대상국인 자원보유국 정부는 예상한 자원의 개발이 경제성이 없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한 자원을 운송할 수 없거나, 국제 규범의 위반으로 금수조치가 행하여져 개발한 자원을 거래할 수 없는 등 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들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원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제를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¹⁵⁵⁾

대상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득만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대상국 정부는 자신이 허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 등의 자산과 권리를 수용하거나 국유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대상국은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기도 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보유국 정부는 외국인투자회사의 사업 참여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들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제안하지만, 일단 자원이 발견되어 성공적인 생산이 개시되면, 일방적으로 자원개발을 허가한 계약을 변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¹⁵⁶⁾ 이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세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인데, 자원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수많은 실패에 대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했던 외국인투자회사 등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또한 대상국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및 실무적 분야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¹⁵⁷⁾ 즉, 대상국 정부는 자국

155) 자원보유국인 대상국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계약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일석, 원유·가스 탐사개발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 75-77면.

156) Simon Brinsmead, "Oil Concession Contracts and the Problem of Hold-up"(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1002755>, last visited Oct. 26, 2012), 2007. 7., p.3.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만이 자원개발을 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수도 있다. 아울러 대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자원개발사업에 일정부분 참가시키도록 강제하거나,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에 특정 국가의 기업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상국은 자원개발 관련 탐사개발권 등에 대해 특정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법령 모듈화 대상국은 자원개발을 위한 권리의 부여에 있어 인력양성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국내시장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대상국은 자원개발권을 획득한 외국인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국 근로자의 고용, 가격 통제, 조달 의무 등 자국 발전을 위한 각종 의무사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상국은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해 자원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자국의 빈약한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을 법제화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특히 석유개발로 인한 이득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및 석유 산업과 관련된 자국의 산업도 발전시킨다는 경제적 실리도 반영되어 있다. 나아가 대상국은 외국인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개발 생산된 원유·가스 등 자원을 자원보유국의 국내 소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법제화하기도 한다. 또한 대상국은 외국인투자회사로 하여금 자원보유국의 국민 등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법제화 할 수 있으며, 자원보유국의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된 인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제화 할 수도 있다.

157) Randel R. Young & Richard Devine, “Making Risk in Emerging Market Hydrocarbon Development Projects”,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09, §30.07 [1].

3) 대상국 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현실적 법령 정비

자원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상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제의 정비만을 고집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철수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이나 산업활성화 및 경제개발을 도모하기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원보유국인 대상국 정부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득은 극대화하면서 외국인투자자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법제의 정비를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원보유국 정부의 일방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아닌, 외국인투자회사 등이 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들의 이해관계(interest)가 보장되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하고 국제규범에 적합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 회사설립, 외국인투자보호, 조세, 노동관계, 중재 등 분쟁구제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절차, 계약과 불법행위 등 책임법 및 형벌 부과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적합한 법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의 테두리 내에서 법령모듈화 대상국인 자원보유국의 이해관계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법령 내용의 개발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 대상국 관심 법령의 식별을 위한 방법론

1) 대상국 경제발전 수준과 전략의 파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선진 정보통신기술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에 자유롭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PDF 혹은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활용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이 미약하거나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선진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가 없다. 나아가 문맹률이 높거나 전력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률 정보를 모듈화하여 제공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문맹률과 교육수준 및 전력인프라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법제는 대상국의 경제개발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대상국의 경제개발 전략을 파악하거나 미미한 경우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의 경제개발전략 수립과 발전 당시의 입법례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국의 경제발전의 정도를 식별하고, 경제발전의 전략을 파악하거나 수립을 지원하며, 그에 적합한 법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 분야를 발굴하여 모듈화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법제모듈화 대상국들은 자원보유국으로서 자원을 개발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에서 설명한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도로법, 항만법, 철도법, 전력·가스 등 에너지법제, IT법제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 외국인투자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외국인투자보장법 등에 대한 수요도 충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가 PF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F와 관련된 금융법, 회사법에 대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2) 대상국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

법제모듈화 대상국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 우리와 다른 법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영국법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바, 영국법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법제모듈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경우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법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 법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과 미국의 법제를 많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미법의 전통이 남아 있는 국가에 대하여 대륙법계인 우리 법제를 모듈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모듈화 대상 법제와 유사한 영미의 제정법(statute)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제모듈화 대상국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할 수도 있지만, 힌두문화권, 이슬람문화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제모듈화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법제모듈화를 수행함에 있어, 식품산업진흥법이나 축산법을 모듈화하는 경우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법제모듈화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국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국이 모듈화된 법제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대상국 관심 법제의 파악 방법

대상국의 관심 법제를 식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국으로부터 해당법 제정 등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상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대상국과 경제발전 단계 등에서 유사한 국가 등이 우리나라에 보낸 법제지원 요청서를 통해 파악할 수도 있다. 라오스

증권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27일 우리 정부에 대해 라오스 증권법 작성에 관련된 법적 지원과 협력의 제공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거래소, 법무법인 지평지성 및 라오스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업으로 라오스의 법제분석과 증권시장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라오스 증권법은 2013년 1월 17일 공포되어 3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¹⁵⁸⁾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한국형 증권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국거래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증권시장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3년 7월 27일에 제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¹⁵⁹⁾ 이후 2013년 10월 6일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민주공정거래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Privatization, Demonopolization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는 증권법제의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우리 법무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및 증권 관련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위 개정초안의 미비점을 검토한 다음 제2차 개정초안을 지원하였다.¹⁶⁰⁾

한편 법무부는 벨라루스 증권법제 현대화 작업 및 지원방안 연구와 미얀마 중재법제 현대화 작업 및 지원방안 연구 등도 수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상국의 요청과 우리 정부의 지원 법제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상국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법제를,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국제분쟁절차를 통한 해결의 보장을 위한 중재법제의 도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도 대상국의 증권법제와 중재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대상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선진화된 법률체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58) 법무부,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방안 연구』, 2013. 11., 206, 218면.

159) 법무부,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제 현대화 작업 지원방안 연구』, 2014. 3., 8, 87면.

160) 법무부, 전계서, 88면.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국의 인프라와 기반시설 구축 및 그에 대한 외국인투자 보장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모듈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법제 모듈화 대상국과의 합의를 통해 특정 산업을 대상국에 진출시키거나 해당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에너지, 교통기반시설 산업, IT 산업과 문화산업에서는 해외진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또는 기업이 대상국에 대하여 협력 또는 투자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를 연계함으로써 대상국에 대한 법제 모듈화 대상 법제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하기로 한 경우,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방호방제에 관한 법률을 우선 모듈화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의 개발 및 보안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등의 법제도 모듈화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IT 관련 인프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수요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 각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가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제 모듈화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법령 모듈화의 구체적 방법

(1) 모듈화 대상 법제의 위치와 담당기관의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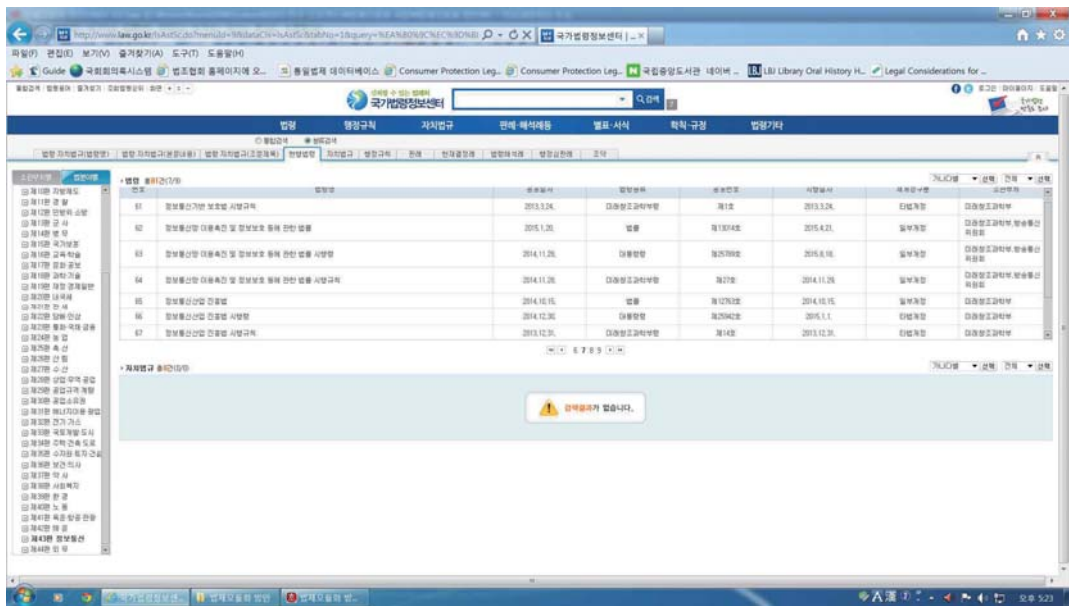
1) 법제적 위치의 파악

법제모듈화 대상국에 대한 법령정비를 지원함에 있어 첫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법제의 우리 법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 4 장 법령 모듈화 방안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의 목적 조항을 모듈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 조항은 입법자가 생각하는 해당법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일정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경우 입법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 따라서 이 법은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법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법률들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동 법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법」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 4-1] 법분야별 검색(161)



16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분야별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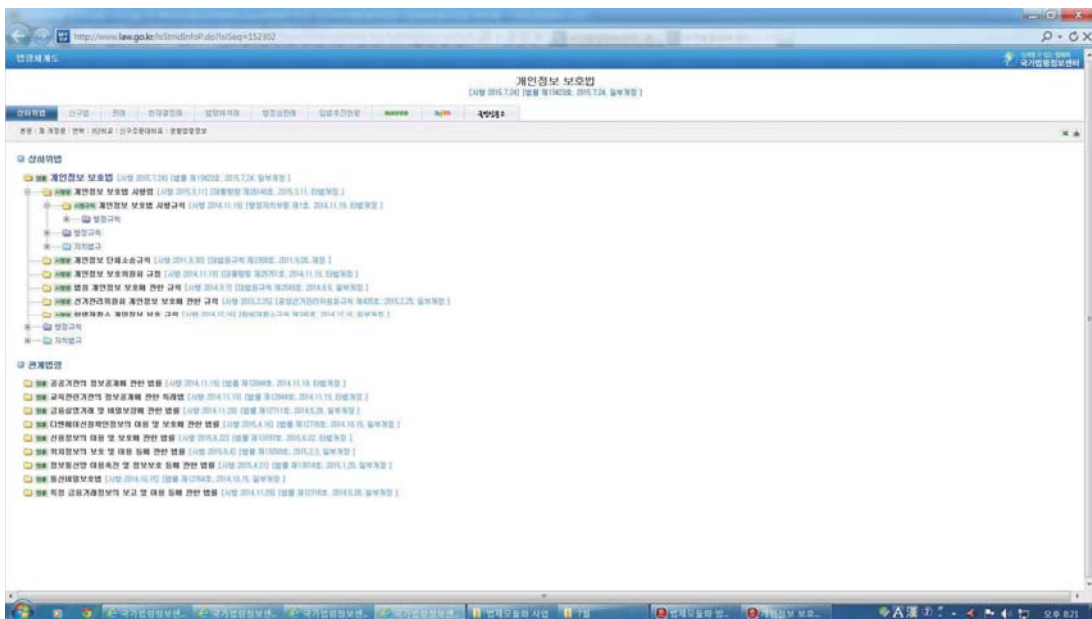
한편 특정 법률은 그 내용이나 소관 부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법률 분야로 그룹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이나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법률들을 분류또는 그룹화시킨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체 법체계 내에서의 해당 법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44개 법률 분야를 제시하여,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국가법률정보자원표준색인체계에 의하면 25개의 대주제를 분류하고 있다. 위 표준색인체계가 법학 학술 서적이나 학술논문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임을 고려할 때, 특정 법의 법제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44개 법분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제 모듈화를 위하여 우선 44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해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 44개 분야 가운데 43번째인 “정보통신”으로 분류검색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검색 결과 내에서 ‘가’, ‘나’, ‘다’ 순서로 재검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위 44개 분야를 기초로 법제 정보를 모듈화한다 하더라도 특정 법률과 연관된 법률들의 상호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내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관련된 법률들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한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특정 법률이 44개 법률 분야 가운데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모듈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국은 자신의 법률 분야를 위와 같이 44개로 나누어 보게 될 것이다. 이후 해당국이 모듈화되어 제공된 법률 분야를 자신들의 법률 분야와 비교함으로써 해당국은 법제 교류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법률과 상하적 관계에 있는 법규 또는 특정 법률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법률의 위치를 가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정 법률을 검색한 다음 법령 체계도를 클릭하면 상하위법과 관련 법률을 살펴볼 수 있다.

제 4 장 법령 모듈화 방안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의 상하관계 또는 연관 법률들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듈화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특정 법률과 관련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법령체계 상하위법 및 관계 법령 검색¹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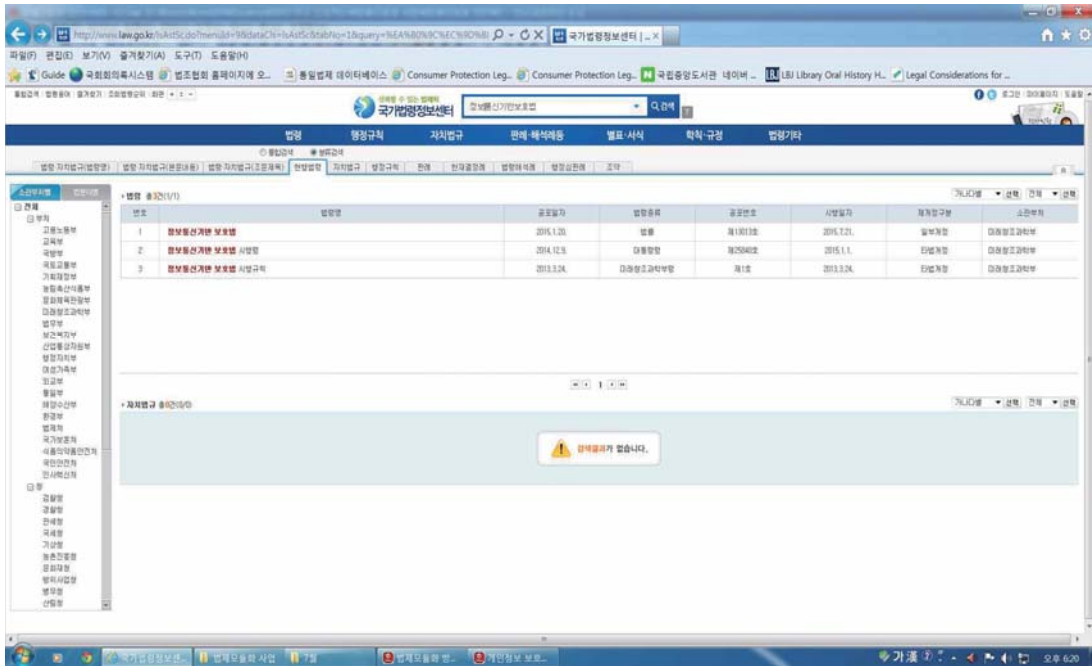


한편 우리 법제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나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만일 해당국의 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특정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일 등을 파악하고, 타법개정을 포함한 제·개정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정 예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

16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하위법 등 분류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한 정보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모듈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법령체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검색¹⁶³⁾



2) 소관기관 및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다음으로 해당 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소관기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제의 법제적 위치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소관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 모듈화된다면 해당국에서 그 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당 법제에 대한 소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국은 보다 두체적인 법제 정보를 파악하고 교유할 수 있으며, 법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들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법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63)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캡션.


나아가 해당 법제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해당 법률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모듈화하여 설명한다면 해당국이 우리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해당 법률에 대한 제·개정과 사법적 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이고 국회사무처가 소관기관이 된다는 정보가 모듈화된다면 국회법의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듈화 대상 법령의 법체계적 위치를 파악하고 담당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국에 대한 정부조직 및 행정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대하여 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회를 증진함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지속적인 외국인투자과 경제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3) 모듈화의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입법 목적에 대하여 기술한다. 민법 등 특정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 목적이 없는 법률도 있다. 이 경우 입법 목적에 대한 모듈화는 생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조례와 관련한 정보를 모듈화하여야 하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기준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모듈화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⁴⁾

164) 이하 각 모듈화의 방법에 제시한 표의 형태는 국회도서관 법률쟁점서비스 관련 요약표에서 착안하여 연구자가 직접 만들어 제시한 것임.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3호, 2015.1.20., 일부개정]
입법 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조)
법률 분야	제44편 정보통신
관련 법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o 시행령 2014.12.9. 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타법개정 o 시행규칙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상하위법/ 연관 법규	
상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02-2110-2928)

(2) 해당법의 입법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1) 입법과정과 법률정보

입법과정이란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으로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과정을 말한다.¹⁶⁵⁾ 입법과정은 광의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국내법 체계 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실정법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165) 국회도서관, 『2008년도 법률정보조사과정』, 2008, 14면.

협의로는 국회에서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협의로는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여 법률로 의결하는 법안심사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⁶⁶⁾

이와 같은 입법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입법자의 의사로서 발현되며, 그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안으로 구체화되고, 입법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기 때문에, 입법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기능, 갈등가능성의 축소, 정당성의 기능,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및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⁶⁷⁾

입법과정 특히 법안심사과정은 대체로 법안의 제출, 본회의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로 이루어진다.¹⁶⁸⁾ 즉,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면,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위 법안에 대하여 상정, 심사하고 의결한 다음 위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하고, 이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보고받고 해당 법안에 대하여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법안에 대하여 위 상임위원회는 그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이를 심의, 의결한다.¹⁶⁹⁾ 이와 같이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법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므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¹⁷⁰⁾

166) 오일석·홍찬기·김성훈, “입법 법률정보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연구”, 『입법 정보지원 연구과제보고서 모음집』, 국회도서관, 2013. 2., 259면.

167)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12, 84면.

168)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work/asswork0101.jsp> (검색일: 2015.9.30).

169) 오일석·홍찬기·김성훈, 전제논문, 264면.

170) 정호영, 전제서, 425면.

2) 주요 제·개정 연혁 정보의 제공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연혁에 대한 정보는, 제·개정 당시 시대상황과 특정 법률의 발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발전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특정 법률에 대한 입법요구사항을 제시해 준다. 또한 특정 법률의 연혁 정보는 현행법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특정 법률을 모듈화함에 있어 그 법률의 주요한 제·개정 사항에 대한 연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당 법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회의 변화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입법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제·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 준다면 해당 법률 대상국이 적용함에 있어 자신들의 사회 발전의 속도와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제·개정 연혁 정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하여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특정 법률의 제·개정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법률의 주요 제·개정 연혁정보에 대한 법제 모듈화를 실행하는 경우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제·개정 연혁 정보에 대한 모듈화는 타법개정이나 법령 용어 순화 정비 등을 제외한 주요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보완, 삭제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림 4-4] 법률 제·개정 정보 검색(171)



3) 국회 입법 정보의 모듈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법의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입법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킴은 물론 법률의 집행이나 사법적 구속력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는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와 문헌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 해당법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국회의 자료와 문헌을 모듈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 따라 생성된 자료와 문헌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 시스템 등에 수집·관리되고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국회 대수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으며, 법률안 처리과정에 대한 해당

17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개정 정보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캡션.

날짜와 처리 결과 및 법률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관련 회의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¹⁷²⁾ 한편 국회도서관은 법률쟁점서비스¹⁷³⁾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검토보고서, 회의록, 심사보고서 등 각종 입법자료 등을 법안심사 과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¹⁷⁴⁾ 즉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치면서 변경, 수정, 삭제, 추가된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특정 법률의 제·개정 사항이 도출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¹⁷⁵⁾ 이러한 법률쟁점서비스의 관련 내용을 모듈화에 포함시켜 대당국에 제공한다면, 대당국의 법률 제·개정에 있어 참고하고자 하는 우리의 특정 법률이 통과될 당시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국에서는 우리 법률을 참고하여 법률을 제·개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입법자의 의사를 수렴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상국의 법률 집행이나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입법자의 의사가 수렴되어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변경, 수정, 개선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대상국이 향후 입법을 수행하는 경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시스템을 기초로 해당법의 입법 정보에 대한 법제모듈화를 실행하되, 해당법에 대한 법률쟁점서비스가

172) 오일석·홍찬기·김성훈, 전제논문, 264면.

173) <http://lawpro.nanet.go.kr/main/main.do>(방문일: 2015.10.2.)를 방문하여 특정 법률의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입법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

174) 오일석·홍찬기·김성훈, 전제논문, 265면.

175) 오일석·홍찬기·김성훈, 전제논문, 265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모듈화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법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입법의 효과성에 대해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듈화의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을 검색하여 주요 제·개정 연혁 정보에 대한 모듈화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개정 차수별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술하되, 타법개정이나 법률용어 정비의 경우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개정 차수가 많은 법률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큰 의미가 있었던 주요 개정 차수를 중심으로 모듈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연구된 논문이나 전문가 기고문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제·개정 입법자료의 경우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국에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논의와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입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국이 관련 입법을 시도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을 정리하여 해당국가에 제공하는 것을 모듈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률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주요 제·개정 연혁정보	<p>■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¹⁷⁶⁾</p> <p>◇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p> <p>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 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제8조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40조제3항·제4항 및 제63조제4항).</p> <p>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p> <p>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32조의2 신설).</p>

17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0000> (검색일; 2015.9.30).

17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302&lsId=&efYd=201403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검색일; 2015.9.30).

<p>주요 제·개정 연혁정보</p>	<p>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함(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p> <p>■ 법률 제12504호, 2014.3.24., 일부개정¹⁷⁷⁾</p>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p>
<p>제·개정 관련 국회 입법 자료</p>	<p>■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15737(2015.6.24) ■ 대안반영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909567(2014.2.2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1909124(2014.1.2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911129(2014.7.11.) ■ 관련 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1907084(2013.9.3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1909212(2014.2.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909357(2014.2.12)

제·개정 관련 국회 입법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909439(2014.2.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1910089(2014.4.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1912307(2014.11.5) ■ 검토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안 1909567(2014. 4)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1909124(2014. 2)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1907084(2014. 2) ·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 1909212(2014. 2) ■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2014.2.19) · 제32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2014.2.25) · 제33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2015.4.28) · 제33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회 제4차 회의 회의록(2015.4.30) · 제33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2015.4.30) · 제3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2015.6.16) · 제3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제8차 회의록(2015.7.6)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안 1909567(2015.7)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1909124(2015.7) · 이찬열의원 대표발의안 1911129(2015.7)
입법경과 유무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 입법경과)

한편 이와 같은 입법과정에 대한 정리는 국회도서관 법률쟁점서비스를 통하여 특정 법률들에 한하여 입법경과로서 제공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정보에 대한 모듈화에 대하여는 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예시로 설명하였다.

3. 해당법의 주요내용 및 연관내용의 모듈화

(1) 해당법 주요내용 모듈화의 방법

다음으로 해당 법의 주요내용을 모듈화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목적, 정의, 해당법의 일반원칙, 국가의 계획 수립과 시행,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총칙이 우선 등장한다. 이후 각급기관의 의무와 권한이 기술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해당법의 주요내용이 서술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의 경우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 저작권에서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법의 핵심내용이 된다. 이후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에서 데이터베이스저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내용에 대한 기술 이외에 해당 법의 시행과 관련된 협회나 위원회 등의 관련 기구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앞의 예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의 경우 제8장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구제 절차나 사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저작권법」의 경우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령들은 해당 법의 적용에 따른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법의 규정 태도는 때로는 법 자체에 대하여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경우,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등을,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보호대책의 수립, 보호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보호계획의 수립, 보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에서는 지정, 지정권고, 취약성분석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에서는 보호지침, 보호조치 명령, 침해행위 등의 금지, 침해사고의 통지 및 복구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제6장에서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을 제7장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취약성 분석 평가를 통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그에 대한 지정권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호대책과 보호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대한 권고를 하는 업무수행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지 및 복구조치와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지침을 제공하여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모듈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해당 법률의 규정들을 정리하여 모듈화한 다음 제공하여야 한다.

결국 해당 법에 대한 모듈화의 경우 법의 시행을 위한 절차적 순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단순히 법에 따른 순서로 모듈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부여하는 법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의 조문 배치에 따른 모듈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관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이 우선되는 경우, 혹은 해당 법이 특정 절차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절차적 순서에 따라 모듈화하여야 한다.

(2) 해당법 연관내용의 모듈화

해당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권리구제 절차와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해당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종 책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모듈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법과 관련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재 규정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해당 법 조문의 판례 관련 정보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책임과 벌칙 규정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모듈화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는 물론 중재절차와 국제분쟁해결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해당 법률의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구제절차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모듈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모듈화는 토지와 국토개발, 노사관계나 독점규제, 소비자 보호의 문제 등의 영역에서 필요하다. 특히 조세와 세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관련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모듈화의 방법

우선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표로 만들어 한눈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최근 쟁점이 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주요 조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해당 조문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보여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대한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수준과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률 조문의 내용을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의 수행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3장 금품등 수수 금지 등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0조 외부강사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1조 공무수행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4조 신고의 처리 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대한 조치 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제19조 교육과 홍보 등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 징계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부과 제24조 양벌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서 법조문을 재배치하여 모듈화함으로써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경우 크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위협의 식별과 사전적 위험분배 관련 규정 및 사후적 위험분배 관련 규정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보다 용이하다.¹⁷⁸⁾ 즉 이 법은 지정과 관련하여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및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적 위험분배와 관련하여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후적 위험분배와 관련하여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법령에 대한 대상국의 이해를 보다 쉽게 증진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3호, 2015.1.20., 일부개정]	
지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사전적 위험분배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178) 위험분배의 원칙에 따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일석, “위험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선 방안”, 『법학논집』 제19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

사후적 위험분배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한편 해당법의 주요내용을 조문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의 순서에 따라 혹은 그 법이 기술한 업무내용의 선후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조문표를 기준으로 모듈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에 분석된 학술논문과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되, 관련 정부 정책 및 입법안에 대하여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은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그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 통일적으로 모듈화하기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 및 형벌에 대한 규정, 그리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명하여 모듈화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 형사는 물론 행정적 제제와 관련된 판례 정보는 차후에 기술하는 사법과 관련된 정보에서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소개하는 정보를 첨부나 부록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해당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1) 집행과 관련된 법률정보의 모듈화

해당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모듈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매년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지원을 요구하는 대상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법과 관련된 실제 정부 업무수행에 대한 자료가 모듈화되어 제공된다면 우리 정부의 실례를 기초로 해당 업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되는 국정감사자료를 파악하여 해당 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모듈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원 평가보고서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예산의 적절한 반영과 집행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대상국의 예산상 해당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발표하는바 해당 법에 대한 입법계획을 모듈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대상국이 새로운 입법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대상국에서 집행할 법률을 개발, 집행 또는 개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법으로 신설되는 기관(위원회, 협의회 등)에 대한 기능과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함은 물론, 관련 인물정보와 연락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국에서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법에 대한 집행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들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 직면하여 해당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대하여 그 해석을 의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법제처에서 실행한 해당법에 대한 해석례가 있는 경우 이 또한 모듈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울시 송파구가 법제처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에서, 법제처는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수집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등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¹⁷⁹⁾ 결국 해당 법에 대한 해석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모듈화의 방법

해당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부 소관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을 정리하여 관련 정부 대책으로 우선 모듈화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79)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107236&rowIdx=310>
(검색일; 2015.9.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부의 관련 대책을 모듈화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p>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84호, 2014.1.28., 일부개정]</p>
관련 정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대책(2007. 1) ○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2007. 7)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보완대책(2009. 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9. 30)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 2) ○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2012. 10) ○ 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오픈(2012. 10) ○ 보이스피싱 합동(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경보제 실시 (2012. 11)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2013. 9)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2013. 12)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2014. 1)

아울러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질의 내용(번호)’과 ‘요지’ 및 ‘회답’을 모듈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모듈화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내용이 많은 경우 링크나 본문 또는 첨부 등을 통하여 따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표] 법령해석사례¹⁸⁰⁾

법률	<p>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p>
법제처 법령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14-0683(회신일 2014. 11. 19) ■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민법」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80) <http://ahalaw.moleg.go.kr/lsSch/107988?pageIndex=11> (검색일; 2015.9.30).

<p>법제처 법령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전문적·기술적이어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고 단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5. 해당법에 대한 사법 정보의 제공

(1) 사법과 관련된 법률정보의 모듈화

기본적으로 해당법의 사법과 관련된 법률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즉, 위 시스템에 접근하여, 해당법을 검색한 다음 판례, 헌재결정례, 행정심판례를 통해 해당법에 대한 사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법을 검색한 창을 통하여 특정 조문 앞에 위치한 “판”을 클릭하여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색과 조사에 기초하여 해당법과 관련된 판례, 헌재결정례, 행정심판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입력한 다음 판례를 클릭하면, 총4건의 판례가 검색된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에 대한 3개의 사건¹⁸¹⁾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¹⁸²⁾이 그것이다. 그런데 위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동일 사건에 대한 원심,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을 다룬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누설 등 사건은 명확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언급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색한 다음, 70여개 넘는 각 조문에 있는 “판”을 클릭하면, 판례 2건과 헌재 결정례 2건이 검색될 뿐 대부분의 조문에는 관련 판례나 헌재 결정례가 검색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2015년 초에 이른바 “옥션 사건”¹⁸³⁾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검색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법령정보 센터를 통해 해당법에 대한 사법 정보를 모듈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하면, 이른바 1)옥션 사건, 2)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¹⁸⁴⁾, 3)개인정보 누출의 의미¹⁸⁵⁾ 등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판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정보에 대한 모듈화의 경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등 해당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1)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69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3노6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182)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791 판결.

183)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184)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85)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법률 전문가가 해당 사법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시스템과 연동 시켜야 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사법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최신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검색을 기본으로, 해당법과 관련된 교과서와 논문에 언급된 판례를 포함하여 모듈화 된 판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모듈화의 방법

해당 법의 사법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판례 위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관련된 사건 번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판례의 내용에 대하여는 링크나 본문 또는 첨부 등을 통하여 따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해당법의 조문과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는 해당 조문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판결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4.11.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제2조, 제4조, 제36조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일부 인정된 죄명:주민등록법 위반)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3노613, 판결] ○ 제18조, 제59조, 제71조, 제7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6969, 판결] ○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791,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	--

<p>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p>□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p>□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p>헌법재판소 결정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293, 201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정관상 목적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그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주체인 교원의 개인정보 ○ 제23조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49, 2014.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
----------------------	---

6. 해당법과 관련된 전문학술지 및 전문가 정보의 모듈화

(1) 학술지 및 전문가 정보의 모듈화

해당법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대상국에서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법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학술지 또는 학위논문 관련 자료를 모듈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스포츠와 법학회, 유통법학회, 금융법학회, 사회보장법학회,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등 특정 법률 분야와 관련된 세분화된 법학 학술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해당 학회와 관련된 정보 또한 모듈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술단체 및 전문가와 연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국이 해당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연결됨으로서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보다 용이하게 우리 법제의 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법리와 법이론을 해당국에 지원함으로써, 해당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듈화의 방법

기본적으로 해당법의 모듈화 관련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학술지 및 전문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 및 전문가 정보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국에서는 이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자료는 해당국의 법제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전문학술지 및 전문가 등에 대한 모듈화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관련 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개인정보보호법학회 o 한국인터넷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이상일 의원실,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개인정보보호 그 현실 속으로(2013. 6. 12) o 변재일 의원실,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책토론회(2013. 9)
전문가 학술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안암법학(2013. 5) o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상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2013. 2) o 조만형,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2013. 2)

전문가 학술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오일석,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2015. 3) o (이하 생략)
---------------------	--

7. 분야별 관련 법령 모듈화로의 발전 모색

(1) 주요 법률분야의 식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 대한 모듈화를 수행한 경우, 모듈화된 관련 법률들을 모아서 분야별 법률 모듈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대한 모듈화를 완성한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법률과 관련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도 모듈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분야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44개 법률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국가법률정보자원포준색인 체계는 25개의 대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분야가 반드시 위 44개 분야 또는 25개 대주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에 대하여 “정보보호” 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고, “재정·경제일반”에 대하여 “공정거래” 분야를 추가하여 세분할 수도 있다. 즉 법제지원 대상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법률분야를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분야를 식별함에 있어, 우리 법제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정 법률분야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고찰을 제시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IT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따른 변화과정을 일정한 시기별로

분류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위시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정부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관련 법률로 제시한 연구¹⁸⁶⁾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한국 에너지 법제의 흐름에 대하여, 초기에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별 중심의 입법이 주로 제정되었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공기관(공사)의 설립법이 뒤이어 마련되었지만, 에너지원별 중심의 입법에 비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은 상당히 뒤늦게 제정되어, 한국의 에너지 법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아닌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위주로 편성되어 왔다고 지적한 에너지 법제 관련 연구¹⁸⁷⁾ 또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에너지 법제는 자원의 배분과 동원, 수입의 통제와 수출장려, 가격통제 등 계획이 일정 부분 시장기능을 대신하면서,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각종 산업 촉진법·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자원과 은행의 국·공유화, 시장진입의 규제에 관한 법제들이 마련되었다고 한다.¹⁸⁸⁾ 이후 에너지 법제는 일정한 성장궤도에 들어서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던 것에서 점차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성장만을 추구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특정 정부조직이나 규정들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한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의 철폐를 단행하는 등 사회변화에 걸맞게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186) 임현·이준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IT법제-』, 법제연구원, 2013. 7., 26-27면.

187) 이준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에너지 법제-』, 법제연구원, 2013. 7., 15, 21면.

188) 이준서, 전계서, 15, 21-22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¹⁸⁹⁾

이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하여 식별되었거나 자료가 축적된 특정 법률분야 및 법제지원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특정 법률분야에 대하여 모듈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법제 모듈화 방향

특정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모듈화가 완성되면, 특정 법률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해당 법령이 속한 영역을 기준으로 유사 또는 연관 법령을 통합하여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상국의 경제발전의 정도와, 경제발전의 전략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영역을 발굴하여 모듈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법제모듈화 대상국들은 자원보유국으로서 자원을 개발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인프라는 물론 에너지, 금융, 통신 등의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특정 해당법에 대한 모듈화가 완료되면, 교통, 에너지, 금융, 통신 영역 등으로 통합하여 분야별로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 사법 시스템의 구현과 관련된 형사, 민사, 상사 관련 영역의 법제에 대한 모듈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국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노동, 교육, 조세, 의료 영역은 물론 외국인 투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통합하여 영역별 모듈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189) 김두열, 『경제법제 60년사』, 해남, 2011, 5면.

제 5 장 법제 시각화 방안

제 1 절 서론

한 나라의 법제 내용을 대상국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된 후 단기간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제교류를 통해서 선진법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적자원의 개발과 법령의 정비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법령은 법령정보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학력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쉽게, 단절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¹⁹⁰⁾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형태로 국민에게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쇄매체를 활용한 종이법령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법제처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 기관들이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법령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제 2 절 현행 법제시각화 현황

1. 우리나라의 종이법령집 발간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6호)’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현행 법령집을 발간할 의무가 있으며,

190) 고문현·김남희, 『법령정보제공 선진화방안연구』, 법제처, 2012, 8면.

제 5 장 법제 시각화 방안

법제처는 인쇄매체인 대한민국헌행법령집 발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령정보관리원이 발간 보급하는 ‘대한민국 헌행법령집’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제식 종합법령집이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령을 수록하고 있고, 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됨에 따라 추록을 발간하여 구법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⁹¹⁾

[그림 5-1] 대한민국 헌행법령집¹⁹²⁾



또한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법령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종이관보는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에 배포되고 있다.

191)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9.30).

192)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9.30).

[그림 5-2] 대한민국 종이관보¹⁹³⁾



193)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검색일; 2015.9.30).

그리고 현암사를 비롯한 민간출판사를 통해서도 인쇄매체를 활용한 종이법령집이 발간되고 있다.

[그림 5-3] 현암사가 만든 법령집¹⁹⁴⁾



2. 외국의 종이법령집 발간 현황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도 법령집 발간 기관을 통해 법령집을 제공하고 있다.

(1) 미국의 법령집 발간 현황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입법·사법·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집을 각각 발간하고 있다.¹⁹⁵⁾

194) 현암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검색일; 2015.10.2).

매 회기마다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모아서 엮은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와, 주 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모은 Laus of NewYork 등이 발행되고 있다.¹⁹⁶⁾

또한 민간 출판사인 West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법령집인 U.S.C.A 등이 있다.¹⁹⁷⁾

(2) 독일의 법령집 발간현황

독일도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로서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법률제정과 법령집 발간을 맡고 있다. 연방법무부에서 가제식 법령집인 “연방법령 관보(Das Deutsche Bundesrecht)”를 발간하고 있으며 1949년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령을 제1부에서 수록하고 있고, 1951년 이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그 조약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규는 제2부에 수록하고 있다.¹⁹⁸⁾

(3) 일본의 법령집 발간현황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법제국이 편찬하고 민간출판사인 제일법규(第一法規)에서 인쇄·배포하고 있는 “현행법규총람(現行法規總攬)”과 법무성이 편찬하고 교세이출판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현행일본법규(現行日本法規)” 등이 있다.¹⁹⁹⁾ 모두 가제식 법령집이며 법령 공포 후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추록을 발행하고 있다.

(4) 중국의 법령집 발간현황

중국의 법령집은 민간출판사에서 발행이 활발하다. 중국법제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단권짜리 “중화인민공화국상용법률법규전서”와 길림인민

195) 고문현·김남희, 전게서, 51면.

196)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10.2).

197) 고문현·김남희, 전게서, 53면.

198)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10.2).

199) 고문현·김남희, 전게서, 58면.

출판사에서 17권으로 발행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법률법규”가 있으며, 중국방정출판사에서 총4권으로 발행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법률법규 전서” 등이 있다.²⁰⁰⁾

3. 우리나라의 전자매체를 통한 법령서비스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 법제처,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단체에서 소관 법령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문법령 외에 영문법령, 중문법령을 서비스하기도 하고 종이법령집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 법령정보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법령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종이관보는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에 배포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법령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소관외의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를 활용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²⁰¹⁾

또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관보’의 보완적 형태로 ‘전자관보’를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 종이관보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맞춤형 검색기능, 책갈피, 메모 기능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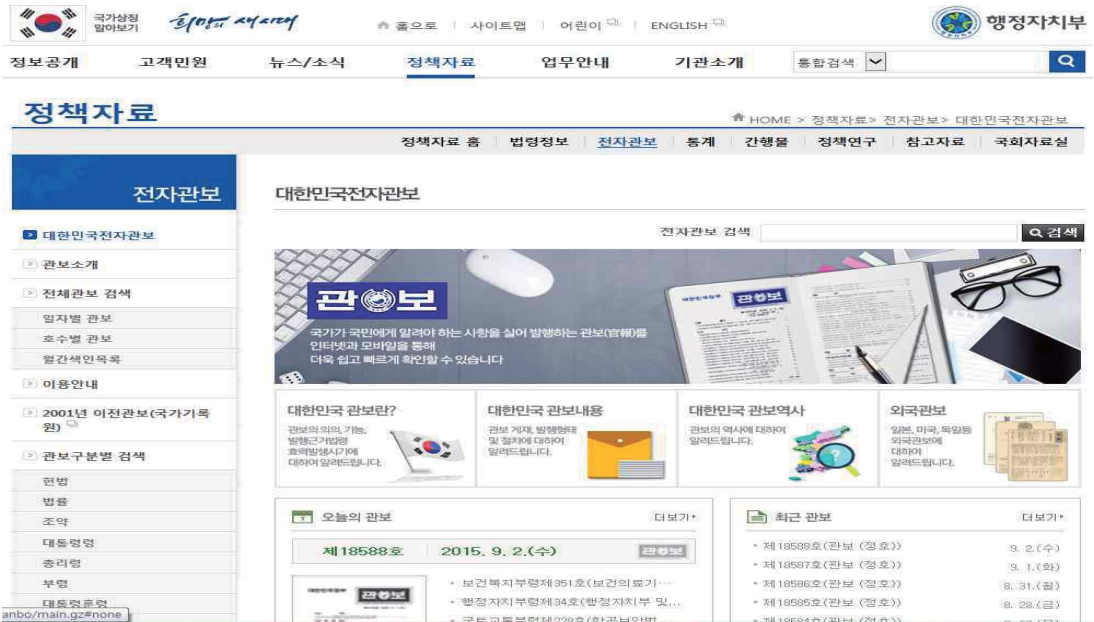
200)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10.2).

201)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검색일; 2015.10.2).

[그림 5-4]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화면²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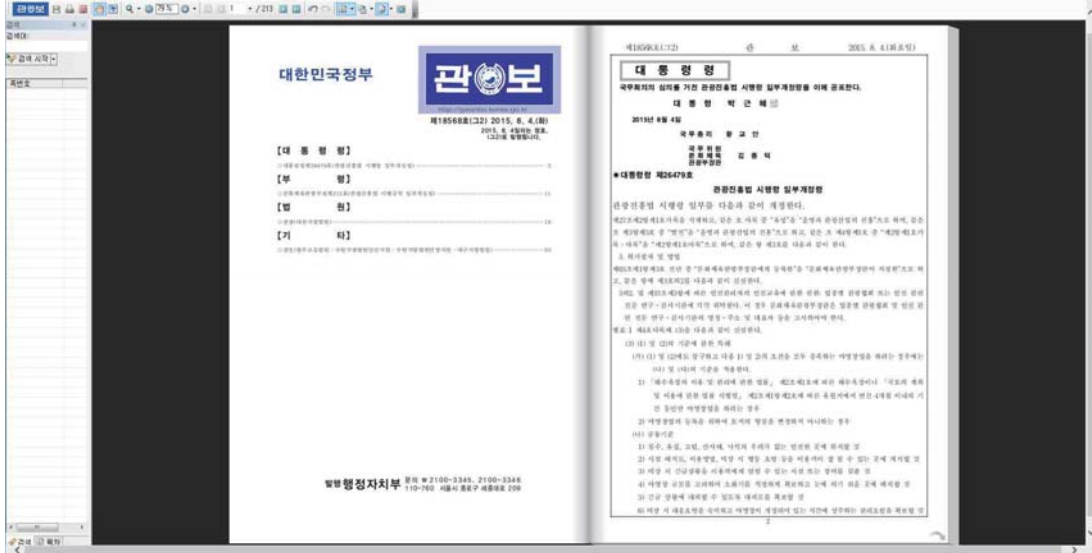
[그림 5-5]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²⁰³⁾



20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검색일; 2015.9.30).

203)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검색일; 2015.9.30).

[그림 5-6] 대한민국 전자관보204)



(2)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제공

정부입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법제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행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법령을 신속·정확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현행법령을 비롯해서, 생활법령, 알기 쉬운 법령, 어린이를 위한 법해석, 북한법제, 세계법제 등 법령에 관해서 총망라하고 있다. 영문법령과 중문법령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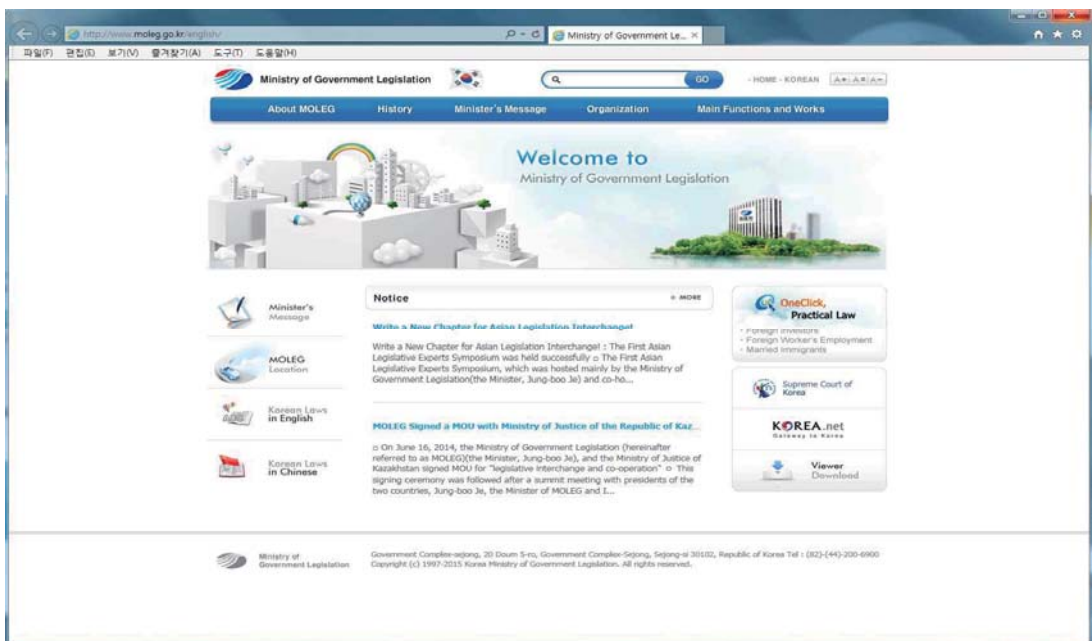
각각의 법령은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은 물론이고 한글파일과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에서 애플의 형태로도 법령을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법령수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4)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대한민국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검색일; 2015. 9.30).

[그림 5-7] 법제처 홈페이지 화면205)



[그림 5-8] 법제처 영문홈페이지 화면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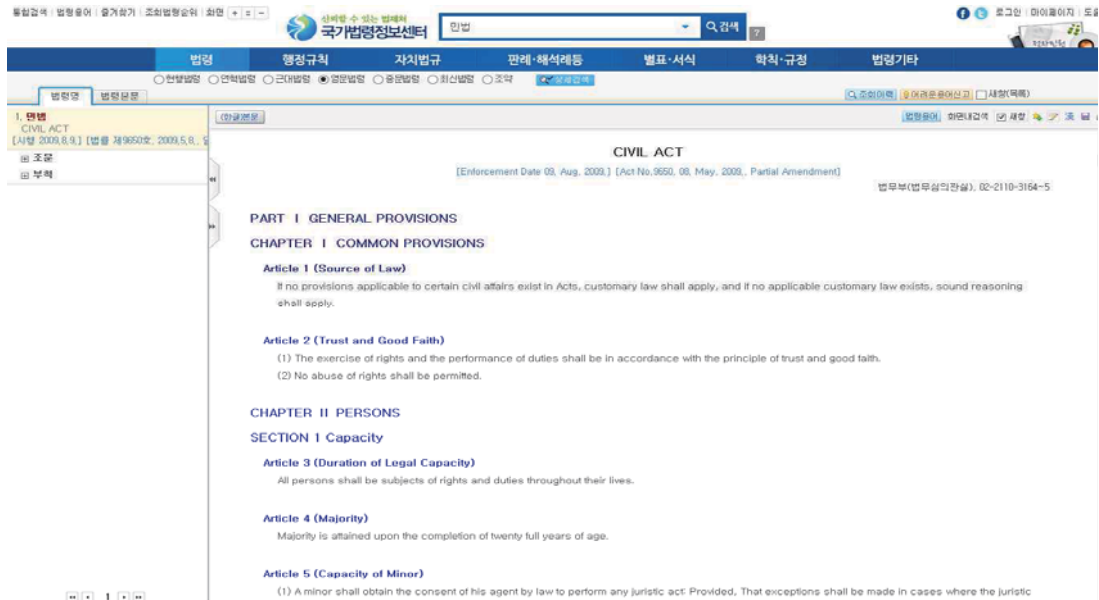
205)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 2015.9.30).

206) 법제처 영문홈페이지 [http://www.moleg.go.kr/english/] (검색일; 2015.9.30).

[그림 5-9]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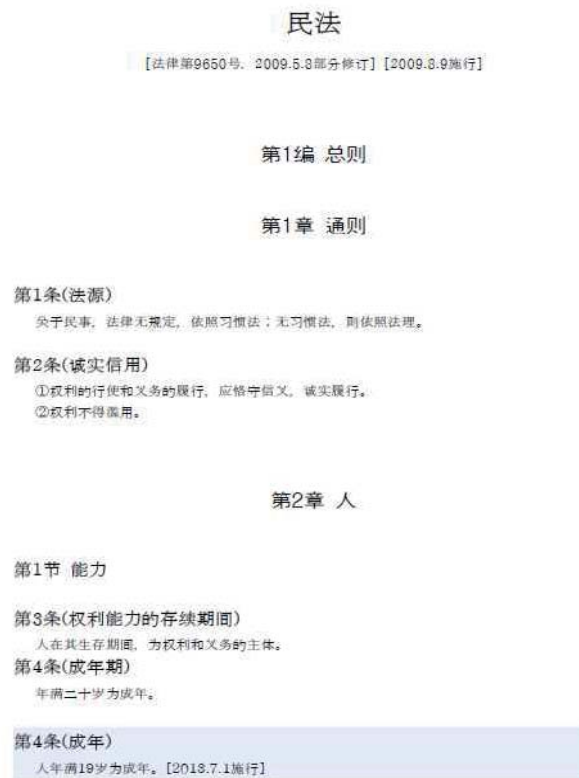
[그림 5-10] 법제처의 영문법령서비스(208)



207)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orld.moleg.go.kr/] (검색일; 2015.9.30).

208) 법제처 홈페이지 영문법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그림 5-11] 법제처의 중문법령서비스²⁰⁹⁾



(3) 법무부의 법령제공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소관법령만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 소관법령 외의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다. 국민생활에 관련된 법무정보와 각종 시험정보 등 소관 업무에 관계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 화면을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안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법령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9) 법제처 홈페이지 중문법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제 5 장 법제 시각화 방안

[그림 5-12] 법무부 홈페이지 화면210)



[그림 5-13] 법무부 영문홈페이지211)



210)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검색일; 2015.9.30).

211) 법무부 영문홈페이지 [http://www.moj.go.kr] (검색일; 2015.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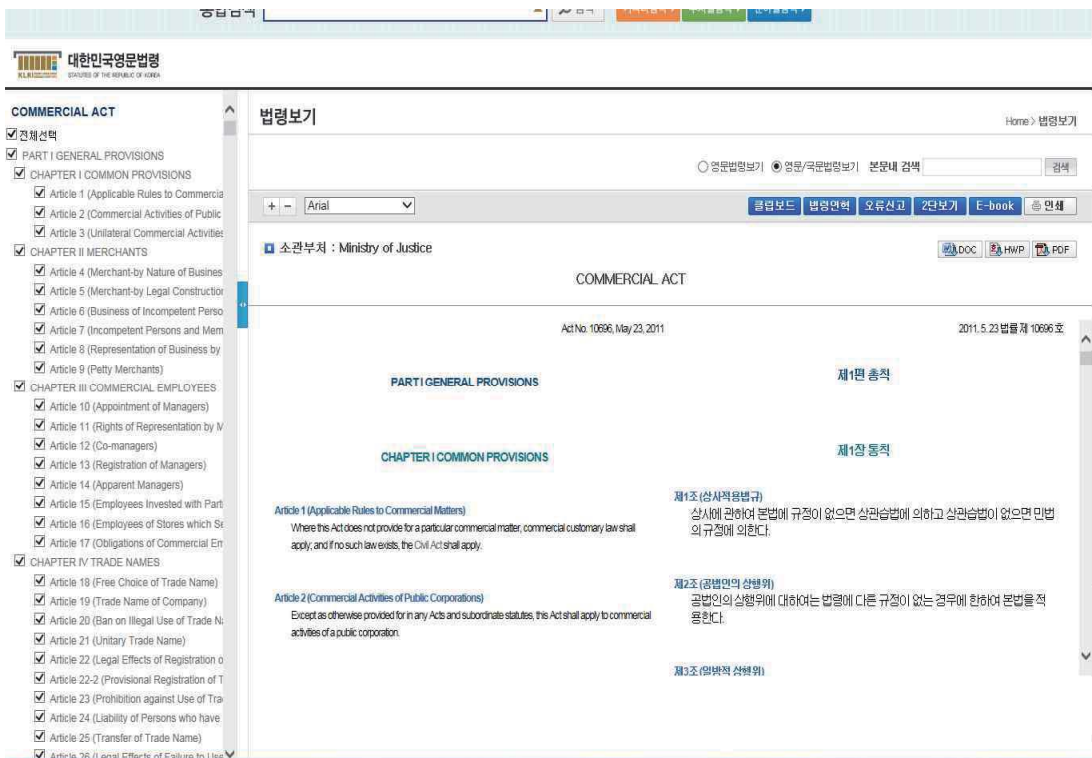
(4)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제공

한국법제연구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을 제공하고 있고, 영문법령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인쇄,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한글, pdf, Ms-Word 등의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 전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한 법령에 대해서만 수록하고 있다. 법령 비교검색, 국문/영문 비교검색, 가나다 검색, 부처별 검색, 분야별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14] 한국법제연구원 영문/국문 법령 비교검색화면²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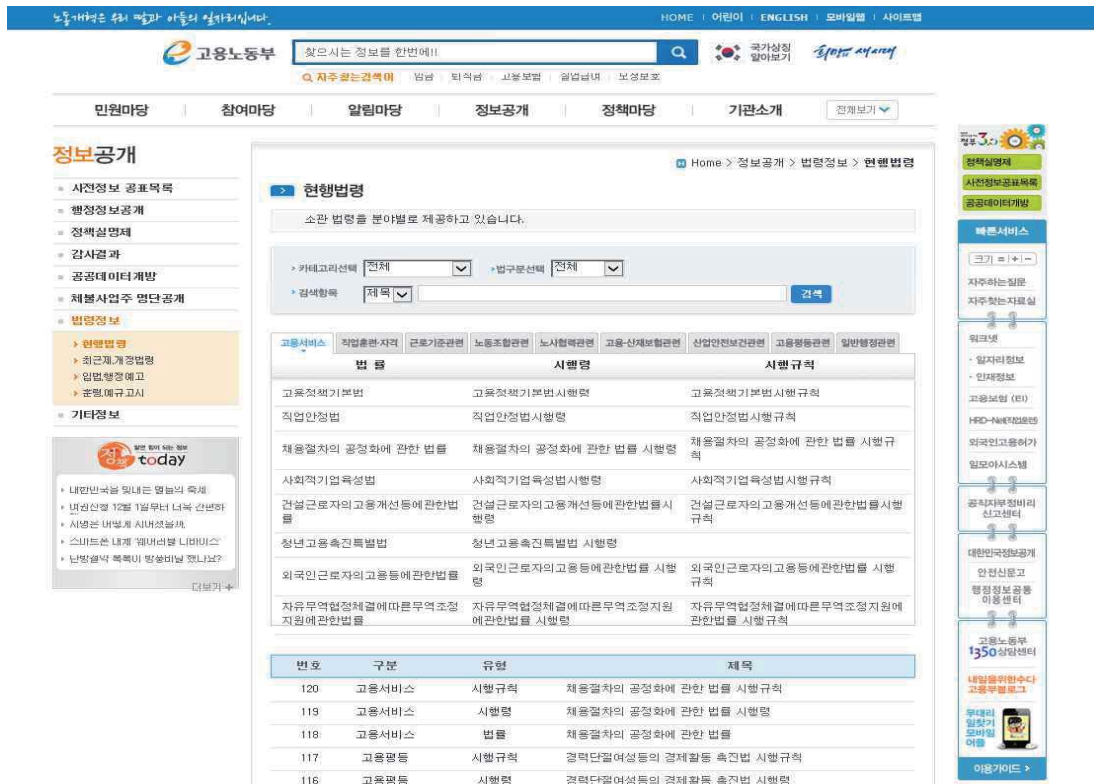
212)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elaw.klri.re.kr] (검색일; 2015.9.30).

(5) 고용노동부의 법령제공

고용노동부도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법령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링크 되어 제공하고 있다. 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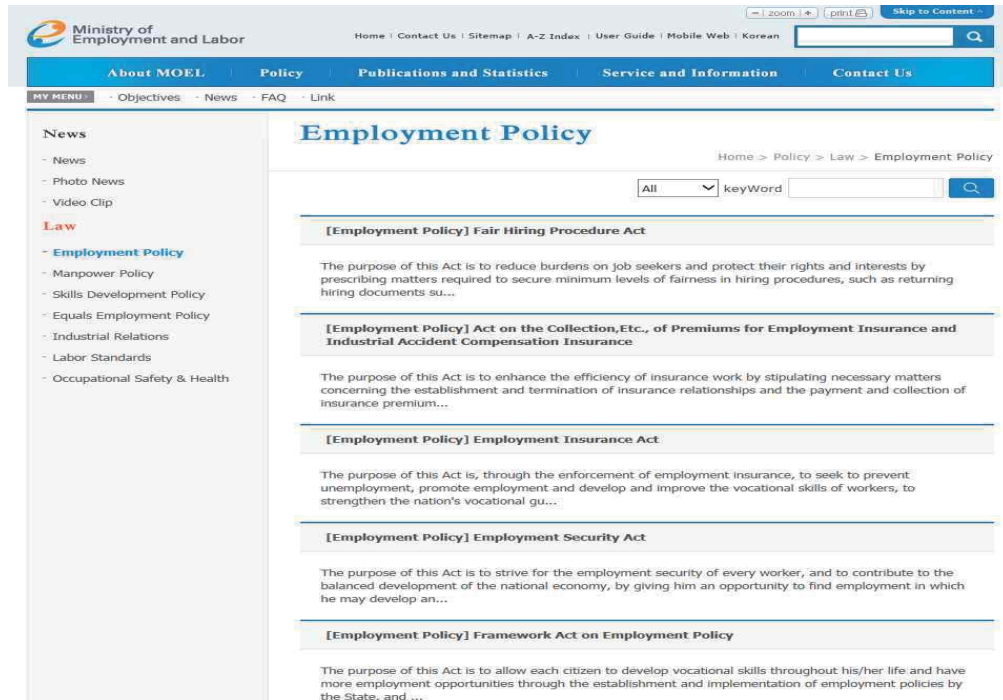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관련 영문법령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자체만 pdf 파일로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비교·검색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림 5-15]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²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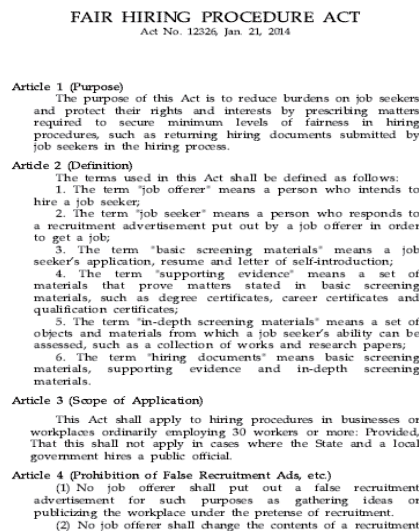


2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 (검색일; 2015. 9.30).

[그림 5-16]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214)



[그림 5-17] 고용노동부 pdf 영문법령 제공화면215)



2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english/poli/poliLaw.jsp] (검색일; 2015.9.30).

21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검색일; 2015.9.30).

(6) 대한민국 국회의 법령정보 제공

대한민국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현행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각 부처별 검색, 분야별 검색, 사전식 검색을 할 수 있고, 최근 제정·개정된 법률, 폐지된 법률 및 법률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5-18]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²¹⁶⁾



(7) 민간법령정보제공업체의 법령정보 제공

로앤비, 예스로 등 민간 법령정보서비스 업체들도 전자매체를 통해서 법령제공을 활발히 하고 있다. 분야별법령분류,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3단 검색, 신구조문 비교검색, 산업별 주요법령 및 하위규정 비교검색 등 체계적인 법령정보 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다. 법령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문에 관계된 판례, 사례, 주석까지 제공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16)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검색일; 2015.9.30).

[그림 5-19] 로앤비의 홈페이지(217)



[그림 5-20] 예스로 홈페이지(218)



217) 로앤비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검색일; 2015.9.30).

218) 예스로 홈페이지 [http://www.yeslaw.com] (검색일; 2015.9.30).

4. 외국의 전자매체 법령정보서비스

(1) 미국의 전자매체 법령제공

미국에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매체는 미국 연방하원의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uscode.house.gov>), 미국 연방상원의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www.senate.gov>),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www.loc.gov>) 등이 있다.²¹⁹⁾ 조문번호와 주제어를 토대로 현행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폐지된 과거의 규정까지도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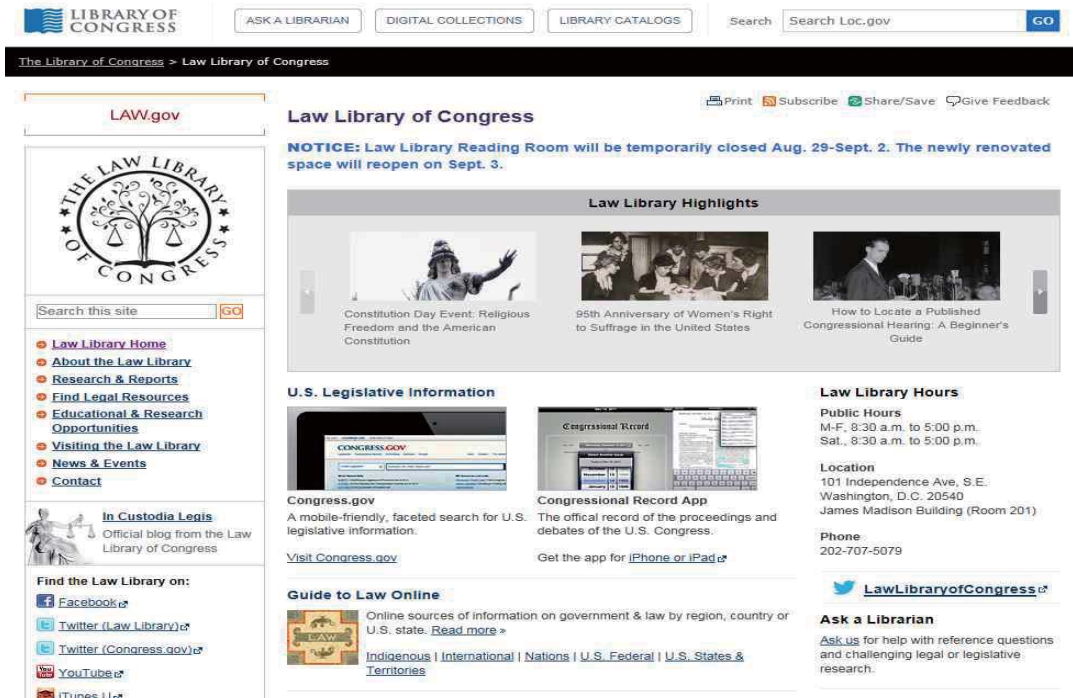
[그림 5-21] 미국연방하원의 홈페이지²²⁰⁾



219) 고문현 · 김남희, 전게서, 52면.

220) 미국 연방하원의 홈페이지 [<http://uscode.house.gov/>] (검색일; 2015.9.30).

[그림 5-22] 미국의회 도서관 법령정보 홈페이지(221)



(2) 일본의 전자매체 법령정보

일본은 총무성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홈페이지(<http://law.e-gov.go.jp>)에서 법령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의원 홈페이지(<http://www.shugiin.go.jp>), 국회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일본법령 색인(<http://hourei.ndl.go.jp/SearchSys>)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행 법령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²²⁾

이들 홈페이지에서는 단순한 법령의 소개뿐 아니라 의회에 발의된 법안부터 심의중인법안, 의결된 법안까지 과정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법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²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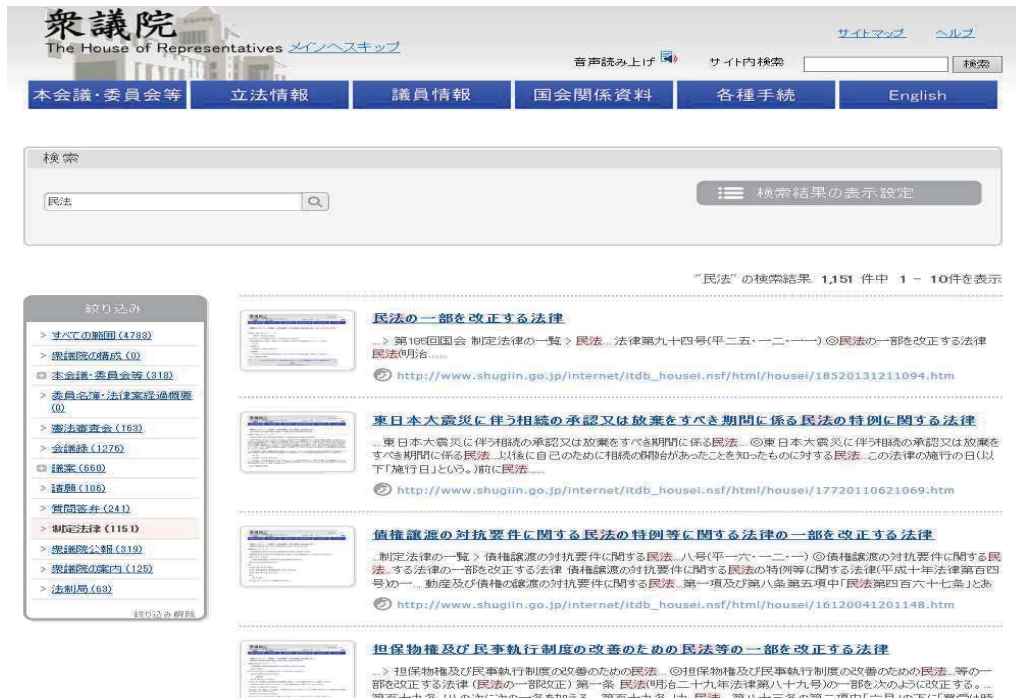
221) 미국의회도서관 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www.loc.gov/law/>] (검색일; 2015.9.30).

222) 고문현·김남희, 전거서, 61면.

[그림 5-23] 일본 법령데이터제공 시스템 홈페이지224)



[그림 5-24]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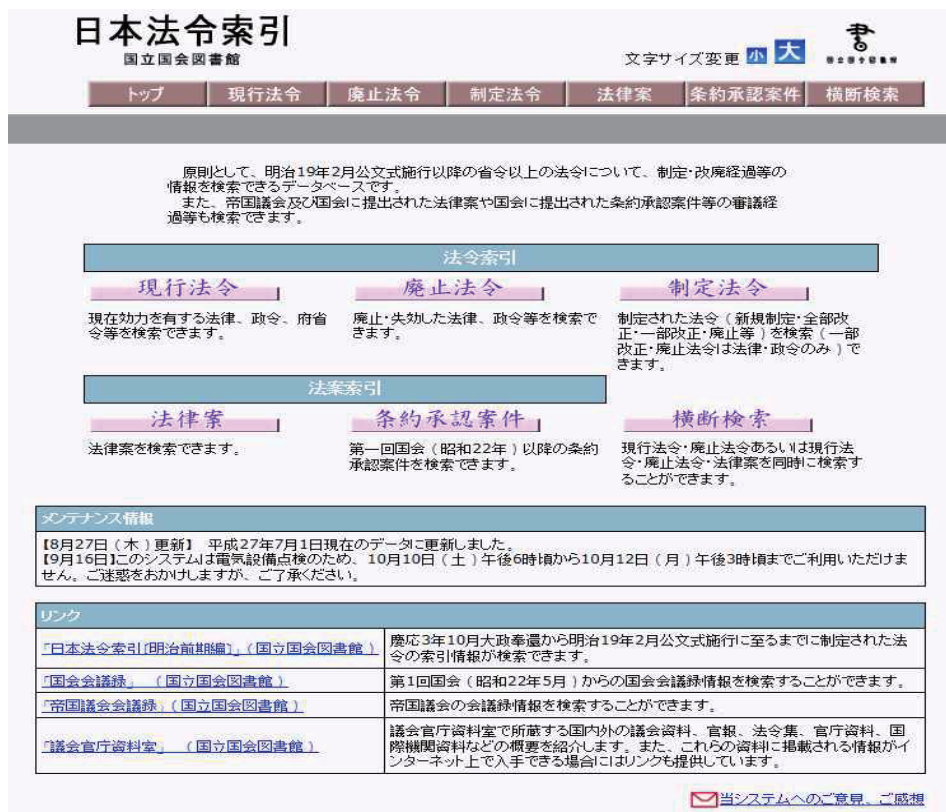


223) 고문현·김남희, 전게서, 60-61면.

224) 일본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홈페이지 [http://law.e-gov.go.jp/] (검색일; 2015.9.30).

225)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http://www.shugiin.go.jp] (검색일; 2015.9.30).

[그림 5-25]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일본법령색인 홈페이지(226)



(3) 독일의 전자매체 법령정보

독일은 연방정부 사법부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현행법령을 서비스 하고 있다. 알파벳 순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민법, 형법 등 분야 별로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 및 부서별 관련법 전체를 검색할 수 있다.

226) 일본법령색인 홈페이지 [http://hourei.ndl.go.jp/SearchSys] (검색일; 2015.9.30).

[그림 5-26] 독일연방 사법부 법령정보센터(227)



제 3 절 현행 법령정보 제공의 문제점

1. 종이법령집의 발간의 문제점

(1) 법령정보의 양적 확대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포함하여 4,970여 건에 달한다.²²⁸⁾ 법령 외에도 법규적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규칙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하고 정보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필요한 법령의 양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폐지되는 법안보다 새로 생성되는 법안이 많아지면서 누적 법령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늘어나는 법령을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법령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법령집의 체계적인 기획 관리가 필요하다.²²⁹⁾

227) 독일연방사법부 홈페이지 [http://www.gesetze-im-internet.de/] (검색일; 2015.9.30).

228)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 (검색일; 2015. 9.30).

229) 고문현·김남희, 전거서, 67면.

[그림 5-27] 법제처 법령통계²³⁰⁾

연도별 법령현황

2015-08-28 현재 2015년 ▼ 보기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5	1,434	-3	1,918	0	1,624	6	4,976	3
2015	1,437	37	1,918	31	1,618	15	4,973	83
2014	1,400	49	1,887	51	1,603	41	4,890	141
2013	1,351	18	1,836	49	1,562	35	4,749	102
2012	1,333	37	1,787	39	1,527	4	4,647	80

※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2) 법령정보 검색기능의 문제

생활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오늘날 하나의 단편적인 법령정보의 제공은 수범자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 하나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법령 규정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 규정에 관계된 하위법령과 판례등도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각의 주체들에 의해 단순히 제공되는 법령정보가 아닌 종합적인 법령정보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종이법령집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²³¹⁾

230)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5.9.30).

231) 고문현·김남희, 전거서, 68면.

2.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법령제공의 문제점

(1) 법령정보의 단순 제공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이용한 법령정보 제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령의 원문 그대로를 단편적으로 가공 없이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마다 소관 법령만 선택하여 서비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법령의 종합적인 이해나 문제해결을 위한 입체적인 가공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령과 하위 명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전자매체의 보안상의 문제

인터넷이라는 전자적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는 항상 인터넷 보안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산상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서버의 불안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실, 외부로부터의 해킹으로 인한 인터넷 마비상황 등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의 중단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²³²⁾

(3) 외국어 법령의 확대 필요성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우리의 국문 법령을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령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영문법령 제공의 확대는 물론이고 중국어, 독일어 등 수요가 많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법령을 늘여야 할 것이다.

232) 고문현·김남희, 전제서, 71면.

제 4 절 법제시각화 개선방안

법령정보제공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사회·문화·언어가 다른 법제교류 대상국에 좀 더 쉽고 활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상국의 언어를 사용하든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하든 시각적인 디자인의 도움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수범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종이법령집의 시각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요즘 선진각국에서도 법령정보의 제공서비스가 차츰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으나 현재에도 인쇄매체로 관보, 법령집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주요한 기본적인 법령정보는 반드시 활자로 인쇄하여 책자로 제공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²³³⁾

법령정보의 이용을 인터넷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통신장애,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각종 위협성에 노출되어 전자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끊임없는 제공의 보장을 위해서도 인쇄매체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이 기본적으로 요구 된다.²³⁴⁾

현행 법령집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수범자들은 법령정보를 종이법령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의 부족 탓인지, 발행부수가 적어서인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33) 법령정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9.30).

234) 고문현·김남희, 전계서, 71면.

전술하였듯이 늘어나는 법령을 제한된 지면에 효과적으로 기록하기에는 상당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종이법령집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수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종이법령집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지의 디자인에서부터 본문의 편집 그리고 제본에 이르기까지 법령집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1) 종이법령집의 표지디자인

책의 표지는 본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표지는 앞표지, 책등, 뒷표지로 이루어진다.²³⁵⁾

법령집을 책의 형태로 만드는데 있어서 앞표지와 책등의 디자인은 법령집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본문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므로 매우 중요하다.²³⁶⁾

일반적으로 책의 표지에는 저자의 의도, 본문의 내용 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표지만 보고도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디자인 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디자이너의 임무이다. 책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거나, 본문의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것은 표지디자인의 역할이다.

표지를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본문의 내용, 저자의 정보, 책제목 등이다.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표지를 디자인한다.

일반적으로 책의 표지를 디자인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기록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표현적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일러스트레이션

235) 박연주, 시각적 구성요소에 따른 표지디자인의 선호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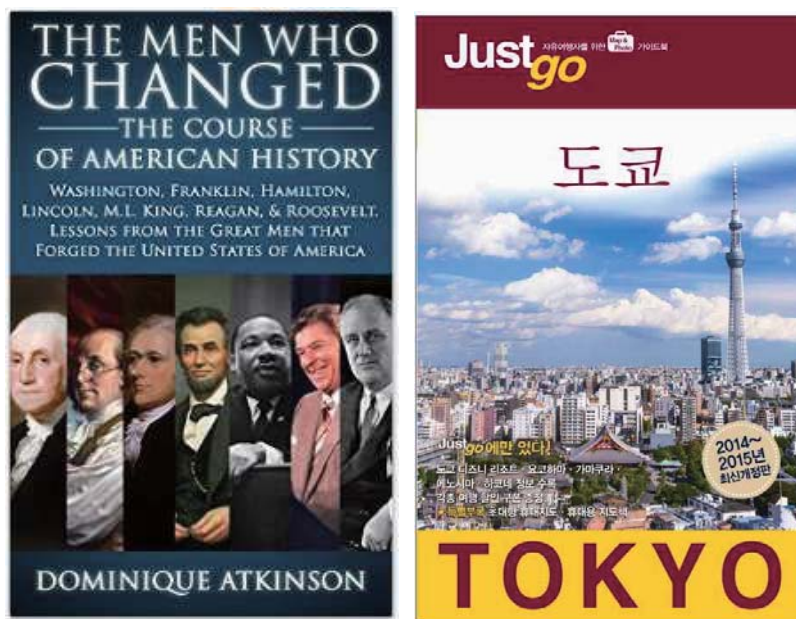
236) 박연주, 전개논문, 14면.

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사진을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진을 표지 디자인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진은 사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책의 성격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방법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관광이나 요리 등 사실적인 사진을 사용해야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도서의 표지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5-28] 사진을 이용한 표지디자인²³⁷⁾



2) 표현적 방법을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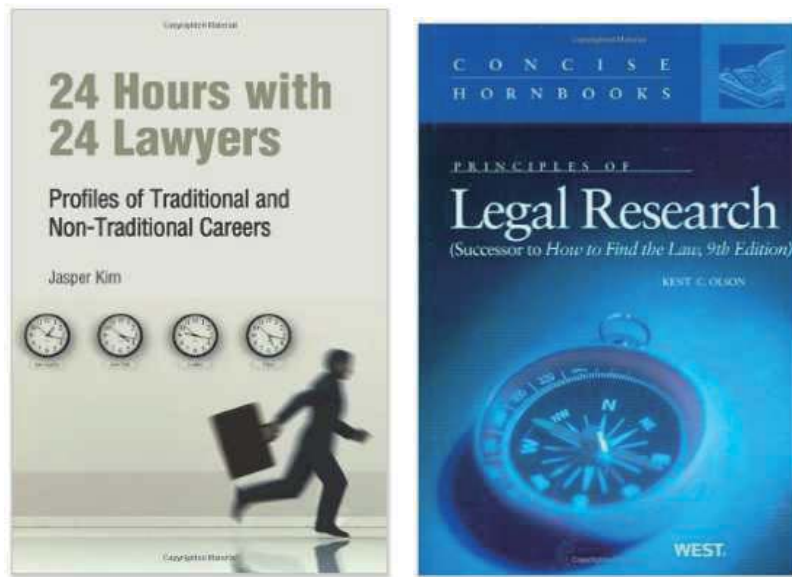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디자인 하는 방식이다. 표지만 보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직감적

237) <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5.9.30).

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문 내용을 한 페이지에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디자인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진, 그림, 문양, 일러스트레이션, 글자 등을 사용하여 표현적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5-29] 표현적 방법을 사용한 표지디자인²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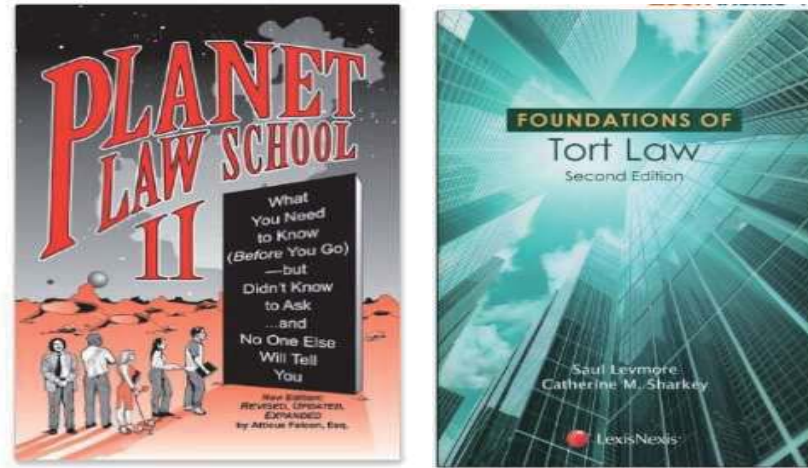
3)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

시각적 도구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표지 디자인이다. 그림,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상력을 동원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디자인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시각 언어로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³⁹⁾

238) <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5.9.30).

239) 박현주, 시사주간지 표지 디자인에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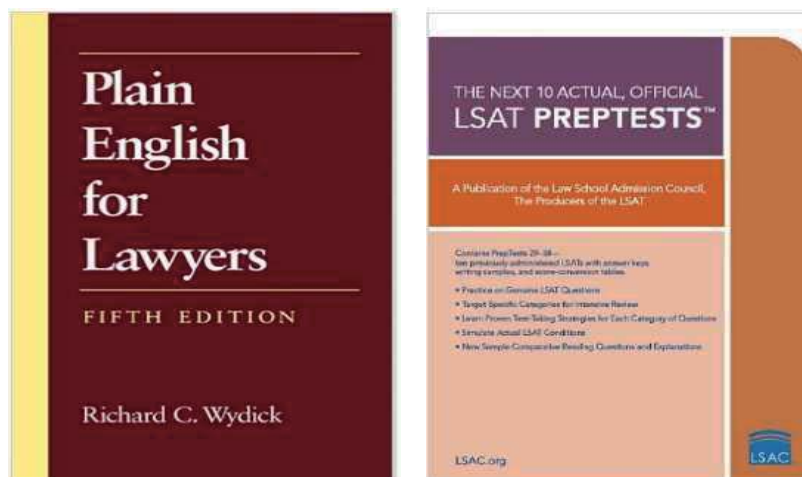
[그림 5-30]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표지디자인²⁴⁰⁾



4) 패턴을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

간단한 패턴을 이용한 표지디자인이다. 본문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규칙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 등 연속적인 간행물의 디자인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5-31] 패턴을 이용한 표지디자인²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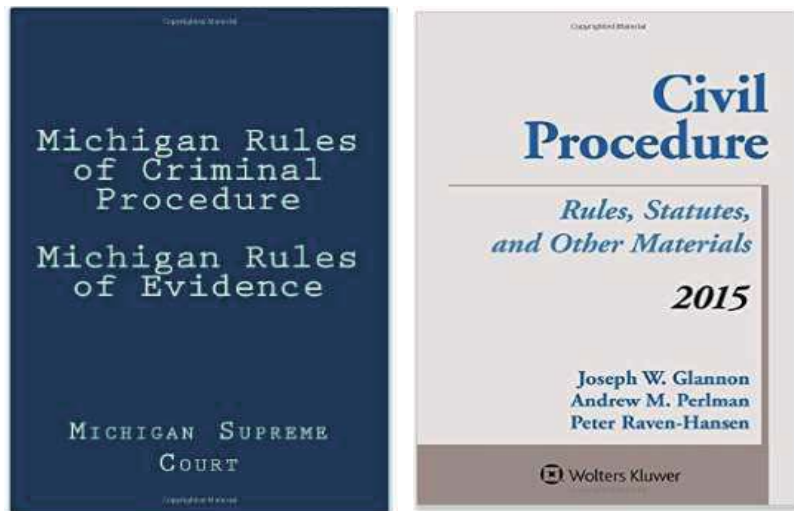
240) <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5.9.30).

241) <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5.9.30).

5)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활자라는 의미의 타입(Type)과 기술이라는 의미의 그래피(Graphy)의 합성어이다.²⁴²⁾ 디자인 분야가 발전하면서 점차 활자의 의미 전달 기능과 시각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함께 활용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²⁴³⁾

[그림 5-32]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표지디자인²⁴⁴⁾



6) 종이법령집의 표지디자인 개선방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책의 표지디자인은 본문을 열어 보지 않고도 한 눈에 그 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전달 요소이다.

표지는 제한된 공간에 시각적 구성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시선을 집중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디자이너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균형 있고 조화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²⁴⁵⁾

24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5.9.30).

243) 박연주, 전계논문, 18-21면.

244) <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5.9.30).

종이법령집의 시각화를 위해서 표지를 디자인함에 있어 몇 가지 고려되어야 사항이 있다.

(가) 시각적 이미지 개발

종이법령집의 표지디자인을 시각화함에 있어 법령집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반복 노출되는 법령집의 통일된 시각적 이미지 개발이 필요하다. 도안, 그림, 이니셜 등 법령집의 제목과 발행처 등의 정보를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33]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표지디자인²⁴⁶⁾



(나) 서체

법령집 제목의 서체는 법령집의 객관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시각적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호화로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개성이 약하고 안정적이며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고딕체 계열의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45) 박연주, 전계논문, 14-16면.

246) 한국개발원(KDI) 홈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표지는 영문 이니셜 'K'를 사용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 색채

화려한 색채는 흥미롭게 보이긴 해도 산만해서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할 수 있고 집중력과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유채색의 화려함 보다는 무채색이 법령집의 신뢰성을 배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종이법령집의 표지 형태(제본)

일반적으로 책은 본문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 두꺼운 종으로 본문을 싸서 제본을 하게 되는데 제본 방법에 따라 양장제본, 반양장제본, 링제본, 바인더제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⁴⁷⁾

1) 양장 제본

실로 묶은 속장을 재단한 후 딱딱한 표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제본하는 방식이다. 튼튼하고 장중함이 특징이다. 사전류, 장서류 등의 고급 제본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5-34] 양장제본²⁴⁸⁾



24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B3%B8>] (검색일; 2015.9.30).

248)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5.9.30).

2) 반양장 제본

속장과 표지를 따로 재단한 후 붙이는 양장 제본과 달리 처음부터 본문 속장과 표지를 붙여서 작업하고 마지막에 재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장에 비해 견고함이나 장중함이 떨어지지만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다. 교양서적이거나 학교 교재 등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5-35] 반양장 제본²⁴⁹⁾



3) 링제본

링제본은 한쪽을 풀로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본문과 표지를 함께 간추려서 한쪽에 구멍을 내서 스프링을 사용하여 끼워 넣는 제본형태이다. 표지뿐만 아니라 본문이 뚜꺼운 종이로 하더라도 앞 뒤로 펼치기가 쉬운 특징이 있다. 어린이 그림책, 요리책, 노트, 카렌다 등에 주로 사용한다.

249)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5.9.30).

[그림 5-36] 링제본²⁵⁰⁾



4) 바인더 제본

바인더를 이용하여 본문 속장을 자유로이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이다. 본문을 연속해서 추가해야 하거나 수시로 본문 내용을 갈아 끼우는 경우 사용된다.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는 세법 법령집 등에 널리 사용된다.

[그림 5-37] 바인더 제본형태²⁵¹⁾



250)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5.9.30).

251)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5.9.30).

5) 종이법령집의 제본형태

대한민국은 법령정보를 반드시 활자로 인쇄하여 책자로 제공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종이법령집은 바인더 형식의 제본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령집의 제본 형태는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을 갈아 끼울 수 있고 새로운 법령을 새로 추가하기도 용이한 바인더형태의 제본이 바람직하다.

(3) 종이법령집의 본문 편집

편집이란 주어진 지면에 문자 및 그림 등의 원고를 편집자가 정리하여, 만들고자 하는 편집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지적 창조 작업을 말한다.²⁵²⁾ 편집자는 저자의 집필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독자의 수준에 맞게 시각화한다. 원시원고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편집의 기능이다.

편집자가 원고의 성격에 따라 한정된 지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본문을 레이아웃 하는 방법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단짜기, 2단짜기, 3단짜기, 4단짜기 등이 있다. 원고의 성격에 따라 판면을 디자인하는데 차이가 있다.

1) 단행본 편집방식

단행본 편집방식은 출판물 중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편집 방식이며 한편의 책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단행본이라 부르고 있다.²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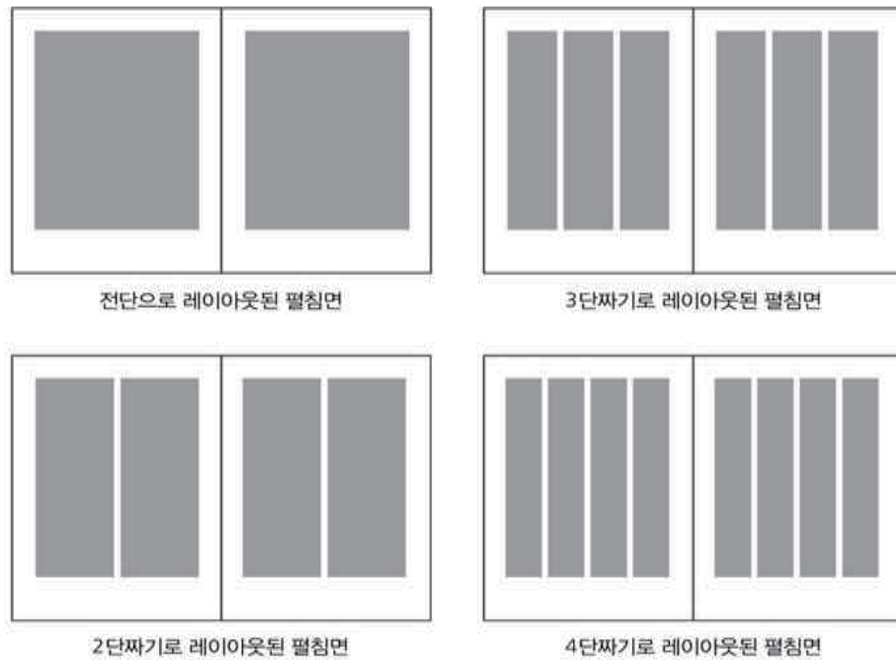
본문의 구성은 대체로 편, 장, 절 형식으로 나누며 판면 구성은 전단짜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참조).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검색을 위한 책일 경우 2단짜기 이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서체는 명조체

252) 오경호·박찬수, 『출판편집강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7면.

253) 오경호·박찬수, 전계서, 32면.

계열로 쓰고 글자의 크기는 원고의 내용, 성격, 독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림 5-38] 다양한 편집방법²⁵⁴⁾



2) 문고본 · 전집류의 편집방식

문고본과 전집류는 한 영역만을 소재로 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의 주제들을 시리즈로 출간하기도 한다. 같은 스타일의 편집방식을 이용하여 시리즈가 한 종이라는 소속감이 들도록 판형과 체재가 이루어진다.²⁵⁵⁾

문고본의 레이아웃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다를 것이 없다. 판형이 작을 뿐이다. 본문의 구성은 단행본과 같이 편, 장, 절 형식으로 나누며 판면구성은 전단짜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작은 판형이기 때문에 여백이 조금 작게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체의 선택과 크기는 단행본과 다를 바 없으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문고본은 계속형 시리즈

254) 오경호 · 박찬수, 전계서, 63면.

255) 오경호 · 박찬수, 전계서, 32면.

이기 때문에 문고본의 앞뒤 권이 동일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3) 총서의 편집방식

총서의 편집은 하나의 주제에 맞추어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연구 내용을 모아 다듬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동질성을 특색으로 하는 전집과 구별된다.²⁵⁶⁾

총서의 레이아웃은 전집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에 맞추어 여러 전문가의 저술을 묶어 편집 방침에 따라 주어진 판형과 체재로 판면을 구성 배치하는 작업이다. 본문의 구성은 편, 장, 절, 형식으로 나누며 판면 구성은 전단짜기, 또는 2단짜기로 해야 할 때도 있다. 문고본과 같이 총서도 시리즈출판물이기 때문에 앞뒤 권의 체재가 같아야 한다.

4) 사전류의 편집방식

사전의 레이아웃은 낱말을 가,나,다 순 등으로 배열하여 그 낱말의 의미, 동의어, 반대말 등을 풀어서 설명하는 형식의 출판물이다.²⁵⁷⁾ 본문 구성은 가나다, ABC등 순으로 2단짜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형이 큰 사전은 3,4단짜기로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표제 낱말은 고딕체로 지정해 눈에 띄게, 풀이에는 명조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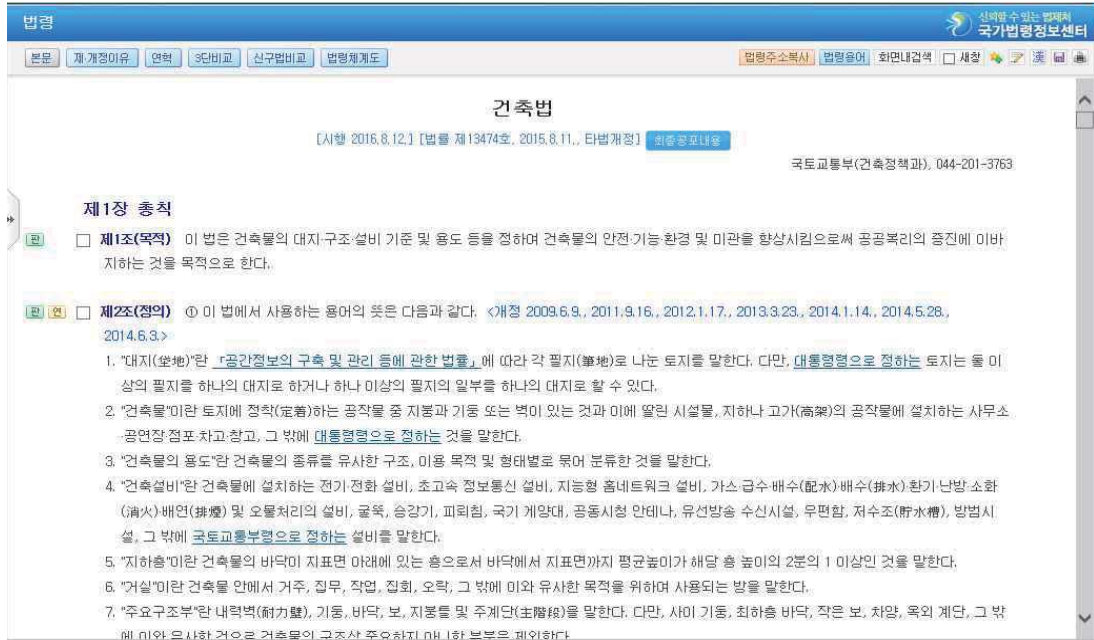
5) 종이법령집의 본문 편집의 시각화 방안

종이법령집에 들어갈 원시 원고는 법령의 조문들이다. 낱말을 풀이하여 나열하는 사전과도 흡사하다. 방대한 양의 조문을 제한된 지면에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편집이 필요하다. 개별 법령의 편집은 전단짜기 혹은 2단짜기로, 신·구조문의 비교를 위해서는 2단짜기로, 법률과 여러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3,4단짜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56) 오경호·박찬수, 전게서, 33면.

257) 오경호·박찬수, 전게서, 34면.

[그림 5-39] 전단짜기 편집258)



[그림 5-40] 2단짜기 편집259)



25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25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그림 5-41] 4단짜기 편집260)

3단비교	법령단위비교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건축법 시행규칙) 3단비교	확인
건축법 <small>기준</small>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small>기준</small>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8.3.,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small>기준</small>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2015.7.7., 일부개정]	위임행정규칙 <small>담기</small>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1. 「대지(空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 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중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제1조의2(설계도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8. 2008.3.14. 2008.12.11. 2013.3.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문조선설 199 6.1.18]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말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2. 전자매체를 이용한 법제시각화

아날로그 시대에 정보의 전달을 맡아왔던 인쇄매체로 만들어진 종이책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재탄생하고 있다. 종이책과 신문, 잡지 등 단순히 인쇄매체에 의존하던 정보의 전달수단이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점차 신속하고 다양화되고 있다.²⁶¹⁾

미국을 필두로 디지털 정보기술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전자책(eBook)이 종이책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단말기의 인기 덕분에 전자책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²⁶²⁾

26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261) 김민정, 전자책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 기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면.

262) 전자신문, “美 전자책 판매, 종이책 첫 추월”, 2011.04.16. 자 보도자료 [http://www.etnews.com/201104160002] (검색일; 2015.9.30).

종이책과 비교해서 전자책은 휴대가 쉽고, 신속하고, 가볍고, 다기능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다. 기존에 인쇄와 제본에 들었던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가벼운 휴대용 단말기에 수천 권의 책을 저장하여 휴대하기도 쉽다.

찾고자 하는 부분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²⁶³⁾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전자책의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은 형식의 포맷을 사용하여 만든 전자책 파일이라도 이를 서비스 하는 업체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다르고 단말기의 종류도 달라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자책의 상호 호환의 어려움의 단점을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앱북(app-book)’이다.²⁶⁴⁾ 앱북은 독립된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한 전자책이다. 전용리더로 읽어야 하는 파일형식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자책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인 셈이다.

앱북의 가장 큰 장점은 리더에 따라 데이터의 형식을 다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앱북의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²⁶⁵⁾

263) 이주영, “자책 시장현황 및 전망과 도서출판 시장의 가치사슬 구조변화” 『정보통신 방송정책』 제26권 제8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20면.

26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B1%EB%B6%81>] (검색일; 2015.9.30).

265) 이주영, 상계논문, 19면

[그림 5-42] 우리나라 전자출판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²⁶⁶⁾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6월 13일 연평균 성장률
전자책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2.30%
전자사전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	11.30%
모바일북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38.40%
전문지식/ 학술논문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12.10%
오디오북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2.60%
기타 디지털 출판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8.60%
합계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20.60%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참고 : 한국전자출판협회, 교보문고, 인터파크 추정 통계 합산이며, e잉크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단말기 시장 규모는 포함하지 않음 (단, 전자사전은 단말기 + 콘텐츠 포함)

(1) 전자책(eBook)을 이용한 법제시각화

1) 전자책이란

전자책(eBook)은 읽는 장치인 전용단말기,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형 컴퓨터에서 구독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진 서적을 말하며, 휴대성·편의성 등이 특징이다.²⁶⁷⁾

전자책은 전자책 파일을 전용 리더를 통해서 구독하게 되는데 전자책 전용리더는 물론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단행본, 인터랙티브 전자책, 전자사전, 디지털 저널 및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출판물, 디지털교과서, 오디오북 등 다양한 전자책들의 유형이 있다.

266) 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kepa.or.kr>] (검색일; 2015.9.30).

267)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E-book>] (검색일; 2015.9.30).

[그림 5-43]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²⁶⁸⁾



2) 전자책의 유형

다양한 유형의 전자책을 개발하려면 일종의 개발언어 같은 EPUB, PDF, HTML, 플래쉬 등과 같은 포맷과 제작툴을 필요로 한다.

(가) EPUB 포맷

‘ePub’은 전자책 형식의 일종으로 2007년 9월에 국제디지털출판포럼에서 전자책의 기술표준이 되었다.²⁶⁹⁾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포맷을 이용하여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자출판 표준화포럼(ODPF)를 통해 ePub을 전자책 포맷의 표준으로 채택하여 단행본, 잡지, 디지털 교과서 등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²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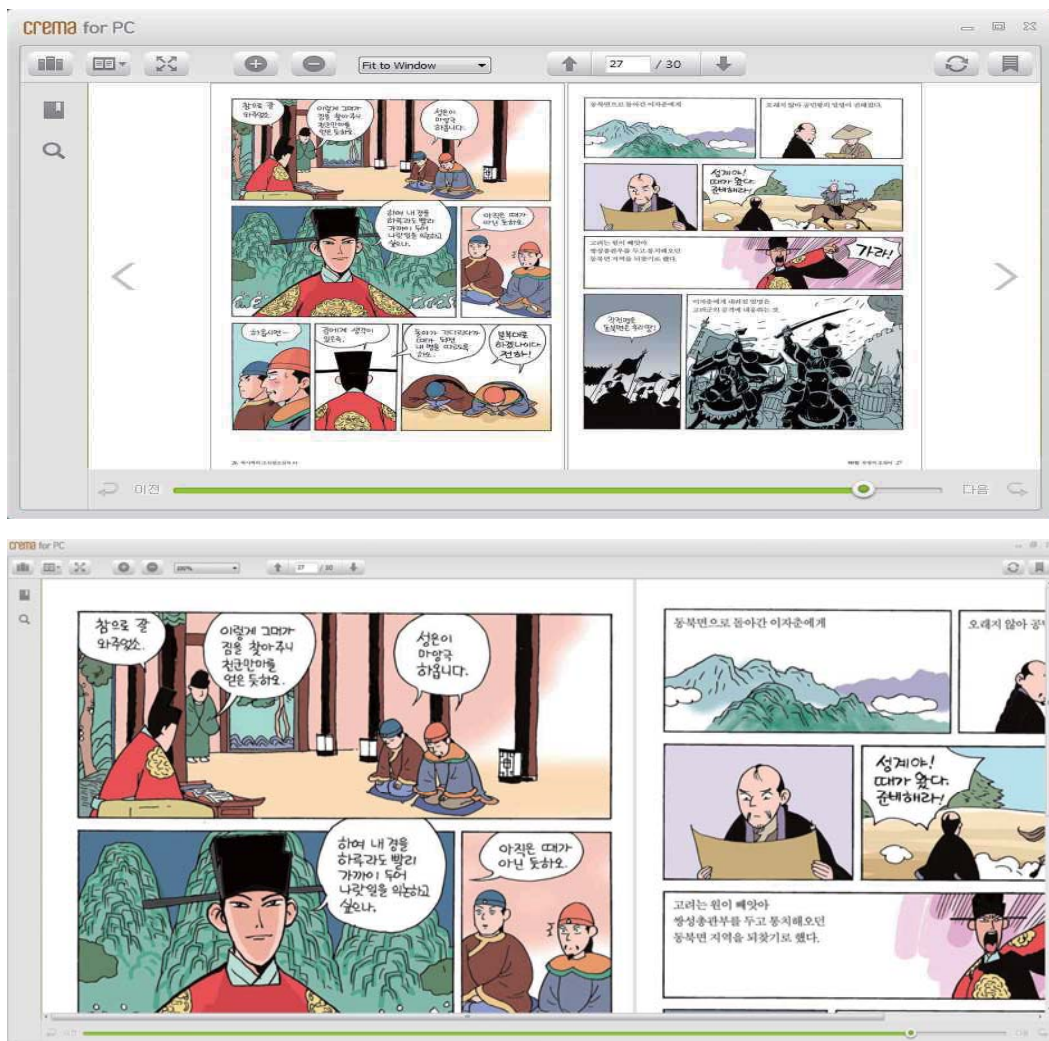
268)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5.9.30).

269) 위키디피아 [<https://en.wikipedia.org/wiki/EPUB>] (검색일; 2015.9.30).

270) 문현숙, “EPUB3.0 고정형 레이아웃 전자책 구현”,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집』제16권 제1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5, 107면.

ePub 포맷의 특징은 PDF 포맷과 달리 판면이 단말기 화면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같이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도 단말기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축소되어 한 화면에 담기게 된다.²⁷¹⁾ 따라서 ePub으로 제작된 판면은 단말기의 종류별로 각각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림 5-44] ePub과 pdf 포맷의 화면비교²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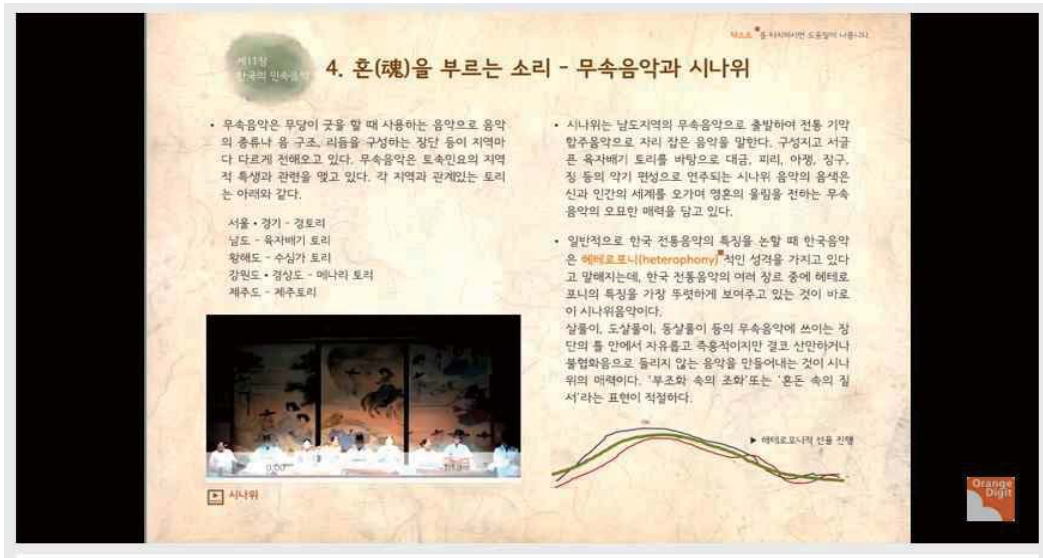


271) itdonga 홈페이지 [http://it.donga.com/21134/] (검색일; 2015.9.30).

272)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 개국』, 27면. - 휴머니스트 2015.08.25. 刊
 자동공간조정 기능이 특징인 ePub으로 제작했을 때와(위그림) 자동공간조정기능이 없는 형식으로 제작했을 때(아래그림) 화면에 나타나는 판면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ePub 프로그램은 인터랙티브한 편집을 가능하게 한다. 동영상 상을 삽입할 수도 있고 음악을 삽입할 수도 있다. 종이책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유자재로 구현해 낼 수 있다.

[그림 5-45] 영상과 음악을 삽입한 전자책²⁷³⁾



(나) PDF 포맷

PDF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줄임말이다. 컴퓨터의 환경에 상관 없이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문서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포맷이다.²⁷⁴⁾

이 포맷은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문서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보안성도 높으며 판면이 ePub 포맷과 같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고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의 공문서나 인쇄업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²⁷⁵⁾

273) 유튜브(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음악의 이해와 감상’)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watch?v=5zTrNUNlaSM] (검색일: 2015.08.15.); 화면상의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연주하는 소리와 동영상상이 구현된다.

274)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Portable_Document_Format] (검색일; 2015.9.30).

275) itdonga 홈페이지 - “디지털문서의 표준을 위한 제시” [http://it.donga.com/7846/] (검색일; 2015.9.30).

pdf파일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pdf파일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이 가능하지만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해서 작성된 pdf파일은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화면이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스크롤 기능을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²⁷⁶⁾

[그림 5-46] pdf 형식의 전자책²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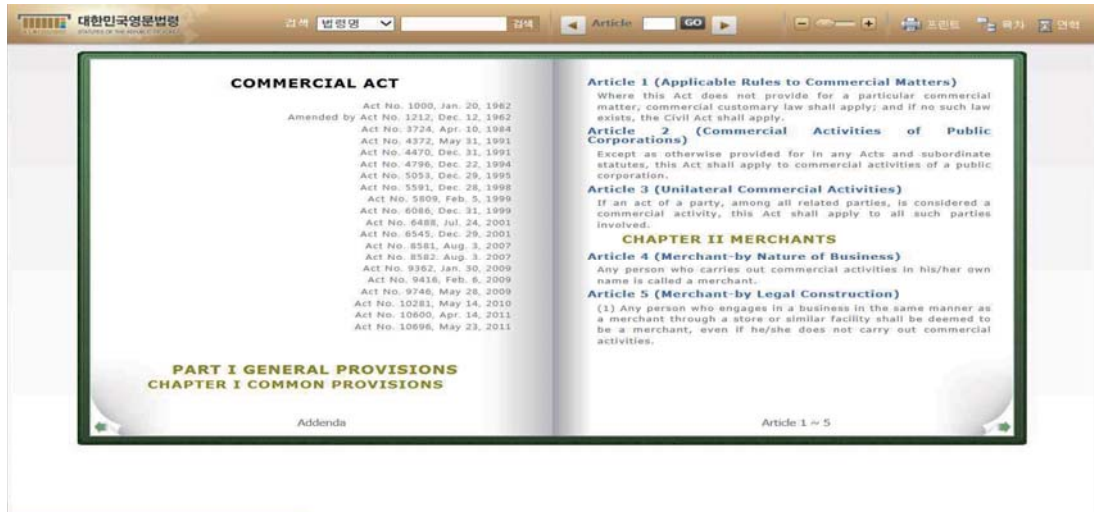
(다) 현행 전자책 서비스 현황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 법제연구원이 유일하다.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는 없다.

276) itdongA 홈페이지-“디지털문서의 표준을 위한 제시” [<http://it.donga.com/7846/>] (검색일; 2015.9.30).

277)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아카디피아 [<http://www.acadepia.co.kr/ebook/>] (검색일; 2015.9.30).

[그림 5-47] 한국법제연구원 이북서비스278)



(2) 앱을 이용한 법제시각화

1) 앱북이란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책을 보통 앱북이라고 칭한다.²⁷⁹⁾

우리나라와 같이 유·무선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은 환경에서 앱북은 기존 종이매체와 전자책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WiFi망이나 LTE 등의 통신망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앱북은 인쇄매체인 종이책, 디지털 매체인 전자책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⁸⁰⁾

또한 콘텐츠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미지, 소리, 동영상까지 가능했던 기존의 전자책에 더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문서의 편집까지 가능하다.

278)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elaw.klri.re.kr] (검색일; 2015.9.30).

279) 이종욱·김용문,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전자거래학회, 2013, 46면.

280) 이종욱·김용문, 상계논문, 47면.

[그림 5-48] 다양한 앱북들²⁸¹⁾

2) 앱북의 형식

앱북은 각각의 콘텐츠마다 프로그램이 다른 앱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ePUB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작툴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 전자책이 형식에 맞는 별도의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반면 앱북은 일반pc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구독이 가능하다.

기존의 전자책이 이미 제작되어진 일방적이고 고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면 앱북은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이용한 양방향적이고 가변적 콘텐츠를 제공한다.²⁸²⁾

전자책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앱북은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유통된다.²⁸³⁾

281) <http://ipodart.net/1545> (검색일; 2015.9.30).

28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15.9.30).

28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15.9.30).

앱북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콘텐츠마다 각각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또한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 운영체제별로 별도의 앱북을 만들어야 하며 꾸준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3) 현행 앱북 서비스 현황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자관보를 앱북으로 제공하고 있고, 법제처, 고용노동부에서 앱북을 제작하여 모바일로 서비스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검색, 판례검색, 영문법령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49] 행정자치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관보²⁸⁴⁾



284)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gwanbo.korea.go.kr] (검색일; 2015.9.30).

[그림 5-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²⁸⁵⁾



[그림 5-51] 고용노동부 모바일 법령제공화면²⁸⁶⁾



285)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28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검색일; 2015.9.30).

(3) 전자매체를 통한 법제시각화 개선방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인쇄매체에 의한 법령집이나 전자책, 애플에 의한 법령정보 서비스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법령을 서비스 하고 있다.

각 기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법령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답게 현재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는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와 형식이 다르고 특정한 법률문제에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검색기능의 강화

법령정보를 원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법령정보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발이 필요하다.

검색기능을 추가하거나 강화하여 최근의 법령 동향자료부터 판례 및 연구자료 등의 내용검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색은 통합검색과 법령, 판례, 연구자료 등의 조건검색으로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 전문 용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기능도 추가하여야 한다.

주제어, 키워드 만을 입력하더라도 빠르고 정확한 필터링 및 복합연산 기능을 통해 찾고자 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필요로 한다.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디자인의 홈페이지 구축과 최신 콘텐츠 확충을 통하여 법령정보 제공 홈페이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법제정보 이용자에게 정보검색의 편리성 및 다양성을 제공하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영문법령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주요 외국어법령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기관에서 중문법령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법령에 한정하고 있다. 영어권이외의 언어 사용자를 위한 주요 외국어법령도 같이 제공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각 기관은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령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터넷망은 국가 유고시에 서비스의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해킹에 의한 정보 왜곡이나 정보 유실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종이법령집의 발행을 강제하고 있지만 종이법령집의 발행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자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자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기관시설인 인터넷망을 통해 유통된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전자책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검색과 달리 책의 형태로 소유한다. 전자책을 담은 디바이스가 필요하지만 한번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인터넷망의 도움이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다.

몇 만 건의 법령도 디바이스에 저장하여 간단히 휴대할 수 있고, 종이법령집을 열람하기 위해 비치된 곳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법령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한 곳 뿐이다. 그나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도 홈페이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령정보를 열람하고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전자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애플북의 활성화

애플북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책이다. 전자책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책이다.

전자책이 휴대성을 강조한 텍스트 위주의 일방향·고정형 콘텐츠라면 애플북은 다양함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가변형 멀티미디어 콘텐츠이다.

애플북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생활화를 전제로 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보급률이 높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아주 적합한 법령집 제공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처가 유일하게 국가법령센터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법령을 애플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령의 검색, 판례, 헌법재판소결정례, 행정심판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대부분의 국가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대부분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의 단순한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영문법령제공 외에는 다른 외국어법령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단순한 법령정보 제공의 수준을 벗어나 연관법령, 하위법령 및 관련판례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

제 1 절 보고서

1. 요약문

보고서 등의 요약문의 경우에는 우선 내용이 간결하게 적시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의 경우에 보고서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요약문을 통한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고서 등의 요약문에 대한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ODA 관련 보고서의 요약문을 보면 일반학술논문의 영문 및 국문초록 형식 또는 영문 및 국문 초록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서 전체를 국문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3가지의 경우에 대상국 등에 우리의 연구결과 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보고서의 요약문은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요약 보다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요약문을 I. 배경 및 목적, II. 주요 사항(1. 개념, 2. 대상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3. 한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4. 상호 비교 및 시사점), III. 교류협력 추진체계, IV.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요약문의 페이지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약문은 2가자의 형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법실무가들을 위하여 5-10페이지 정도로 일정정도 자세히 기술하는 요약문과 1페이지 정도로 핵심적인 사항과 법제교류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입법정책결정자용 요약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문장의 형태도 서술식 보다는 개조식 또는 도식화를 할 필요가 있고, 요약문의 언어에 있어서도 영어와 대상국 언어 2가지 형태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본 문

(1) 구 성

본문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고서 등에 기술되는 연구목적과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앞에서 적시한 요약문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input type="checkbox"/> 대상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I. 주요 사항 1. 개념 2. 대상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3. 한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4. 상호 비교 및 시사점 II. 교류협력 추진체계 III.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대상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I. 개념 II. 발전사 III. 현행 제도와 법제 IV. 사회적 경제적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고서는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대상국 등에서는 보고서 전체를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고서 앞부분에 결론을 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문을 작성한 후 보고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방식을 전개하는 것이 대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²⁸⁷⁾ 또한 본문의 문장과 관련하여 만연체 보다는 간결체로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고, 문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⁸⁸⁾

보고서 본문 등의 박스 등으로 처리하여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그대로 보고서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고서 본문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리하여 기술하다 보면 이에 대한 의문점 또는 의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게 되어 대상국의 정책결정 등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고서 본문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별도의 칸 등으로 하여 그대로 적시 하든지 별도의 페이지를 할애하여 적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87) 다이아몬드 형태는 글을 쓰기도 편하지만 읽기도 편하다. 독자는 서론만 읽어도 글의 전체 논리 구조를 알 수 있다. 내용이 흥미가 있으면 본론에서 이유를 자세하게 읽으면 된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론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빠르다 [유세환, 『결론부터 써라』, 미래의 창, 2015, 25면].

288) 유세환, 상계서, 27-28면. 이 책에서는 다이아몬드 글쓰기의 일곱 가지 원칙으로 ①하나의 중심 개념을 잡아라, ②문단까지도 결론부터 써라, ③결론을 차별화하라, ④원칙에 따라 구조화하라, ⑤중요한 순서대로 써라, ⑥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써라, ⑦문장을 짧게 써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유세환, 상계서, 27-28면].

[참고] 전문가 의견의 보고서 적시 사항²⁸⁹⁾

[3] Interview with Chang, Kyosik (Law professor, Konkuk University)

1. Current Status of the SMEs Legislations

- a. Since 1980 8th amendment of constitutions established the protection for SME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MEs should be included among the basic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 b. Article 123(3)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o pursue this goal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was very active, which led to more than 20 legislations for the SMEs including Framework Act on the SMEs(1966)
- c. Legislations for the SMEs include the following: Framework Act on the SMEs(1966), SME Cooperatives Act (1961), SME Promotion Act (2009),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2009),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of SME (2001), Special Act on Support for Human Resources of SME(2003),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 (2005), Support for SME Establishment Act (2007), Special

(2) 체 계

본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보고서 인식에 있어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외국의 보고서 및 서적의 경우에 크게 2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대체목-소제목을 통한 보고서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289) Kwang Dong Park etc., 『2012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egal System』, kr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13, p.80.

[참고] 대제목-소제목을 통한 보고서 체계 구축²⁹⁰⁾

PART I.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This section analyses long-term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rporate governance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se changes on Japan'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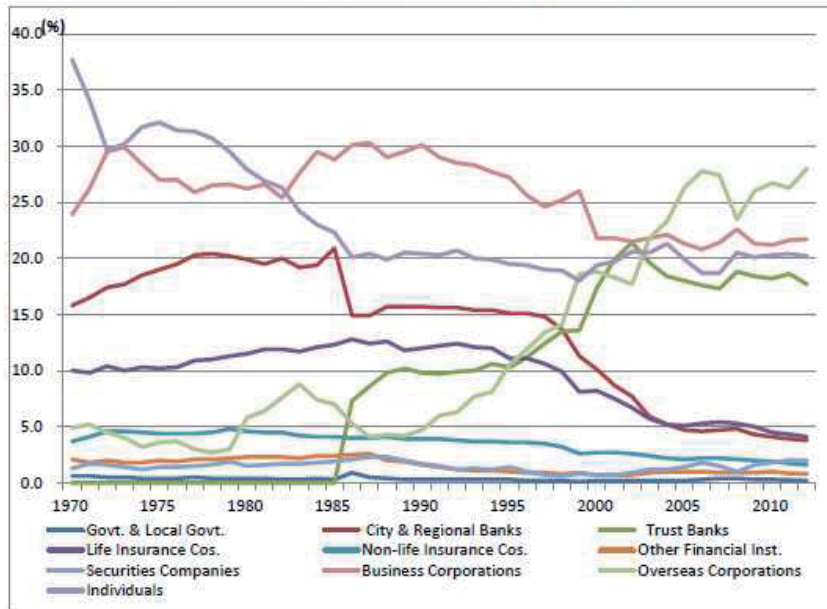
1.1 Changes in types of shareholder within the Japanese market

1.1.1 The ris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fter World War II, the main type of shareholder in Japan's market changed from individual investors to institutional investors, with a steep rise in the percentage of foreign investors.

Figure 1 show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shareholdings in Japan's securities markets since 1970. Trust banks, life insurance companies,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cognised as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In addition, many overseas corporations are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Figure 1. Shareholding ratio by shareholder type (Japanese markets)



Source: Tokyo Stock Exchange

Until 1985, individuals, business corporations, major commercial banks (aka city banks), and regional banks were the main market participants. However, since 1985 the proportion of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has risen, and since 2003 more than 40% of the stock market has been owned by such investors.

290) Ryoko Ueda, "How is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changing?,"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No. 17, 2015, p.9.

이러한 대제목-소제목으로 보고서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제목을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예상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국 등에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존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아야 핵심을 알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둘째, 본문 내용 옆에 대제목 또는 소제목을 적시하는 방안이 있다.

본문 내용 옆에 제목을 표기하는 방식은 문장 내용이 길어지고 소제목을 달기가 애매한 상황에 독자가 지금 어느 주제에 대해서 읽고 있는지를 앞으로 가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목을 본문 내용 옆에 재차 적시하거나 소제목을 달면 될 것을 굳이 본문 옆에 제목을 다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본문 내용 옆에 제목을 적시하는 방안

① 제목을 재차 적시하는 방안²⁹¹⁾

<p>古史ギリシアの世界史に対する最大の貢献は、自由かつ平等な市民たちから成る都市国家すなわちポリスを創り、それを基に高度の政治的ならびに文化的達成を遂げたことにあります。その文化諸領域におけるもろもろの成果についてはさて置き、以下申上げようと思ひますのは、ギリシア人がポリスを場として実現したデーモクラティアの制度上の仕組と、それを支える社会的な基盤に關してであります。</p> <p>古代ギリシア史は前後二千年の長きに亘りますが、そのなかで今申したような意味でのポリスが地中海周辺地域で歴史の主役として活動したのは、紀元前八世紀から前四世紀までの約四百年間に限られます。これらポリスは防壁上の拠点としての丘アクロポリスと公共の広場アゴアを核とし、城壁で囲まれた中心の町と、周囲の田園部と</p>	<p style="text-align: center;">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習 題</p> <p style="text-align: center;">文明装置としての国家</p> <hr/>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体国家としての polis</p> <hr/> <p style="text-align: right;">伊藤貞夫</p> </div>
---	---

291) 伊藤 貞夫, “共同体国家としてのpolis”, 文明装置としての国家, 比較法制研究所, 1996, 9面.

② 소제목을 개괄적 소제목을 적시하는 방안²⁹²⁾

1. Einleitung

Lernziele

- Am Ende des Einleitungskapitels sollten Sie
- den Gegenstand und das Anliegen des Buches kennen;
 - einen Eindruck über die Vielfalt des Vergleichens in der Verwaltungswissenschaft gewonnen haben;
 - sich einen ersten Überblick über die Entwicklung der vergleichenden Verwaltungswissenschaft verschafft haben;
 - die konzeptionellen und methodischen Schwierigkeiten von Vergleichungen reflektieren können;
 - den Aufbau und die Gliederung des Buches verstehen.

„Das Vergleichen ist das Ende des Glücks und der Anfang der Unzufriedenheit“
(Kierkegaard)

Dieses Buch soll in das Studium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einführen und einen Überblick über Verwaltungssysteme und Verwaltungsreformen in Europa geben. Es verfolgt drei Ziele: Zum einen soll der Leser/die Leserin mit dem Gegenstand und den Analysekonzepten der vergleichenden Verwaltungswissenschaft vertraut gemacht werden. Zum anderen stellt das Buch grundlegende Merkmale öffentlicher Verwaltung in sechs Ländern (Deutschland, Frankreich, Italien, Vereinigtes Königreich, Schweden und Ungarn) vor, die wesentliche Verwaltungsprofile in Europa repräsentieren. Drittens werden aktuelle Verwaltungsreformen verglichen und herausgearbeitet, inwieweit sich die unterschiedlichen Verwaltungssysteme inzwischen angenähert haben oder ihre jeweiligen nationalen Prägungen fortbestehen.

Ziele des Buches

Vergleichende Arbeiten in der Verwaltungswissenschaft befassen sich mit sehr unterschiedlichen Aspekt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in Teil der Forschung ist auf Vergleiche von Bürokratie-, Ministerial- und Beamteneliten gerichtet. Andere Arbeiten konzentrieren sich auf Organisationsstrukturen, formale und informale Regeln in der Verwaltung und wieder andere vergleichen administrative Entscheidungsprozesse, ihre Ergebnisse und Wirkungen. Der Vergleich von Verwaltung kann sich entweder auf die nationale/zentralstaatliche oder auf die subnationale/lokale Verwaltungsebene richten und so zu unterschiedlichen Aussagen kommen. Vergleichungen können natürlich – wie Vergleiche generell – über die Zeit (diachron) oder über Systemgrenzen (synchron) erfolgen.

Die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CPA) im engeren Sinne bezieht sich auf die letztgenannte Vergleichsdimension, d. h. Vergleiche zwischen mindestens zwei institutionellen Einheiten (Fitzpatrick et al. 2011: 823). Teilweise wird der Gegenstandsbereich der CPA allerdings noch enger gefasst wird, nämlich als Vergleichen zwischen Nationen (Pollitt 2011: 115). Dabei können Vergleichungen auf bestimmte Aufgaben- und Funktionsbereiche der Verwaltung (z. B. Ordnungsverwaltung, Leistungsverwaltung) bezogen sein, also eine

Vielfalt des Vergleichens

(Ziele des Buches: 책의 목적, Vielfalt des Vergleichens: 비교의 다양성)

292) Sabine Kuhlmann/Hellmut Wollmann, 『Verwaltung und Verwaltungsreformen in Europa』, Springer VS, 2013, p.11.

③ 본문 내용 옆에 중요사항을 적시하는 방안²⁹³⁾

§ 25 *Dritter Teil: I. Tradition und Bedeutung der Grundrechte*

A. Einleitung

- | | |
|--|--|
| <p>1
Absage an Totalitarismus als Kennzeichen der Entstehungsgeschichte des GG</p> | <p>In welcher Verfassungstradition die Grundrechte des Grundgesetzes stehen, erschließt sich zunächst aus ihrer Entstehungsgeschichte oder Genese. Dafür ist die Arbeit des Parlamentarischen Rats einschließlich der Vorgeschichte in den Blick zu nehmen¹. Die Entstehungsgeschichte ist rechtsmethodisch die Brücke oder der Schlüssel zur Geschichte oder Historie². Sie gibt nämlich Auskunft darüber, welche Traditionen aufgenommen oder verworfen wurden, wo Diskontinuität oder Kontinuität herrschte. Insgesamt ist die Entstehungsgeschichte der Grundrechte des Grundgesetzes dadurch gekennzeichnet, daß ein Bruch mit der Nazidiktatur und jeglichem Totalitarismus gewollt war. Da man bestimmte Eigenheite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für den Niedergang der Weimarer Republik und die Machtübernahme der Nationalsozialisten mitverantwortlich machte, folgte daraus auch eine Ablehnung bestimmter normativer Strukture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Verfassungsgebung als Zukunftsbewältigung aus Vergangenheitserfahrung“³ kennzeichnet treffend die Entstehungsgeschichte des Grundgesetzes.</p> |
| <p>2
Eingliederung in die politisch-kulturelle Überlieferung westlicher Demokratien</p> | <p>Dieser negativen korrespondierte eine positive Seite: Man suchte sich „wieder in den nach 1933 gewaltsam zerrissenen politisch-kulturellen Überlieferungs- und Traditionszusammenhang der ‚westlichen Demokratien‘ einzugliedern“⁴. Dafür griff man insbesondere auf die Grundrechte zurück, die – wurzelnd in der Staatsphilosophie und im Vernunftrecht der Aufklärung⁵ – überwiegend in der Amerikanischen und Französischen Revolution erstmals formuliert, in Deutschland zunächst im süddeutschen Frühkonstitutionalismus und dann in der Paulskirchenverfassung rezipiert sowie schließlich überwiegend auch in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aufgenommen worden waren. Daneben stand man in einigen Bereichen auch in einer spezifisch deutschen Grundrechtstradition. Schließlich führte die deutsche Katastrophe von 1945 zu einer Reihe von grundrechtlichen Neuschöpfungen⁶.</p> |
| <p>3</p> | <p>Dies ist ein Versuch, die „schier unüberschaubare Fülle verfassungsrechtlicher Überlieferungen, Ideen und ihre Wandlungen, der deutschen wie der</p> |

1 S. unten sub B, RN 5ff.
 2 Zur Abgrenzung der historischen von der genetischen Interpretation *Friedrich Müller/Ralph Christensen*, *Juristische Methodik*, Bd. I, ⁸2002, S. 275f.; zur Notwendigkeit der Einbeziehung der Geschichte vgl. *Pieroth*, *Geschichte der Grundrechte*, in: *Jura* 1984, S. 568f.
 3 So der Titel des Beitrags von *Michael Kloepfer*, in: *ders. u. a.*, *Kontinuität und Diskontinuität in de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1994, S. 35ff., zu den Grundrechten als besonders deutlichem Beispiel für die „Kursumsteuerung“ S. 49ff.
 4 *H. Dreier*, *Kontexte des Grundgesetzes*, DVBl. 1999, S. 667 (669).
 5 Vgl. *Grimm*, *Europäisches Naturrecht und Amerikanische Revolution – Die Verwandlung politischer Theorie in politische Techné*, in: *Jus Commune* 3 (1970), S. 120ff. Dagegen bezeichnen *Fikentscher/Fochem*, *Quellen* (Bibl.), S. 13, die Niederlande im Jahr 1572 als Erfinder der „verfassungstextlichen Grundrechte“.
 6 S. unten sub C, RN 25ff.

293) Detlef Merten/Hans-Jürgen Papier/Peter Badura/Christian Calliess/Christoph Engel/Udo Di Di Fabio/Markus Heintzen, & 20 mehr,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and II: Grundrechte in Deutschland - Allgemeine Lehren I,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2006, p.4.

(3) 각주와 미주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관계자들은 보고서를 보면서 즉각적인 자료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미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뒷부분으로 다시 가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주를 활용하여 내용 및 출처를 한 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표 지

보고서 표지와 관련하여서는 2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단행본의 경우에는 표지에 관련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발간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 또는 엠블러(emblem)을 간결하게 이미지화하여 나타나게 한다면 제목 못지 않은 가시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즉, 어떠한 디자인을 보았을 때 이것이 시리즈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한 색상을 이용하여 이러한 색상의 보고서는 어느 기관에서 발간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참고] 표지

○ 단행본²⁹⁴⁾

연구원의 상징(KDI)을 표시하고 있고, ‘재정건정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과 연계되는 저울의 균형의 이미지를 표지에 나타냈고, 「KDI」의 색깔 관련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황색 꺾쇠를 사용함으로써 이 보고서가 KDI에서 출간한 보고서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294) 김성태·박진, 『재정건정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KDI 연구보고서, 2014, 표지 .

제 6 장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



○ 시리즈물²⁹⁵⁾

2013년 하반기부터 아래의 표지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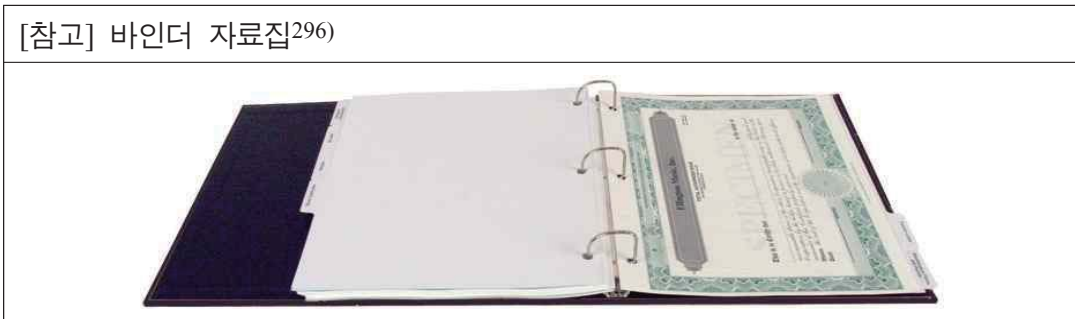
²⁹⁵⁾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2.jsp?pub_no=14162 (검색일; 2015.9.30).

제 2 절 자료집

일반적으로 자료집은 워크숍 등에 대한 자료(발표문, 토론문 등)를 책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문제는 모든 발제문이나 토론문이 완비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책자 형식의 별지에 접거나 또는 꽂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이를 참고하려고 하는 대상국의 정책가들에게 있어서 분실로 인해 정책에 참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책자식 자료집은 표지에 있어서도 이를 보관할 정도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자식 자료집의 경우에 한번 보고 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자료집을 참고로 하여 본 보고서가 나온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자료집의 내용이 본 보고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집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집을 바인더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집을 바인더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추가 자료 또는 누락된 자료를 바로 바인더에 편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에 대한 분실의 위험이 적고, 바인더 자료집의 디자인을 잘 구성하여 둔다면 대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이를 장기간 보관하고 필요시에 바로 볼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바인더 자료집²⁹⁶⁾



296)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aNo=003007002007&sc.prdNo=211539157 (검색일; 2015.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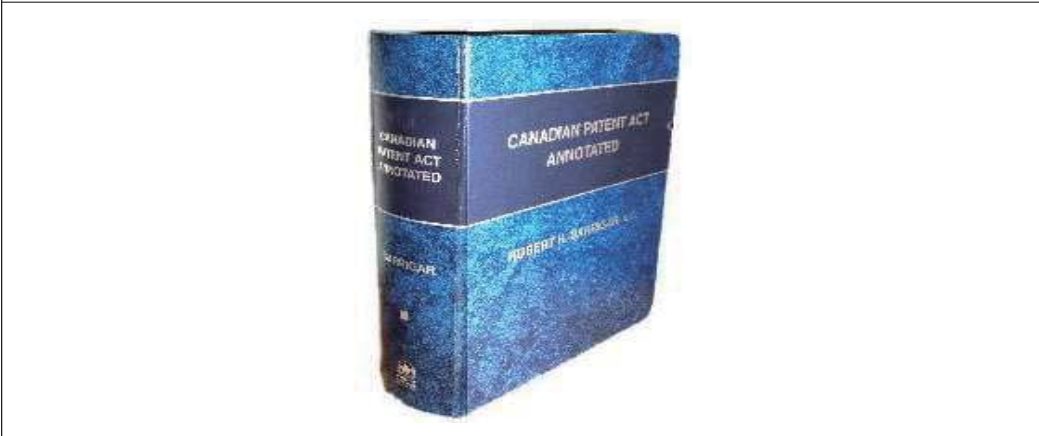
이는 법령집에 있어서도 가제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참고] 가제식 법령집²⁹⁷⁾



이때 바인더 자료집의 표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표지를 타이포그래피²⁹⁸⁾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참고]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바인더 자료집²⁹⁹⁾



297)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aNo=003007002007&sc.prdNo=211539157 (검색일; 2015.9.30).

298)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가리킨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D%8F%AC%EA%B7%B8%EB%9E%98%ED%94%BC>] (검색일; 2015.9.30).

제 3 절 인터넷 활용

한국 법제 모듈화 관련 보고서 등을 출간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에는 우선 출간 보고서 등을 전체 pdf화 또는 전자서적화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홈페이지 등에 출간 보고서 등을 탑재하고 제목, 저자, 목차, 요약문 등을 적시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므로, 대상국의 입법정책자나 정책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출간 보고서와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또한 대상국의 입장에서 특정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특정 법제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보고서 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에 따로이 게시를 하고 첨부파일 등으로 보고서 등을 탑재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즉, 단순히 보고서 등을 서술적으로만 요약할 것인지, 아니면 도표 또는 서식화하여 이를 게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 인터넷상의 도표 또는 서식화(1)³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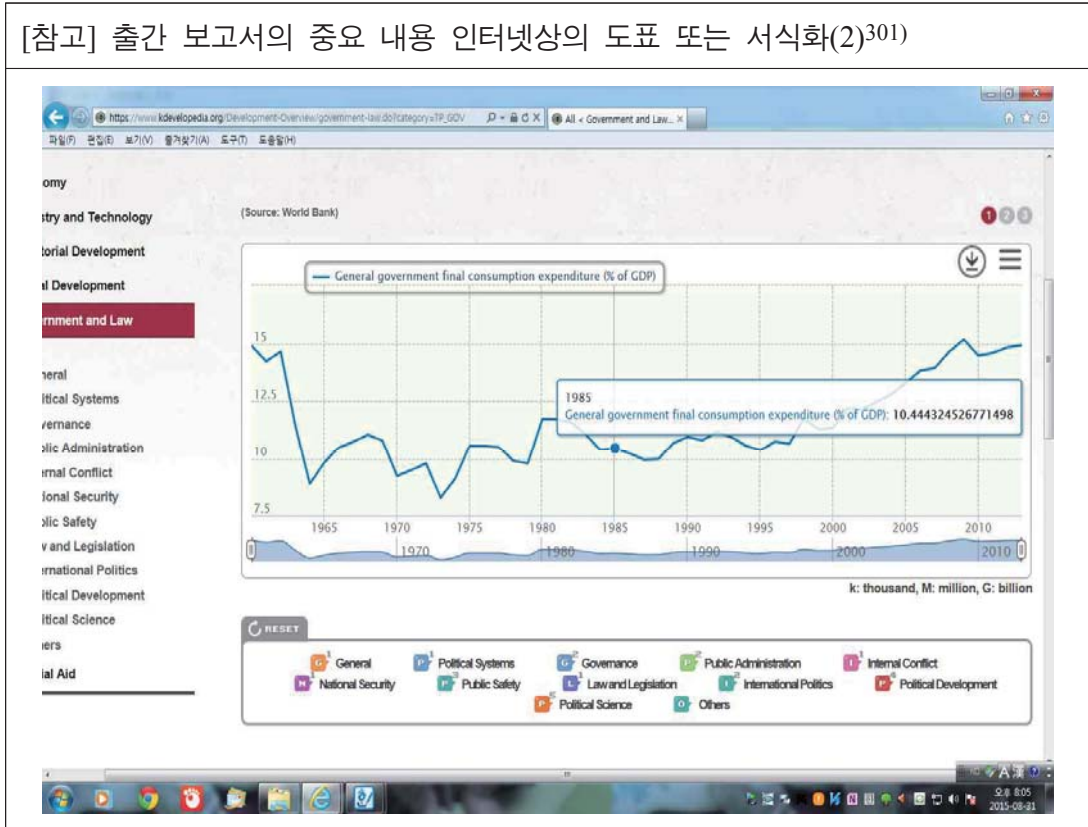


299) <http://www.canadalegal.info/ref-intellectual-property/ip-it-law.html> (검색일; 2015.9.30).

제 6 장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

도표화하는 경우에도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또는 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참고]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 인터넷상의 도표 또는 서식화(2)³⁰¹⁾



300) https://www.kdevelopedia.org/Development-Overview/government-law.do?category=TP_GOV
(검색일; 2015.9.30).

301) https://www.kdevelopedia.org/Development-Overview/government-law.do?category=TP_GOV
(검색일; 2015.9.30).

참 고 문 헌

- 고문헌·김남희, 『법령정보제공 선진화방안연구』, 법제처, 2012
- 국회도서관, 『국가법률정보자원 표준색인체계 수립 연구보고서』, 2010. 8.
- 국회도서관, 『2008년도 법률정보조사과정』, 2008
- 기획재정부, 『KSP 10년사』, KDI, 2015
- 김두얼, 『경제법제 60년사』, 해남, 2011
- 김성태·박진, 『재정건정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KDI 연구보고서, 2014
- 박광동 외 4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법무부,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방안 연구』, 2013. 11.
- 법무부,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제 현대화 작업 지원방안 연구』, 2014. 3.
- 법제처,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 2014
- 법제처, 『법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 2012.
-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4
- 법제처,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법제처, 2014.
-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2
- 오경호·박찬수, 『출판편집강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유세환, 『결론부터 써라』, 미래의 창, 2015

참 고 문 헌

- 이성환 외,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법령정보
관리원, 2012.
- 이준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에너지 법제-』, 법제
연구원, 2013. 7.
- 임현 · 이준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IT법제-』, 법제
연구원, 2013. 7.
-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12
-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 종료보고서』, 한국
국제협력단, 2006
- 伊藤 貞夫, “共同体国家としてのpolis”, 文明装置としての国家, 比較
法制研究所, 1996
- Detlef Merten/Hans-Jürgen Papier/Peter Badura/Christian Calliess/Christoph
Engel/Udo Di Di Fabio/Markus Heintzen, & 20 mehr,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and II: Grundrechte
in Deutschland - Allgemeine Lehren I,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2006
- Kwang Dong Park etc., 『2012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egal System』, kr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13
- Sabine Kuhlmann/Hellmut Wollmann, 『Verwaltung und Verwaltungsreformen
in Europa』, Springer VS, 2013
- 김민정, 전자책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 기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 개국』, 27면. - 휴머니스트 2015.08.25
- 박연주, 시각적 구성요소에 따른 표지디자인의 선호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현주, 시사주간지 표지 디자인에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원종삼, “우리나라 법률정보 유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관련 학회개최정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 오일석, 원유·가스 탐사개발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
- 강명옥, “북한과 ODA”,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권오승, “아시아법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대학교 법학』 통권 제16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 김수용, “정부 제출 법률안 입안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제처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014.3.
- 문준조, “국내 아시아법제연구의 동향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3.
- 문현숙, “EPUB3.0 고정형 레이아웃 전자책 구현”,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5
-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2011년도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세미나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참 고 문 헌

- 박광동,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본 ODA에 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7집, 한국입법학회, 2010. 12.
-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실시협의 결과보고』, 법제처, 2014.
-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 법제처, 2013.
- 법제처,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법제처, 2013.
- 서창적·이인태, “제품 및 프로세스 모듈화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량 맞춤화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생산관리학회 2014. 6.
- 손희두, “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9.7.
-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제개혁 지원을 중심으로-”, 『검찰』 통권 제115호, 대검찰청, 2004.12.
- 연성진 외 5인,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오일석, “위험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선 방안”, 『법학논집』 제19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
- 오일석·홍찬기·김성훈, “입법 법률정보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연구”, 『입법정보지원 연구과제보고서 모음집』, 국회도서관, 2013. 2.
- 원종삼, “우리나라 법률정보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제6집, 한국비블리아학회, 2002. 5.

- 이주영, “전자책 시장현황 및 전망과 도서출판 시장의 가치사슬 구조 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제8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 이상모, “KOREA LAW PROJECT(KLP)”, 법연 2014 summer vol. 43,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이성환,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실천적 과제”, 『법제』 통권 제654호, 법제처, 2012. 6.
- 이종욱·김용문,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전자거래학회, 2013
- 최태은, “한국법의 세계화-제도수출”, 『제9회 한국 법률가 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법학원, 2014.10.
- Ryoko Ueda, “How is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changing?”,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 17, 2015
- Randel R. Young & Richard Devine, “Making Risk in Emerging Market Hydrocarbon Development Projects”,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09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926007003>
(검색일; 2015.10.2.).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1087&cid=42111&categoryId=42111> (검색일; 2015.10.2.).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470&cid=40942&categoryId=32337> (검색일; 2015.10.2.).

참 고 문 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586&cid=42126&categoryId=42126>(검색일; 2015.10.2.).

<http://ksp.kdi.re.kr/kr/pillars/modulmain.jsp> (검색일; 2015.9.28.)

http://library.scourt.go.kr/kor/judgment/eng_judg.jsp (검색일; 2015.10.2.).

<http://cyber.lrti.go.kr/homepage/education/PlanAction.do?method=04&top=2&sub=2>(검색일; 2015.10.2.).

<http://www.ioj.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3>
(검색일; 2015.10.2.).

<http://www.lrti.go.kr/icc/FrontHandler.do?method=index>
(검색일; 2015.10.2.).

<http://history.ccourt.go.kr/cckhome/history/worldccourt/historyVooperation01.do/>
(검색일; 2015.10.2.).

<http://history.ccourt.go.kr/cckhome/history/worldccourt/historyConstitutionalTrial01.do/> (검색일; 2015.10.2.).

<http://www.ksp.go.kr/kr/pillars/modulcycle.jsp> (검색일; 2015.10.2.).

<http://www.ksp.go.kr/kr/projects/modul.jsp> (검색일; 2015.10.2.).

<http://www.ksp.go.kr/kr/publication/modul.jsp> (검색일; 2015.10.2.).

<http://www.klri.re.kr/kor/business/bizGeneralSix.do> (검색일; 2015.10.2.).

<https://www.e-alin.org/kr/partnerShipList.do> (검색일; 2015.10.2.)

<https://www.e-alin.org/newsList.do> (검색일; 2015.10.2.)

<https://www.e-alin.org/jointWorksHowTo.do> (검색일; 2015.10.2.).

https://www.e-alin.org/kr/aboutAlinVision_kr.do (검색일; 2015.10.2.).

<https://www.e-alin.org/kr/main.do/> (검색일; 2015.10.2.).

<http://www.moleg.go.kr/introduction/majorFunction/lawCooperation>

(검색일; 2015.10.2.).

<http://www.moleg.go.kr/news/media/statuteUCC;jsessionid=D2In8AjJ9lXqatpUsTa1xuyfA DzfRu6c8f1iikvBv9i07p2xHclCChZiVcuDV2ax?pstSeq=57492&pageIndex=4> (검색일; 2015.10.2.).

<http://www.ftc.go.kr/policy/compet/policyNotion.jsp> (검색일; 2015.10.2.).

<http://www.ftc.go.kr/policy/compet/policyMain.jsp> (검색일; 2015.10.2.).

http://www.moj.go.jp/housouken/houso_index.html#soumukikakubu
(검색일; 2015.10.2.)

http://www.moj.go.jp/housouken/houso_lta_lta.html (검색일; 2015.10.2.).

<http://cale.law.nagoya-u.ac.jp/> (검색일; 2015.10.2.).

<http://www.usaid.gov> (검색일; 2015.10.2.).

<http://www.adb.org/> (검색일; 2015.10.2.)

<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5.9.30).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2.jsp?pub_no=14162
(검색일; 2015.9.30.)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aNo=00300700_2007&sc.prdNo=211539157 (검색일; 2015.9.30)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D%8F%AC%EA%B7%B8%EB%9E%98%ED%94%BC> (검색일; 2015.9.30).

<http://www.canadalegal.info/ref-intellectual-property/ip-it-law.html>
(검색일; 2015.9.30).

참 고 문 헌

https://www.kdevelopedia.org/Development-Overview/government-law.do?category=TP_GOV (검색일; 2015.9.30).

<http://ipodart.net/1545> (검색일; 2015.9.30).

<http://news.donga.com/View?gid=47330530&date=20120627>
(검색일; 2015.12.16.).

<http://www.scourt.go.kr/judiciary/international/relation/index.html>
(검색일; 2015.12.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50876>
(검색일; 2015.12.16.).

<http://www.scourt.go.kr/portal/news/ExchangeListAction.work?gubun=18&pageSize=3> (검색일; 2015.10.2.).

<http://eng.scourt.go.kr/eng/crtcdsns/NewDecisionsList.work?mode=6>
(검색일; 2015.12.16.).

https://library.scourt.go.kr/kor/judgment/chi_judg.jsp (검색일; 2015.12.16.)

https://ri.ccourt.go.kr/cckri/cri/edu/eduCurriculum.do;jsessionid=nfQZ6jIPzBe1oRtJ1axKkunlHIR1xEKMYFauHyUdN21d0hyvOjkVOEgORX1vvJMa.COWAS-1_servlet_engine3 (검색일; 2015.12.16.).

<http://www.ioj.go.kr/homepage/education/PlanAction.do?method=04&top=2&sub=2> (검색일; 2015.12.16.).

<http://lrti.go.kr/homepage/announcement/PhotoAction.do?method=view&bbId=12&buSeqNo=36702> (검색일; 2015.12.16.)

<http://www.ioj.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2>
(검색일; 2015.12.16.).

<http://www.ioj.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8>
(검색일; 2015.12.16.).

https://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8486&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검색일; 2016.12.16.).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tableName=TYPE_DATABOARD&seqno=347731 (검색일; 2016.12.16.).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224&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검색일; 2016.12.16.).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125&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검색일; 2016.12.16.).

<http://lrti.go.kr/homepage/education/PlanAction.do?method=04>
(검색일; 2016.12.16.).

<http://www.ksp.go.kr/kr/ksp/ksp.jsp> (검색일; 2015.12.16.).

http://www.moleg.go.kr/news/media/mediaData;jsessionid=uYflGh6a5xFUcdGs531O5iCauQ5UqKeDGBobGWMzap4tMY6efzt138qlNNjeUE1.moleg_a2_servlet_engine2?pstSeq=58793&pageIndex=6 (검색일; 2015.12.16.).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15250>
(검색일; 2015.12.16.).

참 고 문 헌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jsessionid=ESr6ugd3YQlpBinhbQRahdSSqQOZ5mivzGgTy8m8I7uNiNQ560FSRRFQi1U1iOPZ.moleg_al_servlet_engine2?pstSeq=59180&brdSeq=33 (검색일; 2015.12.16.).

<http://www.klri.re.kr/kor/business/bizWebService.do> (검색일; 2015.12.16.).

<http://klri.re.kr/kor/news/newsTourList.do> (검색일; 2015.12.16.)

<https://www.klri.re.kr/kor/news/newsPubList.do?gubun=B>
(검색일; 2015.12.16.).

<http://www.klri.re.kr/kor/news/newsPubView.do?seq=946&gubun=B>
(검색일; 2015.12.16.).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chReportView.do?seq=922>
(검색일; 2015.12.16.).

<https://www.klri.re.kr/kor/introduction/klriNewsView.do?seq=503>
(검색일; 2015.12.16.).

<http://www.klri.re.kr/kor/news/newsPubView.do?seq=245&gubun=B>
(검색일; 2015.12.16.).

<http://www.klri.re.kr/kor/news/newsPubView.do?seq=1105&gubun=B>
(검색일; 2015.12.16.).

<http://klri.re.kr/kor/business/bizPlanView.do?seq=%EC%88%98%EC%8B%9C-11-17> (검색일; 2015.12.16.).

<http://www.ftc.go.kr/policy/compet/policyMain.jsp>(검색일; 2015.12.16.).

http://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978&news_div_cd=1
(검색일; 2015.12.16.).

http://webzine.koica.go.kr/201407/sub5_1.php (검색일; 2015.12.16.).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9/30/0303000000AKR20110930172300017.HTML> (검색일; 2015.12.16.).

http://www.lawasia.org/main/?skin=intro_open2.htm (검색일; 2015.12.16.)

http://www.lawasia.org/main/?skin=intro_history2.htm (검색일; 2015.12.16.)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5.12.16.)

공정거래위원회,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한국 공정거래법 전수한다”, 2014.8.21. 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2년간 경쟁법 진행노하우, CIS 2개국에 맞춤형 연수 실시”, 2013.5.20. 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 몽골과 나눈다”, 2014.12.11. 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개도국에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 2013.11.11. 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공정거래 이슈에 관해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 마련”, 2012.9.3. 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KSP를 통한 한국의 법제경험 전수”, 2011.11.10. 자 보도자료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검색일; 2015.10.2.).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교류[<http://www.scourt.go.kr/portal/news/ExchangeListAction.work?gubun=18&pageSize=3>] (검색일; 2015.10.2.).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의 국제화’ [<http://www.scourt.go.kr/judiciary/international/conference/index.html>] (검색일; 2015.10.2.)

참 고 문 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검색일; 2015.10.2.).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법무연수원 홈페이지[<http://www.lrti.go.kr>] (검색일; 2015.10.2.).
- KSP사업 홈페이지[<http://www.ksp.go.kr/kr/main/main.jsp>] (검색일; 2015. 10.2.).
- 법무부, “법무한류(K-Law)의 첫 번째 쾌거, 창조경제를 지원하다”,
2013.11.15. 자 보도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5.10.2.).
- 법제처,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국가의 법제 교류·협력 허브로
만든다”, 2012.6.18. 자 보도자료
- 법제처, “법제처, 아시아 국가의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1st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개최”, 2011.11.14. 자 보도자료
- [http://www.moleg.go.kr/openarea/publicInformation/publicInformation
Retrieve/partAndType?pstSeq=69595&searchCsfCd=230035](http://www.moleg.go.kr/openarea/publicInformation/publicInformationRetrieve/partAndType?pstSeq=69595&searchCsfCd=230035)
(검색일; 2015.10.2.).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ri.re.kr>] (검색일; 2015.10.2.).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5.10.2.).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KOICA 사업 - 사업분야 - 공공행정
[http://www.koica.go.kr/program/type/governance/1208560_1584.html]
(검색일; 2015.10.2.).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공공행정 분야 전략(2013-2015), 한국국제협
력단, 17-18면[[http://www.koica.go.kr/dev/download.jsp?strFileSave
Path=/ICSFiles/afieldfile/2014/11/19/2.hwp&strFileName=KOICA%
20%B0%F8%B0%F8%C7%E0%C1%A4%BA%D0%BE%DF%C0](http://www.koica.go.kr/dev/download.jsp?strFileSavePath=/ICSFiles/afieldfile/2014/11/19/2.hwp&strFileName=KOICA%20%B0%F8%B0%F8%C7%E0%C1%A4%BA%D0%BE%DF%C0)

%FC%B7%AB(%BE%F7%B5%A5%C0%CC%C6%AE).hwp (검색일; 2015.12.16.).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2008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ICT 입법 지원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2008

한국의 경쟁법 집행노하우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774] (검색일; 2015.10.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검색일; 2015.10.2.).

공정거래위원회, “32년간 경쟁법 집행노하우, CIS 2개국에 맞춤형 연수 실시”, 2013.5.20. 자 보도자료[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171] (검색일; 2015.10.2.)

<http://www.oecdkorea.org/user/nd71211.do> (검색일; 2015.10.2.).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 몽골과 나눈다”, 2014.12.11. 자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996] (검색일; 2015.10.2.).

아시아법연구소 홈페이지[<http://www.lawasia.org/main/?skin=index.html>] (검색일; 2015.10.2.).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http://www.court.gov.cn>] (검색일; 2015.10.2.).

국무원법제판공실 홈페이지[<http://www.chinalaw.gov.cn/>] (검색일; 2015. 10.2.)

http://www.tac-online.org.cn/ch/tran/2011-10/17/content_4548684.htm (검색일; 2015.10.3.).

법률원조센터 홈페이지[<http://www.chinalegalaid.gov.cn/>] (검색일; 2015.10.2.)

참 고 문 헌

- 국가법관학원 홈페이지[<http://njc.chinacourt.org>] (검색일; 2015.10.2.)
- 환위중국동아시아국가연합법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hycalcc.org/>]
(검색일; 2015.10.2.)
- 율정사 홈페이지[<http://www.doj.gov.hk>] (검색일; 2015.10.2.)
- 법률원조서 홈페이지[<http://www.lad.gov.hk>] (검색일; 2015.10.2.)
- 홍콩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hklii.hk>] (검색일; 2015.10.3.)
- 법관학원 홈페이지[<http://tpi.judicial.gov.tw>] (검색일; 2015.10.2.)
- 해협양안법학교류협회 홈페이지[<http://www.acsle.org>] (검색일; 2015.10.2.)
- Simon Brinsmead, “Oil Concession Contracts and the Problem of Hold-up”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1002755>, last visited Oct. 26, 2012), 2007. 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분야별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캡션.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work/asswork0101.jsp>
(검색일; 2015.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개정 정보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캡션.
<http://lawpro.nanet.go.kr/main/main.do> (방문일: 2015.9.30.)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0000> (검색일; 2015.9.30).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302&lsId=&efYd=20140324&chrClsCd=010202 & 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검색일; 2015.9.30).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107236&rowIdx=310> (검색일; 2015.9.30).

- <http://ahalaw.moleg.go.kr/lsSch/107988?pageIndex=11> (검색일; 2015.9.30).
-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9.30).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검색일; 2015.9.30).
- 현암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검색일; 2015.10.2).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대한민국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검색일; 2015.9.30).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 2015.9.30).
- 법제처 영문홈페이지 [<http://www.moleg.go.kr/english/>] (검색일; 2015.9.30).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orld.moleg.go.kr/>] (검색일; 2015. 9.30).
- 법제처 홈페이지 영문법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 법제처 홈페이지 중문법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5.9.30).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검색일; 2015.9.30).
- 법무부 영문홈페이지 [<http://www.moj.go.kr>] (검색일; 2015.9.30).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elaw.klri.re.kr>] (검색일; 2015.9.3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
(검색일; 2015.9.3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english/poli/poliLaw.jsp>]
(검색일; 2015.9.3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검색일; 2015.9.30.).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검색일; 2015.9.30).
- 로앤비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검색일; 2015.9.30).

참 고 문 헌

- 예스로 홈페이지 [<http://www.yeslaw.com>] (검색일; 2015.9.30).
- 미국 연방하원의 홈페이지 [<http://uscode.house.gov/>] (검색일; 2015.9.30).
- 미국의회도서관 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www.loc.gov/law/>]
(검색일; 2015.9.30).
- 일본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홈페이지 [<http://law.e-gov.go.jp/>]
(검색일; 2015.9.30).
-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http://www.shugiin.go.jp>] (검색일; 2015.9.30).
- 일본법령색인 홈페이지 [<http://hourei.ndl.go.jp/SearchSys>]
(검색일; 2015. 9.30).
- 독일연방사법부 홈페이지 [<http://www.gesetze-im-internet.de/>]
(검색일; 2015.9.30).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
(검색일; 2015.9.30).
- 법령정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lawinfo.or.kr>] (검색일; 2015.9.30).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5.9.30.).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B3%B8>]
(검색일; 2015.9.30.).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B1%EB%B6%81>]
(검색일; 2015.9.30).
-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5.9.30).
- 전자신문, “美 전자책 판매, 종이책 첫 추월”, 2011.04.16. 자 보도자료
[<http://www.etnews.com/201104160002>] (검색일; 2015.9.30).

- 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kepa.or.kr>]
(검색일; 2015.9.30).
-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E-book>] (검색일; 2015.9.30).
- 위키디피아 [<https://en.wikipedia.org/wiki/EPUB>] (검색일; 2015.9.30).
- itdongA 홈페이지 [<http://it.donga.com/21134/>] (검색일; 2015.9.30).
- 유튜브(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음악의 이해와 감상’)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watch?v=5zTrNUNIaSM>]
(검색일: 2015.08.15.)
-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Portable_Document_Format]
(검색일; 2015.9.30.).
- itdongA 홈페이지-“디지털문서의 표준을 위한 제시”
[<http://it.donga.com/7846/>] (검색일; 2015.9.30).
-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아카디피아 [<http://www.acadepia.co.kr/ebook/>]
(검색일; 2015.9.30).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15.9.30).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gwanbo.korea.go.kr>] (검색일; 2015.9.30).